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11. 12.

교육과학기술부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유 아 교 육 ····· 1

- 공립유치원을 설립 요청 ····· 3
-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 3
- 유치원 교육비 외에 지급하는 교재비와 급식비 문의 ····· 4
- 정교사, 준교사는 국립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에서도 적용되는지 ····· 5
-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 5
- 다문화 가정 유아 교육비 지원 정책 ····· 6
- 유아교육비 지원 산정 관련 ····· 7
- 세자녀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 7
- 전국 유치원 및 학교 현황 등 ····· 8
- 유아교육전공 대학원 문의 ····· 8
- 유치원 교사가 되는 과정 ····· 9
- 유아 유치원비 지원 ····· 9
- 유아학비지원시 맞벌이 가구 ····· 10
- 사립유치원 유치원 교육비 신용카드 수납 확대 ····· 11
- 취학전 아동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도 유아교육비 지원 받게 해주세요. ····· 11
- 유치원 원비를 계좌이체로만? ····· 12
- 2011 유치원 전일제 강사에 대한 계획 ····· 12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확한 차이 ····· 13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 13
- 유치원 취원 아동 학비 지원 제도 ····· 14
- 유치원장 겸임 가능 여부 ····· 15
- 만5세 공통과정에 대한 질의 ····· 15
- 유치원의 수업일수 ····· 16

-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 16
- 유치원 입학금 명목 및 반환규정 ····· 17
- 거주지 이전시 유치원비 지원 관련 ····· 17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18
- 유치원비 카드결제 관련 ····· 18
- 유치원의 종일제 관련 ····· 19
- 유치원 설치 및 이전가능여부 ····· 20
- 유치원 지원금 ····· 20
- 유치원학비지원 소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 21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문제 ····· 22
- 2011년 다문화가정 유아학비지원에 관하여 ····· 22
- 관인유치원 등원시간조정 ····· 22
- 만3세 아이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지 ····· 23
- 유치원정보공시 ····· 23
- 유치원 원장자격 관련 ····· 24
- 유치원비 관련 ····· 24
- 유치원 설립관련 ····· 25
- 조기입학 경우는 유치원비지원 불가 ····· 26
- 교육경비 지원관련 ····· 26
- 유치원 급식비 지원 ····· 27
- 국민체육센터 유아체능단 운영 관련 질의 ····· 27
- 유치원 보육료 지원 부채인정 ····· 28
- 임대유치원 운영사항 관련 ····· 28
- 유아교육비 관련 ····· 29
-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의 구분 및 홍보 관련 ····· 30
-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우선순위 ····· 31
- 누리과정과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 31
- 유아교육 활동자료 구하는 방법 ····· 32
- 사립유치원 교사 임용에 관해 ····· 32

-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원조사에 관해 ····· 33
- 유치원 교육비와 관련 ····· 34
- 유아교사 자격증에 대해 ····· 35
- 만5세 공통과정 관련 ····· 35
- 유아체능단 유아학비지원 관련 ····· 36
- 소득액 환산시 보험이나 대출은 포함되는지 여부 ····· 37
- 다자녀가족 정책 관련 ····· 37
- 유치원장 자격기준 관련 ····· 38
- 유치원교사 급여 ····· 39
- 평정미달로 자격증 못 땄을 때 취득 방법 ····· 39
-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원 연장 반대 ····· 40

특 수 교 육 ····· 41

- 2013년 이후 치료교육 교사가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 43
- 건강장애라 함은 어떤 것인지 ····· 43
-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현황 ····· 44
- 사립특수학교장에 대한 복무관리 기관 ····· 44
- 외국인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 44
-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신청 절차 ····· 45
- 장애아동 초등학교 입학유예 결정 ····· 45
-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필요성 ····· 46
- 전공과 입학의 나이제한 ····· 46
- 초등교육법에 관한 문의 ····· 47
- 중등특수 2급정교사(재활과 복지)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 47
- 비현직 치료교육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전환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 ····· 48
- 특수학교 2급정교사(재활과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전공 연수 개설 ····· 48
- 특수교사가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 49
- 특수교육대상 학생 순회교육에서 특수학급으로 환경을 바꾸고자 할때 ····· 49
- 특수교육대상학생(저시력) 센스리더기 사용여부 ····· 50
- 특수교육법 해설서관련 ····· 50
-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적용시 대학 진학 관련 문의 ····· 51

특수학교 정교사(2급)〈표시과목 : 치료교육〉 미임용 자격증 소지자 ····· 51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 53

2011년 새교육과정에 따른 고졸 검정고시 준비 ····· 55
8월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정과 과학고 입학전형일정 ····· 55
검정고시 날짜 평일시행 관련 ····· 56
검정고시 응시자격 ····· 56
고입검정고시 응시자격 ····· 57
교육복지 사업 관련 ····· 57
교육비 지원 결과 통보일 ····· 58
기초생활수급가정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58
기초생활수급자도 원클릭 교육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 59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 59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자료 ····· 60
다자녀가구 학비 지원 ····· 60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차이 ····· 61
불법체류자아동의 중학교 입학허용 반대 ····· 61
세자녀 가정 혜택 있는지 ····· 63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대상자 확인 ····· 63
탈북민 입학 및 편입학 관련 ····· 64
학교 다자녀 혜택 있는지 ····· 6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방법 ····· 65
부적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대상 제외요청 ····· 65
전국학력평가(일제고사) 관련 학교수업 파행 우려 등 ····· 66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66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근거 ····· 67
나이스에 반별시간표 입력 사용선택 여부 ····· 68
학교외 장소에서도 나이스 접속여부 ····· 68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주소록 문의 ····· 69
전국 초등학교와 전체학생 수 ····· 69
특성화고 다자녀가구 학비 혜택 ····· 69

- 마이스터고 관련 ····· 70
- 마이스터고를 가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하는지 ····· 70
- 실업계교 등록금 지원관련 ····· 71
- 전문계고 현장실습 관련 질의 ····· 71
- 전문계고등학교 학비지원에 대한 질문 ····· 72
-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급시 중복지원여부 ····· 73
- 전문상담교사 신규 증원 요청 ····· 73
-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인해 전문상담교사 증원에 피해 발생 ····· 74
- 진로상담교사 연수 자격을 중등 1급 정교사로 수정 요청 ····· 74
-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배치 계획 ····· 76
-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신청 시 휴직 중인 교사 허용 여부 ····· 77
-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운영 미숙 ····· 77
- 사서교사 증원 요청 ····· 78
-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자료 이관 ····· 79
- 예술교육선도학교신청방법 ····· 79
- 예술계 고도 특목고 지정운영 연장 가능한지 ····· 80
- 수학여행 계약업무 처리 지침 ····· 80
- 수학여행 총액 입찰제에 대한 의견 및 반론 ····· 81
- 교복폐지 관련 ····· 82
- 교복 자율화 ····· 83
-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계획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 83
- 어린이 등하교 안심 서비스의 무료 요청 ····· 84
- 여고에서의 교복바지 착용이 학교장 재량인가요? ····· 85
- 인구조사 참여자 봉사활동 시간 인정 ····· 85
- 주5일수업제 실시로 인한 학생 생활지도 ····· 85
- 중학생 학교폭력에 대해 ····· 86
- 청원경찰 배치 계획 문의 ····· 88
- 체벌의 대안 관련 ····· 89
- 학교 처벌 관련 ····· 89

- 학교에서의 성교육실태에 관한 질문 ····· 9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 90
- 학교폭력단체(일진)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 ····· 91
- 학생 징계의 종류 ····· 91
- 학생 퇴학 처분 ····· 92
- 학생안전강화 학교 ····· 93
-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리스트 공개 요청 ····· 94
- 1년 유학 후 귀국하는 경우 ····· 94
- 3자녀 가정 특목고, 자사고 특별입학 혜택 시행여부 ····· 95
- 6학년 1학기 수료 후 유학시 초등학교 졸업장 받을 수 있는지 ····· 95
- 가정과의 평가방법 변경 ····· 95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 96
- 고교생 전국대회 수상경력 학적부 기록가능 여부 ····· 96
- 고등학교 선발 전기/후기 구분 ····· 97
-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또다른 부담 유발 ····· 98
- 고등학교의 종류 ····· 98
- 고등학교의 종류 관련 ····· 99
- 국립/공립 학교의 차이점 ····· 101
- 국제고 사회배려자 전형 타지역 응시도 가능한지 ····· 102
- 국제중학교 입학자격 지역제한 관련 ····· 102
- 국제중학교 재학생의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영재학교 지원자격 ····· 103
- 귀국학생의 성적 입력 ····· 103
- 기타결석 처리 관련 ····· 104
- 대안학교의 근거법령 ····· 104
- 홈스쿨링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시 처벌 받는지 ····· 105
- 미인정 유학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배정할 수 있는지 ····· 105
- 법령과 훈령에 대해 ····· 106
- 봉사활동 실적 입력 내용 ····· 107
- 부적응 학생 전학 ····· 107

- 비인가 대안학교운영 ····· 108
- 빠른 1,2월생의 학교입학시기 개정 ····· 108
- 사립학교 감독기관 ····· 109
- 사립학교 학교법인 정보 및 중임의 시기 ····· 109
- 생리결석에 대한 문의 ····· 110
- 생활기록부 자격증 기재 ····· 110
- 외고 입학에 지역제한 ····· 111
- 외고 지역제한 철폐 요청 ····· 111
- 외국거주시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 112
-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취학 절차 ····· 113
- 유학기간의 학교 성적 처리 및 귀국자의 편입학 서류 ····· 113
- 인가 대안학교 교사의 월급 ····· 114
- 일반고등학생 전학 관련 ····· 114
- 자기주도학습 자료 확인 방법 ····· 115
- 자녀의 유학 방법 ····· 115
- 자사고, 자율과 교과시간 배정방법 ····· 116
- 자율형사립고 제도가 학비부담을 가중시키는지 ····· 117
- 장기결석자 처리 방법 ····· 117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전입시 학적절차 ····· 118
- 조기 진급의 절차 ····· 119
- 조기입학 방법 ····· 119
- 졸업장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 120
- 중학교 유급 관련 질의 ····· 121
- 질병결석시 제출서류 ····· 121
- 초·중등교육법 특례입학 자격 기준 ····· 122
-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몇일인가요? ····· 122
- 초등학교 부모직장근처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지 ····· 123
- 초등학교 조기진급제도 ····· 123
- 특수목적고 지정한 학교 현황 ····· 124

- 학교 자율휴업일 결정 절차 ····· 124
- 학교법인의 정의 ····· 125
- 학교법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 126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법 ····· 126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 127
- 학교생활기록부관련 ····· 127
-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27
- 학부모가 원할 경우 유급이 가능한지 ····· 128
- 학생생활기록부에 텝스(tepr)성적 등재할 수 없는지 ····· 129
- 학업성적 관리 위원 관련 ····· 129
- 해외거주 학생 편입시 수업일수 ····· 130
- 에듀팟 관련 ····· 130
- 에듀팟 기록 사전승인요청에 대하여 ····· 131
- 에듀팟에 자녀가입하기 ····· 131
- 인터넷 웹브라우저 ····· 132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비 IE 계열 사용 불가 ····· 133
-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사용대상 확대 ····· 133
- 창의적체험활동을 수련관에서 해도 되는지 ····· 134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에 대한 질의 ····· 134
- 고등학교 입학관련 ····· 136
- 고졸 검정고시 학생의 고교 재학가능여부 ····· 138
- 체험학습,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 138
- 이수 학기 관련 ····· 139
- 초등학교 해외유학후 재입학시 다니던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는지 ····· 139
- 출석일수 모자를 경우 체험학습 인정 등 ····· 140
- 해외 사립학교 학력인정 관련 ····· 141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42
-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확대 ····· 143
- 방학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 143

- 학교운영위원회 연임 가능한지 ····· 144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수 ····· 144
-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및 성격 ····· 145
-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방법 ····· 145
- 학운위 위원 선출 방법 ····· 145
- 학운위의 책임 한계 ····· 146

학 생 건 강 안 전 ····· 147

- 체육 초중등학교 설립 가능한지 ····· 149
- 2011년 국가정책사업 중 학교 조명등 설치 계획 ····· 149
- 건강기록부 수기장부 계속 보관해야 하는지 ····· 150
- 경미한 계획변경시 학습환경조사 다시 받아야 하는지 ····· 150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관련 ····· 151
- 교육환경 평가 관련 ····· 152
- 교육환경평가 관련 ····· 152
- 교육환경평가 관련 질의 ····· 153
-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관련 ····· 153
- 교육환경평가 재시행여부 관련 ····· 154
- 교육환경평가제도 관련 ····· 155
- 학교급식비 지원 근거 ····· 156
- 대안학교 설립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 156
- 대학교 상대구역 타구장(야구장) 소음관련 설치문의 ····· 157
- 대학부지내 당구장 설치 관련 ····· 157
- 도시계획시설(학교) 캠퍼스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 158
- 방학중에 실시하는 급식이 학교급식인지 여부 ····· 158
-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업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인지 ····· 159
- 시설의 일부가 포함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 159
- 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 관련 ····· 160
- 전문대학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 160

-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차이점 ····· 161
- 절대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 있는 경우 대학원설립 못하는지 ····· 162
- 중·고등학교 급식업무 일부위탁 절차는? ····· 163
- 초등학교 구강검진 병원 지정 ····· 164
-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상대정화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 164
- 학교급식 현황과 식중독 발생 현황은? ····· 165
- 학교 수도물 수질 검사 필요 ····· 165
- 학교 우유급식은 왜 실시하는지? ····· 166
-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관련 ····· 166
- 학교 인접건물 신축시 일조량조사 ····· 167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중 축산물의 기준은? ····· 167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대상은? ····· 168
- 학교내에서 사고 보상 관련 건 ····· 169
- 학교보건법 교사내 소음 측정 기준 문의 ····· 169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중 예측기관의 범주 관련 ····· 170
- 학교보건법 중 교육환경평가관련 ····· 171
- 학교보건법상 교사내 소음기준 ····· 171
- 학교상대정화구역 경계 적용 기준 ····· 172
- 학교에서의 수익자 부담 예방접종 건 ····· 173
- 학교에서의 예방접종 관련 규정 ····· 173
- 학교의 소음관리 구준과 측정방법 ····· 174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대해 ····· 174
- 학생건강체력평가에 관해 문의 ····· 175

초·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 177

- (구)치료교육교사 1급 자격연수 문의 ····· 179
- 2009 개정 교육과정 융합형 과학에 필요한 교원자격증 ····· 179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융합형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 180
- 2012년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제에 관해 문의 ····· 181

- 2012학년도 치료교사 임용가능 여부 ····· 181
- 가산점 관련 문의 ····· 182
- 개명에 따른 인사기록 사항 변경 ····· 182
- 개정 공모교장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 ····· 182
- 계약제 교원 임용 관련 ····· 183
- 고등학교 교사의 근무 시간 ····· 183
- 고용휴직 관련 ····· 184
- 공개채용 절차 관련 ····· 184
- 공무외 국외 여행 관련 ····· 185
- 공무원 임용전 행위 ····· 185
- 공무원 징계 관련 ····· 185
- 공무원 휴가 관련 문의 ····· 18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정신과 진료 기록 채용신체 검사 관련 ····· 186
- 공무원의 징계 관련 ····· 187
- 공무원이 여관업 가능 여부 ····· 187
- 공무원이 임대업이 가능한지? ····· 188
- 공무원 고용휴직 제도에 대해서 ····· 188
- 공익근무요원으로 임용 시험 가능 여부 ····· 189
- 공통사회 교사 과목 변경 가능 여부 ····· 189
- 과오납 퇴직급여 환수 분할납부 가능한지 ····· 190
- 교감연수대상자 지명 관련 ····· 190
-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휴직 가능한 기관 ····· 191
- 교사 육아휴직수당 지급 관련 ····· 192
- 교사 임용과 퇴출 ····· 192
- 교사의 유학휴직 ····· 193
- 교사의 호봉 재획정 ····· 193
- 교사임용 전 취득한 학위 인정 여부 ····· 194

-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경우 ····· 194
- 교원 경력 및 급여 관련 ····· 195
- 교원 근무 상황 관련 ····· 196
- 교원 산후휴가 시작 시기에 관한 문의 ····· 196
- 교원 성과급 지급 기준일 ····· 197
- 교원 연수학점의 인정범위 ····· 197
- 교원 인원감축 관련 ····· 198
- 교원 자격 회복 관련 ····· 198
- 교원 정근수당 관련 ····· 199
- 교원 질병휴직-불임치료 ····· 200
- 육아휴직 관련 법령개정에 의한 교원 호봉재획정 관련 질의 ····· 200
- 교원과 교육공무원 차이 ····· 201
- 교원과 행정직원의 근무관리 규정 ····· 201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 202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하여 ····· 202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하여 ····· 203
- 교원연금 ····· 204
- 교원의 겸직의무 ····· 204
- 교원의 경조사 휴가로 인한 공가일의 판단 기준 ····· 205
- 교원의 계절제 교육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 ····· 205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 206
- 교원의 유학휴직 ····· 207
- 교원임용고사 합격 후 휴직 가능 여부 ····· 207
- 교원임용고시 가산점에 대해 문의 ····· 207
- 교원임용시험 자격 중 장애인의 기준 ····· 208
- 교원임용시험에 공통과학과 공통사회가 과목이 사라진 경우 ····· 209
- 교원임용시험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산점 부여 ····· 209
- 교원호봉 획정관련 ····· 210
- 비사범대의 시범계열 인정 근거 ····· 210

교육공무원 불임휴직 관련 ····· 2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등급결정 관련 ····· 211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관련 ····· 212
교육공무원 임용전 경력 인정률 ····· 212
교육공무원 포상 시기 ····· 213
교육공무원 시도전출 관련 ····· 213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의 임용전 재외한국학교 근무 경력 인정율 관련 ····· 214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관련 ····· 215
교장의 최대 임기 ····· 215
교장임기 ····· 215
국내, 국외 2개의 대학원 졸업 연구점수 인정 ····· 216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시 교사와 학교의 부담 비율 ····· 216
국외자율연수 신청 관련 ····· 218
국제학교 교사 지원 자격에 관하여 ····· 218
군 복무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 219
군경력인정 ····· 219
기간제 교사 호봉산정 ····· 220
기간제 교원의 봉급 관련 ····· 220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방법 ····· 221
기간제교사 계약만료 후 수당 소급 지급 ····· 221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 222
기간제교원 최대 임용 기간 ····· 222
호봉재획정시 기산호봉 가산 여부 ····· 223
논문작성 위한 연수휴직 가능 여부 ····· 223
당연퇴직 시점 문의 ····· 223
동반휴직 교육공무원 영주권 신청 ····· 224
동반휴직 중 석사 학위 경력 인정 여부 ····· 224
동반휴직에 대해 ····· 225
동일경력 아닌 경우 근무경력 연금에 미인정 ····· 225

- 둘째자녀 육아휴직 중 대상을 셋째자녀로 바꾸는 것 ····· 226
- 등본상 분리된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 227
- 미시민권자 한국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지원 ····· 227
- 방통대 출석수업 참여 ····· 228
- 방학동안 출근하지 않는 교원 ····· 228
- 병가 초과 신청 ····· 229
- 병가 확인 서류 ····· 229
- 병가에 이어 연가 사용 관련 문의 ····· 230
- 보건교사 병가 신청에 따른 대체강사 임용 ····· 230
- 보건교사가 되려면 ····· 230
- 보건교사명칭 ····· 231
- 보건교사의 체육 수업 가능 한지가능한지 ····· 232
- 복직일의 휴직기간 포함 여부 ····· 232
- 부부공무원의 동시 육아휴직 가능 여부 ····· 232
- 부부교사의 경우 쌍둥이 육아휴직 관련 질의 ····· 233
- 부장교사 보직교사 수당 지급 관련 ····· 234
- 불임으로 인한 병가 및 질병휴직에 대해 ····· 234
- 사립교원 근무경력 관련 연금합산과 원로교사 수당 ····· 235
- 사립학교 교원 겸직 허가 기준 ····· 235
- 사립학교 교원 징계 ····· 236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채용 및 교장임명 관련 질의 ····· 23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감액 지급 ····· 237
- 사립학교법 제 62조 관련 ····· 237
- 교원임용시험 신체검사시 외사시의 불합격 요인여부 ····· 238
- 행정인턴의 사학연금 관련 ····· 239
- 산학겸임교사 임용 ····· 239
- 생활지도관련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 239
- 석사취득 목적 유학의 기간 내 박사학위 취득 가능 여부 ····· 240
- 선생님 찾기 방법 ····· 240

-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 경력인정 ····· 241
- 승진가산점에 대한 문의 ····· 241
- 실기교사 응시자격 관련 ····· 242
- 실기교사 자격증 ····· 242
- 쌍생아 휴직 후 호봉 반영 관련 ····· 243
- 연가 신청에 대한 제한을 받는 대상 ····· 243
- 연구대회 입상실적 기준 ····· 244
- 연구학교 가산점 문의 ····· 244
- 연수로 인한 출장시 시간외수당 ····· 245
- 영양교사 교육실습 면제 ····· 245
- 외국인이 국내 학교의 교장이나 이사장이 될 수 있는지 ····· 245
- 외국인의 중등임용고시 응시 및 국공립 중등교사 활동 가능 여부 ····· 246
- 원격교육원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가능한지 ····· 246
- 원로교사 관련 규정 ····· 247
- 원로교사에 관한 규정 ····· 247
- 원로교사의 복무 및 대우에 대하여 ····· 248
- 유사전공 학점 중복인정여부 ····· 248
- 유산(사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시 공휴일 포함 여부 ····· 249
- 유연근무제 문의 ····· 249
-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 ····· 250
- 유치원교사의 기간제 교사의 경력 인정 문의 ····· 250
- 육아휴직 관련 문의 ····· 251
- 육아휴직 셋째 아이 호봉 승급 ····· 251
- 육아휴직 소급인정 ····· 252
-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여부 ····· 252
- 육아휴직(만 8세 개정으로 인한) ····· 253
- 육아휴직과 간병휴직 연속사용과 유학휴직자가 타대학 진학진학하고 있을 경우 처리방법 ····· 253

-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관련 질의 ····· 254
- 인턴교사 신원조사에 대하여 ····· 255
- 임용고시 관련(군복무자) ····· 255
- 임용고시자격 ····· 256
- 임용시험 개정 관련 의견 ····· 256
- 임용시험 토요일 실시에 관한 민원 ····· 257
- 임용시험에 한국사 자격증 관련 ····· 257
- 장애인 교원의 인사발령 ····· 258
- 장학사 장학관 관련 질의 ····· 258
- 재량활동 시 외부강사 활용 ····· 259
- 재외 한국인학교 고용휴직교사 병가 관련 ····· 259
-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경력(승진가산점) 인정 여부 ····· 260
- 전문대학 물리치료학과 졸업생 임용고시 자격 ····· 260
- 전임자의 사학연금 부담금관련 ····· 261
- 정년 초과 교장의 임용에 관한 질의 ····· 262
- 제척 및 기피 ····· 262
- 중등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 여부 ····· 263
- 중등교원 학령과 군경력의 중복시 호봉산정 ····· 263
- 중등임용고시 가산점 관련 ····· 264
- 중등임용시험관련 ····· 264
- 지방교육 행정기관 인사교류 관련 ····· 265
- 직무대리하고 있는 교사의 관리업무수당 ····· 265
- 직원 경조사 참여비 출장 ····· 266
-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 및 징계시 고려사항 ····· 266
- 질병휴직 가능 여부 ····· 267
- 질병휴직 기간 중 학위취득 ····· 267
- 징계 교원의 동건 비위사항에 대한 재징계 가능 여부 ····· 268
- 징계관련 법령 해석 문제 ····· 269
- 징계처분 말소 기간 ····· 270

- 징계처분 무효 ····· 270
- 초등 교원의 대학 강의 겸직 ····· 270
- 초등교감 자격연수관련 ····· 271
- 초등교사의 주택임대사업 가능 여부 ····· 271
- 초등학교보직교사의 수, 계약제 교원의 임용 상한연령 ····· 272
- 초빙교장 임기 교장임기에 포함요청 ····· 272
- 초중학교 교사배치 기준 ····· 273
- 출산휴가 기관 관련 ····· 274
- 출산휴가 관련 질의 ····· 275
-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전달 방법 ····· 275
-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여부 관련 ····· 276
- 친인척 학교장에 대한 질의 ····· 276
- 타연금 경력을 사학연금과 합산 가능한지 ····· 277
- 토요일에 연가내는 경우 반일로 처리되는지, 휴가 중 초과근무 인정되는지 ····· 277
- 퇴직 포상 제외 관련 ····· 278
- 퇴직준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실시 문의 ····· 279
- 명예퇴직시 퇴직준비휴가 ····· 279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의 호봉에 대해 ····· 280
- 포상 제한에 대해 ····· 280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 281
- 학교 휴업일 변경 ····· 281
- 학교장의 시간외 근무 명령 ····· 282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원에 대한 문의 ····· 282
- 학습보조 인턴교사 퇴직금관련 ····· 283
- 학위 취득이 아닌 어학연수로 휴직가능 여부 질의 ····· 283
- 해외 석사와 국내 석사 복수 인정 여부 ····· 285
- 호봉재획정 관련 질의 ····· 286
- 교원의 후임자 보충 관련 ····· 286
- 휴직 기간 중 복무 관리 ····· 287

휴직 중 겸직가능여부 ····· 287
휴직교사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 가능 여부 ····· 288
교원대 대학원 졸업후 1정 자격부여에 관해 ····· 288
교장, 교감 자격연수 취득 등 상위자격취득시 제한 요건 ····· 289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 291
각급학교의 휴업일이 다른 이유 ····· 293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 293
2009 개정 교육과정 예체능 축소 우려 ····· 294
2009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수업시수 ····· 29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총론 자료 ····· 295
2009개정 교육과정 공고시기 ····· 295
2009개정 [교육과정과] 예술교육선도학교 ····· 296
2009개정교육과정 초등해설서 언제 나오는지 ····· 296
2009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출판일 ····· 297
2종 교과서 검정기준 관련 ····· 297
개정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 ····· 297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종류 ····· 298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 문의 ····· 298
공통사회 교과목 자격증 관련 ····· 299
교과서 선정시 [교육과정과] 교과서명이 일치해야하는지 ····· 299
교과서 저작권 관련 문의 ····· 300
교과서 채택 및 주문 질의 ····· 300
교과서 CD 파일로 제공 요청 등 ····· 301
교과서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 시정 요청 ····· 301
국사 필수 과목 지정 필요 ····· 302
국사과 필수지정 요청 ····· 303
국사교과서 사진·도표 개인적 사용문의 ····· 303
국사를 대학입시 필수과목으로 조정해야 ····· 304

- 국정 교과서 구입 애로 사항 ····· 304
- 도덕·사회과목 폐지 반대 ····· 305
- 디지털 전자교과서 보급계획 ····· 306
- 문과와 이과 구분이 사라지는지 ····· 306
- 쌍방향 가능한 디지털교과서(e-교과서) 요청 ····· 307
- 우리 나라 학생 필수학습 시간 ····· 307
- 음악교과서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 308
- 재량휴업일 폐지 요청 ····· 308
-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감축 우려 ····· 309
- 주5일 수업제전면실시 요청 ····· 310
- 주5일수업제 실시 반대 ····· 310
- 주5일수업제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 ····· 311
- 주5일제수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 311
- 중학교 교과목 관련 ····· 312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문의 ····· 312
- 중학교 국어교과서 오류 ····· 312
- 지리과 교육과정에 대한 추가 질문 ····· 313
- 진급에 필요한 수업일수 ····· 314
- 집중이수제 관련 성적처리 ····· 314
- 집중이수제 우려 ····· 315
- 집중이수제에 대한 문제점 ····· 316
- 초등 1학년 한글 수업 관련 ····· 316
- 초등생들에게 나누어주는 e-교과서를 인터넷에서도 볼수 있게 해주세요 ····· 317
-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 관련 ····· 317
- 초등학교 검인정교과서 도입 과정과 목적 ····· 318
-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채택 방법 ····· 318
- 초등학교 교과 수준 하향 조정 필요 ····· 319
- 초등학교 재량 교과목 ····· 319
- 초중고 주5일 수업 실시 요청 ····· 320

- 초중고 도로교통 안전교육 현황 ····· 320
- 학교 교육과정 중 소수선택자의 교과목 개설 가능 여부 ····· 321
- 학교 주 5일제 수업을 건의 ····· 322
- 학교시험지의 저작권자 ····· 322
- 학기 중 교과서 구입이 힘들어요 ····· 322
- 학원에서 교과서 사용 가능한지 ····· 323
-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문의 ····· 323
- 한국의 동아시아사 책 문제점 ····· 324
- 한자 교육 및 한자검정기관현황 ····· 325

대 학 입 시 ····· 327

- 10년제 초중고 졸업해도 국내 대학 입학 가능 내용에 대한 확인 ····· 329
- 12년 미만 학제 국가 출신자의 국내 대학입학 ····· 329
- 2005년도 수능 성적 확인 ····· 330
- 2011년 수능난이도 질의 ····· 332
- 2012년에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영역에 대하여 ····· 333
-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에 대한 미등록충원이 가능여부 ····· 333
- 2014 수능 개편 관련 ····· 334
- 개명으로 인한 대학진학시 처리방법 ····· 335
- 고등학교 동등 학력 인정 여부 ····· 335
- 교과부가 운영하는 학습도우미 사이트 목록 공개 요청 ····· 336
- 교육청 수능원서 접수 제한 ····· 336
- 국내 고등학교 자퇴 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별전형 ····· 337
-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대해 ····· 337
- 국외거류자 특례입학 관련 문의 ····· 338
- 군복무중 대학 입학 가능여부 ····· 339
- 글로벌리더 전형기준에 관한 민원 ····· 339
- 기회균등모집전형 ····· 340
-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 문의 ····· 341

- 농어촌특별전형관련 ····· 341
- 농어촌특별전형제도 ····· 342
- 대입전형료 환불 관련 ····· 342
- 대학 수시 면접 일정 중복 조정 요청 ····· 343
- 대학 수시접수 환불건에 대하여 ····· 344
-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국사 교육 ····· 345
- 대학 신입학 지원자격 문의 ····· 346
- 대학 입학원서비 환불 ····· 346
- 대학 특례입학시 인정되는 학교 ····· 347
- 대학교 목록 관련 ····· 348
- 대학교 추가모집에 관해서 ····· 348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349
- 대학시험수수료 문제점 ····· 350
- 대학의 수시접수 수수료 ····· 351
- 대학입시 특수교육자전형에 관하여 ····· 351
- 대학입시관련 특례입학 자격요건 ····· 352
- 대학입시요강 확인 방법 ····· 352
- 대학입시전형료 환불건 ····· 353
- 대학재외특례입학 ····· 353
- 대학편입관련 ····· 354
-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조기졸업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 355
- 색맹(색약, 색각이상)의 경우 대학교진학 제한범위 ····· 355
- 수능 당일 아날로그 시계 반입 가능 여부 ····· 356
- 수능 원서 사진 질문 ····· 356
- 수능 응시에 관해 ····· 357
- 수능감독관의 철저한 교육 요청 ····· 357
- 수능과 EBS교재 연계 출제 ····· 357
- 수능모의평가 응시장소관련 ····· 358
-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방법 ····· 358

- 수능시험 응시자격 관련 ····· 359
- 수능시험 추가접수 요청 ····· 360
- 수능시험때 장애인 배려 ····· 360
- 수능시험장 귀마개 허용여부 ····· 361
- 수능원서 교육청 접수 관련 ····· 361
- 수능은 등급제 관련 ····· 362
- 수능일에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 363
- 수시 대학별 논술고사 중복의 문제점 ····· 363
- 수시접수 취소 요청 ····· 364
- 수험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대입전형료 환불 금지 불만 ····· 364
- 재외국민 특례적용기준 관련 ····· 365
- 연예인 특례 입학 ····· 366
-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의 국내 고등학교 학력 인정 여부 ····· 367
-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대입 ····· 367
- 외국학생 대학입학관련 ····· 368
- 유학생 국내대학 진학에 관하여 ····· 369
- 이중국적자의 대학 입학 조건 ····· 370
- 입학사정관제로 바뀐다니 더욱더 답답해지는 이유 ····· 370
- 재외국민인 미성년자가 수능을 칠 수 없습니까? ····· 371
- 전국 야간학과 모집 문의 ····· 371
-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특별전형 관련 ····· 372
-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관련 ····· 372
- 제2외국어 선택과목 신설 ····· 373
- 조손가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 374
- 졸업생의 평가원 모의고사 신청 관련 ····· 374
-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학생들의 고졸 검정고시와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 375
- 진로집중과정 조기선택 우려 ····· 375
- 질병 결석이 있는 경우 대학 입시에서 감점 여부 ····· 376
-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능 모의고사 미응시자 표준점수 산출 관련 ····· 377

- 특례입학 관련 ····· 377
- 특례입학 조건 ····· 378
- 해외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 관련하여 ····· 378
- 해외 주재원 학기 수 관련하여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379
- 해외 주재원 학기수 관련 ····· 380
- EBS출제 관련 ····· 380

영어교육관련 ····· 383

-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수업 횟수 ····· 385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교생실습문의 ····· 385
-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 목적 ····· 386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급 3급시험 문제 유형 및 수능대체 여부 문의 ····· 386
- 새로운 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에 따른 사교육 팽창 우려 ····· 387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반 개설 등 사교육업체의 과잉 홍보 대처 방법 ····· 388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에 관한 문의 ····· 389
- 원어민 교사 채용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 390
- EBS 영어교육방송 시청 확대 문제 ····· 391
- TaLK 프로그램 도입 목적 ····· 392

초·중등 교육시설 ····· 393

- 교육재단의 부동산 취득관련 ····· 395
- 국, 공립 초등학교의 운동장 사용 문의 ····· 395
- 대학교 교내 후생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 396
- 대학교 교내에서 운영 중인 식당,커피숍,매점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 397
- 대학교 내에 기숙사 임대건물 용도관련 ····· 397
- 대학교 부속시설(골프연습장)의 구분 ····· 398
- 대학내 부속시설물 관련 교사시설 및 부대시설의 의미 등 ····· 398
- 대학내 예식장업 가능한지 ····· 399
- 대학설립운영규정 산업체의 정의 ····· 400

-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관련 ····· 401
- 신설학교수에 대한 질의 ····· 401
- 에너지사용 제한통보와 관련 ····· 401
- 종교시설을 대학시설 편입 할 수있는지 ····· 402
- 주차장 건물내 복합 용도로 사용시 교사시설 적용 여부 문의 ····· 403
-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요청~ ····· 403
- 초등학교 체육관 사용 시간 제한에 대한 건의 ····· 404
- 폐교 매입 절차에 관해 ····· 405
- 학교 석면 자재 사용 대책 문의 ····· 405
- 학교 석면의 기준치 ····· 406
- 학교 체육관 외부인 사용 ····· 406
- 학교설립계획 중 교지면적 관련 ····· 406
- 학교시설중 원형녹지에 관련 ····· 407
- 학생복지주택의 민간투자 대상시설 여부 ····· 408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 409

- 사설영어학원 강사 인적정보 공개해야 ····· 411
- 개인과외교습 장소에서 2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411
- 개인과외교습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412
- 공익법인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 ····· 412
- 과외교습 중지명령 받은 경우 학원교습도 못하는지 ····· 413
- 교습소 설립신고시 관련 법률 ····· 413
- 교습소의 미취학아동 교습 할 수 있는지 ····· 414
- 기존 학원에 유아대상 교습추가시 인가가 필요한지 ····· 415
- 대학재학중인자의 과외교습 관련 질의 ····· 415
- 대한민국 국호 학원 명칭 사용 가능한지 ····· 416
- 밤 10시 이후 교습제한 학원과 학교의 형평성 문제 ····· 417
- 부설 평생교육원과 동일기간에 원격원격평생교육원 설치할 수 있는지 ····· 418
- 블럭과 보드게임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 418

- 비영리법인 설립 주무관청 ····· 419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자”의 범위 해석 ····· 419
- 수강료 할인시 학원환불규정 ····· 420
- 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 ····· 421
-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 여건 ····· 421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분원 ····· 422
- 영어유치원이 불법인지 ····· 423
- 요일을 달리할 경우, 취미반일 경우 학원법 적용 받는지 ····· 423
- 유아놀이학교가 학원으로 분류 되는지 ····· 424
- 장학재단 설립시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서류 ····· 425
- 재즈댄스가 학원등록 대상인지 ····· 426
- 종이접기 교습소 단속관련 ····· 427
- 중학교 중퇴후 편입시 학년 ····· 427
-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의 법적용 및 대상 ····· 428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에 대해 ····· 429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의 교원이 겸직할 수 있는지 ····· 429
- 평생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과정 입학 조건 ····· 430
- 평생교육시설의 놀이학교 운영이 가능한지 ····· 431
- 평생교육시설의 외부시설에서 교육 가능한지 ····· 431
-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조건 ····· 432
- 평생교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지 ····· 432
-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 433
-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 ····· 433
- 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전학 가능한지 ····· 434
- 학력과 경력 관련 ····· 434
- 학원 명칭에 대한 질의 ····· 435
- 학원 운영자 연수 필수사항인지, 학원 인계시 행정처분도 인계되는지 ····· 435
- 학원경력 및 강사등록 절차 ····· 436
-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 436

학원법관련 ····· 437
학원설립운영등록시 두 가지 학원 병행표기 할 수 있는지 ····· 438
학원수강료 반환 기준 ····· 438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 439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 441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의 의미 ····· 4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 ····· 442
지방교육청 조직 ····· 442
각급 학교 월례휴가제 시행 등 근무여건 개선 관련 질의 ····· 443
개인의사에 의해 승진을 포기할 수 있는지 ····· 444
공립초 토요대체 휴무관련 ····· 444
공무원승진소요최저연수 ····· 445
공무원 유사경력 여부 ····· 445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자에 대한 교육경력 ····· 446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 446
기타경력 인정여부 및 호봉정정 가능여부 ····· 447
다면평가제도 등 ····· 447
육아휴직 중 복직하여 출산휴가 사용가능한지 ····· 448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5항 질의 ····· 448
토요대체휴무질의 ····· 449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점심시간과 관련 ····· 450
휴무관련 ····· 450
교장 유고시 교감의 학교회계 직무대리 따로 발령을 내야하는지 ····· 451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 관련 ····· 451
업무추진비(격려금)지급가능 여부 및 전달자 명의 표시 ····· 452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 452
폐교 위탁 운영후 위탁운영자에게 재계약 가능 여부 ····· 453

- 학교신설 기준 관련 ····· 453
- 학교용지 부담금의 미부과 대상 ····· 454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의 ····· 455
- 학교용지 확보시 해당관청과의 협의 관련 문의 ····· 456
- 학교용지 부담금산정시 부가가치세 ····· 456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문 ····· 457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하여 문의 ····· 457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 ····· 458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할인 분양시) ····· 459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및 법 적용 관련 ····· 459
-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시 중가산금 부과가 가능한지 ····· 460
- 학교용지부담금관련 재건축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 제외 여부 ····· 461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 461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 462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 ····· 463

기 타 ····· 465

- 개인정보처리 불복청구 시 행정심판기관 문의 ····· 467
- 국가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 467
- 장관상장 재발급 ····· 467
- 위험근무수당지급 조건 ····· 468
- 장애인기업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 468
-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도 ····· 469
-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응 방법 ····· 470
- EBS 교재의 수능연계 정책 ····· 470
- 사이버대학(교)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 471
- 사이버대학 공인인증서 사용 문제 ····· 472
- 사이버대학교 강의교재 및 강의 컨텐츠사용기간 ····· 473
- 에듀넷 우수수업동영상 활용 관련 ····· 473
- 외국 사이버대학 국내 운영 및 학위 인증에 대하여 ····· 474

-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록시 이중등록인지 ····· 475
- 인터넷수강료지원관련 ····· 475
- EBS 교육방송 시행근거 법률 ····· 476
- EBS 수능연계교재 지원 ····· 476
- EBS 교재 가격인하 ····· 477
- 공무원 겸직(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 477
-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 478
- 승진소요 최저연수 관련 ····· 478
- 징계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류 ····· 479
- 징계감경이 되지 않는 경우 ····· 479
- 징계부담금 부과 기준은 ····· 480
- 징계의결 기한 ····· 480
- 징계처분 말소기록 ····· 481
- 고용휴직 교원 자녀의 대입특례자격 ····· 481
- 교육공무원해외파견 ····· 481
- 외국학교 설립 및 인정받기 위한 제반사항 ····· 482
-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 ····· 482
- 재외교육기관 파견갈 수 있는 방법 ····· 483
- 재외 한국학교 경력 호봉산정 문의 ····· 483
- 재외한국인학교 교사의 신분 관련 ····· 484
- 태국에 한국어 교사로 파견 요청 건 ····· 484
- 태국 한국어 교원 관련 ····· 485
-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질의 ····· 485
- 한국학교 설립 요망 ····· 486
- 한국학교 설립 관련 ····· 486
- 해외 교사 파견에 대해 ····· 487
- 해외 교육공무원 파견 선발 자격 요건 ····· 488
- 해외 한국학교 계약사항에 관한 문의 ····· 489
- 해외교육 기관 근무교원 연수 ····· 489
- 꿈나래21 책자 받아보는 방법 ····· 490

Ⅰ.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유 아 교 육

공립유치원을 설립 요청

질의

○ 7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병설 유치원에 보내본 부모로써 처음 우려와는 달리 아주 높은 교육의 질과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선생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이 좋은 줄 잘못 알고 있는데 저는 공립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 참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설유치원설립 확대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7. [유아교육과]

○ 현재, 유아교육의 상당부분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립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의 신증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금년도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예정인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신증설비를 모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학비를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질의

○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공립학교에서 유치원교사를 하려면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유치원교사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유아교육과]

○ 유치원교사 자격기준사항은 아래 내용을 충족하셔야 가능한 사항으로 유치원 정교사1급의 경우에는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이며

○ 유치원정교사2급의 경우에는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구분됩니다.

유치원 교육비 외에 지급하는 교재비와 급식비 문의

질의

○ 유치원 교육비 외에 교재비와 급간식비를 따로 납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에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6. [유아교육과]

○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율화되었고, 2003년까지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수업료를 조정하다가 2004년부터 전면 자율화되었습니다. 유치원비가 부담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 유아교육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유치원의 지도감독청인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시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사, 준교사는 국립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에서도 적용되는지

질의

○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정교사, 준교사는 국립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 적용이 된다면 사립유치원 교사가 정규유치원교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교사 또는 준교사로 보면 되나요? 사립유치원에서도 강사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계약직 교원이라고 하나요?

○ 적용이 안된다면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유치원교사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그중 정규 유치원교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3. 28. [유아교육과]

○ 첫째, 유치원 교사의 자격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 ②항 별표 2에 의거하여 유치원 정교사(1급), 유치원 정교사(2급), 준교사로 구분되어집니다. 교사의 자격체제는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둘째, 정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자를 말하며 준교사는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치원 준교사는 현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셋째, 강사 및 기간제 교사는 기간을 정하여 원장이 임용하는 계약제 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질의

○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은 무상교육(법제24조)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등을 우선 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 유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 동에서 발급하는 소득 인정액 증명서 등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0. [유아교육과]

○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부지원단가 자체만으로 수익자 부담 경비까지 부담하기에는 지원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 또한,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를 결정짓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480만원, 5인가구 기준 537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소득평가액(월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 유아학비 지원절차 및 안내사항은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2011학년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에 셋째자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교과부에서도 2011학년도 유치원 납입금 동결과 관련된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수립시 유아학비 지원대상의 확대와 정부지원금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유아 교육비 지원 정책

질의

○ 다문화가정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해여 주민등록이 말소에 따른 재외국민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9. [유아교육과]

○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취학전 만3세~만5세 유치원 재원아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학비 지원의 가구원 범위는 부모 및 형제자매(유아기준)로서 사회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전산조회에 의거 지원자격을 결정하는 바 주민등록등본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 양육상 부모와 떨어져 지낼 경우 별도 추가서류확인은 할 수 있으나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재외국민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산정 관련

질의

○ 유아교육비 지원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3. [유아교육과]

○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만3세아('07.1.1～'08.2.29출생), 만4세아('06.1.1～'06.12.31출생), 만5세아('05.1.1～'05.12.31 출생 또는 취학유예자)가 됩니다.

○ 201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소득하위 70%이하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월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하는 바,

1. 소득 평가는 상시근로자 소득은 연평균소득을 반영
2. 재산의 소득환산은 승용차 재산: 2500cc 이상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1/3), 일반재산은 토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2500cc미만 자동차(4.17%×1/3)로 구분됩니다.

※ 차량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승용차는 2,500cc로 승용차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환산율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소득인정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산정방식은 보육료(보건복지부:어린이집), 유아학비(교과부:유치원)와 산정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절차 및 안내사항은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향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산정 기준 결정시 해당 민원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녀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질의

○ 5살 쌍둥이, 세 살된 아기 이렇게 세자녀를 둘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1. [유아교육과]

○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하위 70%이하를 결정짓는 소득인정액은 '5인가구 기준' 537만

원으로 되어있으며 소득평가액(월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 유아학비 지원절차 및 안내사항은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2011학년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에 셋째자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향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수립시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유치원 및 학교 현황 등

질의

○ 2006년~2009년 초·중·고 현황 및 학생수 2006~2009년 초·중·고 폐교 현황, 2006년~2009년 유치원수 및 원생수를 알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4. [유아교육과]

○ 현재 '07~09년까지 나와 있으며,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요 교육통계(www.schoolinf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통계 및 홍보(간행)물->주요 교육통계를 통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전공 대학원 문의

질의

○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상관하지 말고 원하는 아무 대학원이 진학을 해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7. [유아교육과]

○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별표에 의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는 과정

질의

○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교에 편입하여 유아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자격이 있는지 경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9. 9. [유아교육과]

○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임용고시를 보기위해서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하고 별도경력이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유아 유치원비 지원

질의

○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미리 계산을 해 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 자가일 경우 공시지가/0.9 로 계산이 되고 전세는 전액이 다 재산으로 책정이 되던데 맞습니까? 제가 사는 곳의 공시지가는 8600만원입니다. 현 시세는(국민은행시세참조) 매매 14250전세 12250만원으로 실제로는 전세물량부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 왜 전세사는 사람이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맞벌이일 경우 올해 바뀌면서 합산소득의 75%라고 하던데. 외벌이는 왜 100%적용 되는건지요? 혜택을 주실려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처럼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6. [유아교육과]

○ '09년 7월부터 변경된 기준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는 영유아 가구 전체 소득하위 70%(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액 436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월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 이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가액에서 부채 및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각각의 4.17%, 6.26%를

환산한 금액에서 승용차재산 가액의 100%를 합하여 3등분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 유아학비지원은 교육비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예산 사정 등으로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소득인정액(소득, 재산, 자동차 등 포함)으로 기준을 정하여 법적저소득층과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가구에 먼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그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 명의 재산이 확인된 경우 자금의 출처, 성격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분류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지원시 맞벌이 가구

질의

○ 유아학비지원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맞벌이 가구 : 유아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아빠는 근로소득자이고 엄마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자입니다.

○ 이 때 맞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아빠소득+엄마소득)X75%로 소득 계산되나요, 아니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아빠소득+엄마소득)X100%로 소득 계산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1. [유아교육과]

○ 맞벌이 가구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유아로서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범위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맞벌이 확인방법은 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유아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합니다.

○ 따라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추정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맞벌이가구는 근로소득 대상자만 적용되어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맞벌이 가구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 교육비 신용카드 수납 확대

질의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유치원비 납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유치원비 신용카드 수납 확대 추진하며 카드 수수료 0.36%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줍니다.

○ 그런데 문제는 카드 회사에서 받는 실제 수수료가 3%전후라는 겁니다. 이번 우리 유치원에서 11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으로 카드 회사에서 입금해 준 금액은 110,478원, 카드 수수료가 3,522원이고 교육청에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금액은 410원입니다.

○ 학부모 편의를 위해 유치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000원이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100만원 납부하면 유치원에서 3만원이상을 카드 회사에 줘야하는 겁니다.

○ 그렇다면 그 3만원이상의 피해를 누가 볼까요? 결국 유아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혜택을 줄일 수 없다면 교육비를 인상해서 학부모가 부담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학부모를 위하는 제도일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7. 12. [유아교육과]

○ 유치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카드사용 수수료율 인하 협의 및 시·도 교육청의 수수료 일부 보조방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도 유아교육비 지원 받게 해주세요.

질의

○ 정부의 지원이 아이의 다양성과 적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원에 다니는 것에 상관없이 학령만 정부 정책과 맞다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든지 학원이든지 원의 종류는 상관없이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요즘 엄마들의 수요도는 다양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적성에 맞는 곳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나마 적은 돈이라도 지원받으면 마음이 가벼워 질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1.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위탁기관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는 '09년에 개정된 부칙에 따라 '11년 2월 28일까지만 그 효력을 가지며, 해당 법령의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1.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3.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 제854호, 2005.2.24〉 ①생략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1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생략

유치원 원비를 계좌이체로만?

질의

○ 유치원 원비를 왜 계좌이체로만 해야하나요? 신용카드결재는 안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9. 20. [유아교육과]

○ 신용카드 관련 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은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맹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3145-5950~2)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는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2011 유치원 전일제 강사에 대한 계획

질의

○ 2011 유치원 전일제 강사 정원 확보에 대한 계획은?

회신 회신일 : 2011. 1. 17. [유아교육과]

○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정원 확보 문제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 조정 계획에 의거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공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정규 담임교사 및 종일제 담당교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매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요 정원을 100%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 32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확한 차이

질의

○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이나 요구하는 역할이나, 사내 어린이집은 본 것 같은데 사내 유치원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4. [유아교육과]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우선 크게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로 원칙적으로 만3세에서 만5세까지 취학전 아이들을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0세부터 만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유치원의 교원은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유치원이 많이 없는 이유는 유치원 설립 조건에 보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질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여한 유치원 교사, 원감, 원장자격증 소지자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유치원교육과정을 만3세-5세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기관입니다.

○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국가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 시설장 등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만0-5세아를 대상으로 시군구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입니다.

유치원 취원 아동 학비 지원 제도

질의

○ 현재 5살 아이를 둔 외벌이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는 유치원을 다니게 됩니다. 현재 나라에서 정책으로 보육료보조금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고 있지만, 문제는 2012년부터 유치원은 전혀 보조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어린이집 보낼 때만 엄마가 일하는 건 아닌데 왜 유치원은 보조가 되지 않는지요? 유치원은 원비부터 입학비까지해서 한 아이당 100만원 가까운 돈이 듭니다.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너무나 내년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유아교육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취원 아동에게 지급되는 유아학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신고를 통한 소득인정증명서를 해당 동주민센타에 제출하여 지원계층을 판단받아 만5세아의 경우 균등지원, 만 3-4세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산정을 통한 지원 자격이 되실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장 겸임 가능 여부

질의

○ 사립학교 원장이 다른 사립학교 원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유아교육과]

○ 유치원 원장 겸임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0조에 의하면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며, 제21조 교직원의 임무에는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 의한 원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원마다 자격원장이 임용되어야 하며 원장 겸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만5세 공통과정에 대한 질의

질의

○ 만5세 공통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만 지원하던 유아 학비지원을 전 가정에 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럼 하위 70% 학비지원이 17만 7천원인가요? (아니면 전액인가요?)전액 지원해주지는 않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또 만5세 공통과정 시행되는 경우, 전 가정에 30만원을 2016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가정에 3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인지 이 역시도 소득분위 하위 몇 %는 전액 지원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9. [유아교육과]

○ 2011학년도 만5세아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가정에 대하여 정부지원단가 17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5세 누리과정’시행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하여 월20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지원금액 확대하여 2016년에는 월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의 수업일수

질의

○ 유치원이 방학도 길고 쉬는 날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몇 일이기에 어린이집 보다 쉬는 날이 많은가요? 맞벌이하는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2.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에서는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맞벌이 가정의 유아들을 위해서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제는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 방학 중에 종일제를 운영 못 할 경우를 감안하여 온종일 돌봄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종일 돌봄유치원은 인근유치원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유치원과 관련된 정보는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질의

○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2005년에 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다가 2010년에 추가로 유아들을 위해 운동장용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교육청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운동장 부지는 당초 인가 부지 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운동장의 쓰임이 미미하다고 하여 운동장 부지를 빼고 다시 원래대로 변경인가를 받고자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변경 인가를 승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가를 불허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4. [유아교육과]

○ 사립학교법 제28조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유치원 입학금 명목 및 반환규정

질의

○ 유치원의 입학금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사정상 유치원을 옮길 경우 되돌려 받을 수는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6. [유아교육과]

○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업료 등의 반환문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3항 4호에 의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입학개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입학금의 환불은 불가능하며 그 외의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과오납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입학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입학금은 입학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물품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주지 이전시 유치원비 지원 관련

질의

○ 현재 저희 가족은 5인으로 둘째, 셋째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 중 1인이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소를 옮겨도 보육료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3. [유아교육과]

○ 중간에 직권조회등 수시 확인 조사를 할 예정이오니 해당사항을 주민센터에 가서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선정대상자 확인 조사시 가구 범위 확정 절차 중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을 추가하여 등록 조회(배우자 등)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질의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로 정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9. [유아교육과]

1. 훈시규정에 해당합니다.
2.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정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면 됩니다. 계약직 교사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비 카드결제 관련

질의

○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라고 전용결제카드도 있고 어린이집마다 카드결제기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계좌입금밖에 안되는데 유치원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등 카드결제 가능하게 조치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1.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월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금이나, 카드결재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쿨뱅킹(학부모 은행계좌에서 학교 공과금 등을 자동 이체) 제도의 도입 검토 등 학부모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종일제 관련

질의

1. 종일반이라도 공립유치원은 6시까지밖에 아이를 안 봐준다는 군요. 제가 6시에 퇴근하는데. 그럼 이 아이는 어찌해야하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직장인이 6시에 퇴근합니다.
2. 국공립은 방학이 너무 길어요. 방학을 여름에 30일, 겨울엔 50일 하면 직장여성 아이들은 어디에 맡겨야하나요? 결과적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국공립유치원 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9. [유아교육과]

1. 종일제의 경우 우리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유아교육선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및 서민가족 교육지원을 위해 종일제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로 자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저녁 온종일 돌봄 서비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은 아침 6시 30부터 저녁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시.도지역지원청을 통해 대상 유치원을 공모하고 있는 중으로 2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임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력확충 문제로 종일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온종일엄마품돌봄교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유치원의 방학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 12조에 의해 유치원의 학기 및 수업일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수업일 수 내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정하여 동시행령 제11조에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이며 수업일 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업일수와 휴업일 중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동법 14조에 의하여 지역실정과 원장이 관공서의 여름, 겨울휴가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 등의 유아들의 위해 방학중에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치 및 이전가능여부

질의

○ 설립주체가 직접 대학내 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가능여부와, 현재 대학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학과 동일한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유치원을 같은 대학부지내 다른 위치로 이전(확장)하고자 할 경우 그 이전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9. [유아교육과]

○ 대학의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대학 내에 유치원 설치가 가능하므로 설립주체는 대학 내에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내에 설치된 유치원을 대학 부지 내의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유치원의 위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치원 지원금

질의

○ 남편은 아침 6시부터 저녁9시까지 주야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생산직에서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다보니 연봉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인지 5살아들 유치원지원금을 전

혀 받을 수 없고 전액을 내고 다닙니다. 저 또한 가정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구요. 우연히 듣기를 2011년부터는 세째는 조건 없이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몇 자 적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유아교육과]

○ 2011년도 세째아 무상교육의 경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그 지원폭을 확대 조정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학비지원 소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

○ 유치원학비지원 소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유아학비 지원 월 소득액 산정시부부중 한명만 일하고 한명은 무직일 때 무직인 사람의 학력과 나이에 따라 월 소득액이 추정되어 산정되어 합산되어 집니까? 아니면 신고된 사람의 소득만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한번 조회된 금융재산의 변동(축소)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반영이 되는지요? 그려면 학비로 지출된 것도 따로 증빙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겁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2. 9. [유아교육과]

1. 소득인정액 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통합망에 의한 일정 산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실시합니다. 조회 결과 여러기관이 소득자료가 확인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국민연금공단자료-국세청자료등의 순서로 확인되오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될 것으로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지원센타에서 친절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문제

질의

○ 만5세아의 조기 입학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용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8. 16. [유아교육과]

○ 만5세아의 조기입학(초등학교 취학)은 현재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하여 학부모의 선택으로 이루워지고 있으므로 자녀의 발달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은 현재 논의된 바가 없으며, 소관법령에 따라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에서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용연령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만3세로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0세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다문화가정 유아학비지원에 관하여

질의

○ 2011년 다문화가정 보육료 소득에 상관없이 100%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유치원 다녀도 100%로 지원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4. [유아교육과]

○ 2011년도 부터 다문화가정·난민인정 가정의 유아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비를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인유치원 등원시간조정

질의

○ 3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집입니다. 등원시간으로 힘겹습니다. 8:10분에는 맡겨야 하는

데 일찍 등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유치원에서 전화 등으로 통보받는 경우 맞벌이 가정에는 너무나 힘든 말 입니다. 물론 일찍 출근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야근에 준하는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되겠고 그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유치원비들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겠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유아교육과]

○ 유치원운영(등원시간 포함 등)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및 출퇴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06:00) 저녁 늦은 시간(20:00)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온종일 돌봄유치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우측 하단〉 e-유치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3세 아이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지

질의

○ 만3세가 되었는데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6.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 제3조에 의하여 만3세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정보공시

질의

○ 유치원에서 장학사님이 오시는 시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달원비, 입학비, 의류비, 간식비, 특별활동비, 모두 세세히 학무모에게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학무모 10% 내외에게만 비공개 전화나 설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편접수도 어머니들은 마다하지 않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카드도 안되고, 매번 현금으로 입금되는 원비나, 이런 세세한 것들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6. [유아교육과]

○ 우리부는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개를 요지로 하는 정보공시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유치원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치원 원장자격 관련

질의

○ 유치원 원장의 자격관련 문의

- 중등교사2급 사회 자격을 있으며 기간제교사를 4년정도의 경력이 있을 경우 유치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지금 유치원교사자격증은 없는 상태지만 전문대에 입학하여 취득한다면 9년의 교사와 원감생활을 하지 않고도 원장자격취득이 가능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9. 7. [유아교육과]

○ 원장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감자격증소지자로서 가능한 제1호 기준 또는 자격인정에 의해 가능한 제2호 기준에 의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원장자격인정기준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동 추천검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장자격인정을 위해서는 임용하고자 하는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청에 원장추천검정 의뢰가 있어야 하며, 관련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세부 검증 등은 관할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비 관련

질의

○ 유치원비에 대한 민원(과다한 유치원 수업료 및 부대비용에 관한 민원)

회신 회신일 : 2011. 3. 8.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허가교육기관으로 유치원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

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유치원 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월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의 지도, 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폭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마련 중에 있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유치원 교육비 등에 불합리하거나 법에 어긋남이 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 실사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관련

질의

○ 일반대학부지 내 부설유치원이 아닌 일반유치원(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가능한지와 부속, 부설, 병설유치원에 관한 정확한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신 회신일 : 2010. 11. 12.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해 '교육연구시설(학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 제7항 단서에 의해 대학의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대학 내에 유치원 설치가 가능함

※ 「고등교육법」제45조는 재학생의 현장 연구 및 실습을 위해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개의 규정이며, 부속·부설·병설 유치원의 개념 구분 - 병설은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한곳에 설치한다는 의미로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 가능

※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제8조 참조 - 부설은 어떤 기관에 부속시켜 설치한다는 의미로 병설과는 달리 한곳에 나란히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고등교육법」제45조 제2항 참조 - 유치원은 규모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일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병설과 부설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조기입학 경우는 유치원비지원 불가

질의

○ 유치원비를 지원의 조기입학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민원

회신 회신일 : 2011. 5. 18. [유아교육과]

○ 초중등교육법('07.8.30에 따라 현행 조기취학 및 취학유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2년 3월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05.1.1-05.12.31생이며, 조기입학대상은 06.1.1.-06.12.31생으로 학부모(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도 개정되어 초등학교 취학직전의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2005년 1월 1일 생부터 2005년 12월 31일 생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2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대상은 2006년 1월 1일 생부터 12월 31일 생까지로 1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것을 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만4세(2007.1.1-2007.12.31)의 경우 1,2월생만 아니라 1월부터 12월생까지 모두 조기 입학 예정 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기입학은 학부모님의 선택에 의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취학전 선택권을 부여하여 드린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경비 지원관련

질의

○ 사립유치원에서 저소득 유치원학비 지원외에 시 자체사업으로 학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시군구청장이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밖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아이들의 유치원학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1. 15.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3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유치원 설립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에 국한되므로 유치원 학비 지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유치원 급식비 지원

질의

○ 지방에 대한 유치원 급식비 지원요청 민원

회신 회신일 : 2011. 3. 10. [유아교육과]

○ 2011년 유아학비 지원은 만3-5세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의 경우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단가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로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출산장려 및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현재 급식비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시청이나 구청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아체능단 운영 관련 질의

질의

○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중인 유아체능단의 프로그램중 순수 체능과목 외 일부 인지프로그램을 병설 시행시 적법 타당성 여부 등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3. 28. [유아교육과]

○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 종목을 교습하는 시설이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수학, 과학 등 '교과'를 운영하지 않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중이고, 체육시설에서는 설치 목적에 따른 운동 종목만을 교습하여야 할 것임

○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에서는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의 폐쇄명령과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유치원 보육료 지원 부채인정

질의

○ 보육료 지원의 금융부채 관련하여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도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7. 7. [유아교육과]

○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기간동안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게 되며, 대출금 인정금액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전일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마이너스 대출은 금융재산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잔고증명 및 1년간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직접 소명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과 소득 및 재산조사, 결정에 대한 문의는 유아교육법령개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위탁된 사항이므로 향후 문의시에는 구청 통합조사팀이나 사업팀(주민복지 또는 보육 관계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유치원 운영사항 관련

질의

○ 현 건물내에 임대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토지 소유주가 건물, 토지를 매매가 가능한지와 사립학교법의 규정상의 매매금지가 임대유치원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7. 1. [유아교육과]

○ 우선 임대유치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97.9.23)에 따라 종전의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이 개정된 규정의 제7조(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따라 제7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 등은 매매할 수 없으나, 동 조항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것이지, 본 건의 임대유치원 건물의 소유자의 매매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임대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의 소유자가 이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후 동 교지 및 교사의 매수자가 유치원 용도의 교사를 계속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 상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동 건물에서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치원의 설립주체는 현행의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교지 및 교사를 소유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만 유치원 운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매수자의 동의에 의하여 임대 상태인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립·운영 규정 부칙 제3조 제2항(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등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에 따라 시설·설비 등은 현행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관할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아교육비 관련

질의

○ 유아교육비 정부보조시 해당 직계만 가능하고 그 외 부모님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0. [유아교육과]

○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 이후 유아학비, 보육비 지원변경 지침을 시행하면서, 유아 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실제로 조부모와는 별도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조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이유로 학비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리하여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 책임은 부모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책적인 결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의 구분 및 홍보 관련

질의

○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맞습니까? 학원입니까? 어떤 신문은 어학원, 어떤 신문은 유치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학원이 맞다면 당장 영어유치원을 영어학원으로 시정을 하도록 교과부에서 정정보도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반 국민은 영어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유치원에 영어유치원은 없는데..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 유치원에 영어유치원은 없고 영어를 가르키는 영어학원이라는 사실을 지속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신문 방송사에도 향후에는 학원과 유치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교과부에서 지속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4. [유아교육과]

○ 언론에 보도되었던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관련 기사가 처음 보도(연합뉴스)되었을 때 해당 언론사에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임을 설명하여, 처음 보도된 기사를 정정하였습니다.

○ 다만, 보도가 예상되는 각 언론사에 학원으로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언론사에 따라 시정 정도가 달라 정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부에서는 교육청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하여 유아대상 어학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바 있으며 대국민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유아들을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우선순위

질의

○ 불과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수의 병설 유치원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의 원아모집 순위를 1순위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유공자자녀를 빼고 다자녀 가정 또는 저소득층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2012년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요강에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우선 순위입학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4. [유아교육과]

○ 유치원의 원아모집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5호에 의거하여 유치원 원장이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시·도교육청에 실정에 따라서 원아모집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국가보훈처에서도 요구한 내용으로 우리부에서는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비율의 국가유공자 자녀를 우선 입학토록 시도교육청에 공문 시행한 바 있음('11. 3월)을 알려드립니다.

누리과정과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질의

○ 내년부터 만5세 공통교육과정으로 보육교사가 5세 아이들의 교육을 하도록 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들게 대학 다니면서 유아교육과 졸업하고 정교사 자격증은 왜 줍니까?

○ 1년동안 학원만 다녀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육교사들이 진정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럼 유치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는 왜 못합니까? 유치원은 만 3,4,5세의 학교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설립목표부터 다른 기관에서 동등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6. 23. [유아교육과]

○ 이번 5세 누리과정은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만5세아의 교

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양성체제부터 현격이 다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운영방법 및 담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 등 역량 있는 교사양성을 위해 담당교사 직무연수를 겨울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용 지도서와 교수, 학습지침 동영상 등을 제작, 보급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수, 학습 활동을 계속 지원하여 질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 활동자료 구하는 방법

질의

○ 유아교육 2011년도 장학자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재구입과 관련하여 언제쯤 출시(배포)되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8. [유아교육과]

○ 우리부는 2011년도 장학자료를 개발 완료하고, 12월말 정도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 현장에 원당 1부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자료실에 PDF파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임용에 관해

질의

○ 사립유치원 교사 임용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로 임용 시 8시간 근무가 아닌 4~5시간 근무자를 종일반 교사(또는 일반교사)로 임용하여 임용 보고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임용 보고시 4~5시간 근무자라는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만 점검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4~5시간 근무자도 정규교사로의 임용 보고가 가능한 것인지요?(사립유치원교사의 임용은 사립유치원 원장님과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집니다.)

2. 이렇게 4~5시간(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교육경력을 100%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8시간 근무자가 아닌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교직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3. [유아교육과]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및 동법 제53조의 3호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동법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교육청에 임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②항에 의거하여 1일 8시간 근무 준용

- 위 법에 근거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100% 교육경력이 인정되며, 처우개선비 또한 지급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기간제 교원)에 의거하여 임용된 교사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에 해당됩니다.

-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교육경력이 인정되며, 처우개선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원조사에 관해

질의

○ 사립유치원 임용 시 신원조사가 임용 전 실시 됨이 마땅하나, 경찰서에서의 처리기간이 있어 실제 근무일과 임용날짜가 다른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2월 23일 쯤 신원조사 공문을 교육청에 제출하였는데,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요청하는 기간과 경찰서에서 처리기간이 있어 3월 15일에 신원회보서가 도착하였습니다.

1. A교사의 경우 실제 근무는 3월 1일부터 하였으나 임용 날짜는 3월 15일이 되어 여러가지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신원조사를 요청하면서 임용을 먼저한 후 회보서를 첨부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되는 일인지요? 만약 신원조사회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도 안되는 것인지요?

3. 경력이 단절되지 않은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는 전출지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력이 10년 이상되어도 최초 신원조사 회보서를 믿고 계속 이송해도 되는지요?

4. 경력이 단절될 경우 A교육청은 1달을 기준으로 B교육청은 3달 정도를 기준으로 신원조사를 다시 합니다. 단절기간은 교육청마다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5. [유아교육과]

○ 교원의 신규임용시 보안업무규정 제 31조 ①항 및 ②항에 의거하여 임용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미리 신원조사를 완료하여 임용날짜로 인한 교원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치원 현장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력교사라 할지라도 임용권자가 바뀔 경우에는 신규교사 임용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교육비와 관련

질의

○ 얼마전 언론을 통해 발표한 만5세 무상교육과 관련입니다. 내년도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가 되는 어린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보았습니다.

○ 저의 경우도 2007년생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1월생이고 인지능력도 양호하여 1년 조기입학하여 6세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경우와 같이 일부 어린이는 1년 일찍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1년 조기 입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많은 어린이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공통과정”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0. [유아교육과]

○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행 조기취학 및 취학유예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1년 전, 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1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대상은 2005.1.1-12.31.생까지로 1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것을 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만4세(2004.1.1-12.31.)의 경우 1,2월생만아니라 1월부터 12월

생까지 모두 조기입학예정 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기입학은 학부모님의 선택에 의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취학 전 선택권을 부여하여 드린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사 자격증에 대해

질의

○ 아동학과를 졸업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학시절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유아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 이번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떻게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0. [유아교육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대학원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이며, 교육대학원(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과)은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학할 수 있는 지역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유치원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전공과목 50학점과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귀하께서는 유아교육과 관련 학과인 아동학과를 졸업했으므로 전공과목에서 유사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교직과목은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만5세 공통과정 관련

질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원화 시킨 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교사들이 유치원 정교사를 가지고 있는 분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원장자리에 있거나 1년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종일반, 교육체계도 많이 틀려 공통과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원화 체계로는 관리도 소홀해진다고 봅니다. 부처간 통합이나 유치원을 의무화 하여 만5세 유아들은 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4. [유아교육과]

○ 만5세 공동과정 도입시행 발표는 사회 가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삼됨에 따라 실현되게 된 사항입니다.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환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것으로 만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는 또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우리부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공동으로 고시하여 내년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5세 담당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연수 등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 유아학비지원 관련

질의

○ 우리 애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유아체능단에 다니고 있어서 유아학비지원이 되는지 문의해 보았더니 유치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어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아체능단도 엄연히 학비를 내고 다니는데 형평성에 맞질 않는 것 같아 민원신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8. [유아교육과]

○ 유아학비지원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유치원)에 학비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체육시설에 해당된 유아체능단의 경우(유아체능단은 학교가 아니라 운동 종목을 교습하는 시설입니다.) 학비지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액 환산시 보험이나 대출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가구 소득산정할 때 보험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대출금은 자산에서 금액만큼 처리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취원 대상 아동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을 살펴보면 부채의 종류에는 지출형태에 따라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서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거부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내용입니다.

○ 부채인정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이 되오며 그 범위에는 사채는 불인정합니다.

○ 또한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자녀가족 정책 관련

질의

○ 국민임대주택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3자녀를 둔 가족으로써 이정도 재산이면 상당히 적은 걸로 보이는데 보험료가 기본 월7만원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 다자녀 가정 공립유치원 우대정책도 말 한마디 없이 정원의 30%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더 문제는 그 30% 들지 못하면 나머지 정원에도 넣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1. [유아교육과]

○ 다자녀 가구의 자녀 및 취약계층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유아들에게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항은 공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자녀 가구의 육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던 내용이나, '08년 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민원인이 거주하고 계신 동 주민 자치센터 및 교육청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우리부에서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장 자격기준 관련

질의

○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30년간 재직하고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원장 자격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유아교육과]

○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은

1. 유치원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장자격 인정 기준에 의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1에 제시된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별표1 기준 중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귀하처럼 초등학교 교사 경력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교사 급여

질의

○ 교육청에서 유치원 호봉표가 공고되었더군요.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호봉표와 마찬가지로 그에 준하여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동안 호봉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유치원 사립연합회 원장님들끼리 담합하여, 사립은 그동안 교통비나 가계지원비가 없었으니 2010년 호봉에서 5.1%만 인상시킨 사립유치원 호봉표를 만들어 통과시키려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1. [유아교육과]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 하나로 유아교육에 매진해 오신 선생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영자는 모두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09년까지는 일부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담임수당 외에 교직수당, 처우개선비 등 시·도별로 다양한 명목의 인건비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그리고 2011년에는 지원 금액을 더욱 확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하여 보수와 관련한 유치원 선생님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평정미달로 자격증 못 땄을 때 취득 방법

질의

○ 유아교육과를 졸업,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은 이수했으나, 그 평점이 80점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평점을 회복하여(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4. [유아교육과]

○ 평점 미달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편입하신 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아교육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원 연장 반대

질의

○ 올 2월말로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원종료되는데 또다시 2년이나 연장해 준다는 입법예고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5. [유아교육과]

○ 정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을 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1년 연장시에는 강화된 조건을 부여하여 위탁기관 지정 기준 및 유치원 전환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조건부로 연장하도록 하였고, 2012년에는 유치원 전환계획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 지정된 위탁기관이 모두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전환이 명백한 기관에 대하여만 특례 유효기간이 1년단위로 연장됩니다.

○ 또한 위탁기관 지정조건의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 수 교 육

2013년 이후 치료교육 교사가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 2013년부터는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이 완전히 삭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치료교사가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지요? 그리고 2011년 3월 1일자로 재임용되어 3년차 근무에 들어갔는데 무기계약 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특수교육과]

○ 2008년 5월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치료교육이 삭제되고, 치료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에서는 치료교육 교육과정을 포함한 기존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이 일정에 따르면 치료교육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2013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치료지원이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반드시 의료활동 전문가인 치료사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 제3호에는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간제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치료교과의 경우 무기계약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치료교사는 2012년까지만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건강장애라 함은 어떤 것인지

질의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특수교육과]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9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현황

질의

○ 제 딸이 지적장애 1급입니다. 국립, 공립, 사립에 여자기숙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8. [특수교육과]

○ 전국 150개 특수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국립 3개교, 공립 15개교, 사립 30개교로 총 48개교이며, 대부분 남자와 여자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 2개교, 경기 9개교로 총 11개교(인천 : 0개교)의 특수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여자기숙사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특수학교장에 대한 복무관리 기관

질의

○ 사립특수학교장의 복무관리를 하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설립법인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교육장인지, 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6. [특수교육과]

○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하고 있으나, 그 허가는 임용권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2010.07.27)

외국인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질의

○ 몽고 국적을 가진 다운증후군 학생의 경우국내 특수학교에 입학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7. [특수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

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인 것이 확인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신청 절차

질의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장애유아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장애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5. [특수교육과]

○ 장애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선정 과정에 관한 문의는 관내 교육지원청에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초등학교 입학유예 결정

질의

○ 뇌병변1급장애아를 키우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고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내년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는데 유예를 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니 더 이상 유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5. [특수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학생의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

영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쳐 취학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취학의무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필요성

질의

○ 지체1급 장애를 가진 저희 자식이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여 상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체1급장애를 가진 아이가 혼자서 학교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중지체 장애인을 위한 '전문요양도우미'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9. [특수교육과]

○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일반도우미(이동편의, 대필), 전문도우미(수화, 속기), 원격교육전문도우미(수화, 속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의 경우 장애대학생 1인당 2명까지 도우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전문요양도우미'는 학내 교수-학습 중심의 도우미를 지원하는 도우미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적·인적 지원, 취학편의, 정보접근 편의 등 관련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공과 입학의 나이제한

질의

○ 전공과 교육에 관심이 많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전공과는 직업 전문교육을 받으며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공과 입학을 원할 경우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또한 전공과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평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7. [특수교육과]

○ 전공과의 수업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입학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전공과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입학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과령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과령자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은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법에 관한 문의

질의

○ 초등교육법 14조에 보면 질병・발육상태에 따라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법으로 인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유예 대상인지와 유예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 [특수교육과]

○ '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장애를 포함하여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취학의무 유예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 초, 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절차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등특수 2급정교사(재활과 복지)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질의

○ 저는 07년도에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여 교직이수를 하여 올해 중등특수 정교사 2급(재활과 복지)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입니다. 듣기로 치료교사가 폐지되어 중등특수로

전환된 거여서 2011년, 2012년 후로는 임용을 볼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3.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5.26. 시행)의 개정으로 치료교육이 삭제되고, 치료지원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치료교육교원의 양성은 2008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 15일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내용 및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이 조치에 의해 2007년도 대학 입학자 및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를 인정,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하셨다면, 2011년 이후에도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현직 치료교육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전환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비현직 치료교육 실기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자격전환 연수의 계획은 없는지요? 현직교사만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23. [특수교육과]

○ 자격전환 연수의 대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연수대상) 및 제6조에 따라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현직 교사는 자격전환 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수학교 2급정교사(재활과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전공 연수 개설

질의

○ 처음 치료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에 응시하였으며, 2008년 중등임용에 합격하여 현재 일반하교 특수학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과 복지 자격증을 가지게 되었는데, 교과부에서 부전공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1. [특수교육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원의 임용, 인사, 직무·자격연수대상자의 지명 및 연수, 보수교육 등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으므로, 시·도교육감은 관내 교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따른 치료교육교사의 자격전환 연수, 보수교육 및 부전공 연수는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이 수립되는 시·도교육청의 업무 체계상 추진이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 따라서 향후의 특수교사(재활복지)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전환 연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사가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질의

○ 치료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도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5. 26. 시행)」에서 치료교육이 삭제되고 치료지원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교육감은 진단평가를 통해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과거 치료교육은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 법 제정 당시 특수교육 수요자들은 의료적 전문성이 있는 치료를 받기 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치료사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순회교육에서 특수학급으로 환경을 바꾸고자 할때

질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중증학생에게 순회교육을 종료하고, 특수학

급으로 환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학교장에 의한 배치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31.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배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 따라서 학생에 대한 배치 권한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저시력) 센스리더기 사용여부

질의

○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시간연장(1.5배)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지, 확대독서기외에도 센스리더기 동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5. [특수교육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력평가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평가 조정(시험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실시되는 학력평가에서 어떠한 평가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관할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수교육법 해설서관련

질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해설서에 순회교육 수업일수를 150일을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180일로 설명하고 있는데, 30일을 감축한다는 조항만 있기 때문에 최대 수업일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9.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 제2항에 따라 순회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매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일수 최소 120일은 순회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이며, 학생의 건강상태나 학부모의 의견,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150일 이상의 수업도 가능합니다.

○ 다만 시행령에서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고 180일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적용시 대학 진학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우리학교 중3학년 학생들의 경우 기본교육과정을 운영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대학 진학시에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1. 기본교육과정을 운영 적용하였을 경우 우리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문제가 없을지
2. 대학 진학시 대학에서 내신 산출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1. [특수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58조(학력의 인정)에 따르면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학 입학 시 각 대학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수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치료교육〉 미임용 자격증 소지자

질의

○ 특수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치료교육〉 미임용 자격증 소지자로서 질의

- 치료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몇년도까지 중등 특수로 임용시험 응시가능여부
- 치료교육자격증을 가지고 몇년도까지 기간제교사 임용가능한지
- 치료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신 미임용 선생님들에 대한 자격전환 계획
- 미임용 특수학교 정교사(2급) 치료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 선생님들의 자격(자격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 미임용 특수학교 정교사2급 치료교육 자격증으로 특수교육
- 대학원 입합허용과 대학원 졸업시 자격전환 및 자격증 부여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과 미임용 치료교사 자격전환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2. 21. [특수교육과]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조치(특수교육정책과-2449,07.06.15)에 따라, 비현직 '특수학교 정교사(2급)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재활·복지)'로 간주하여 특수교육(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 특수교육(중등) 기간제 교사의 임용 또한 과목에 관계없이 선발할 경우,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재활·복지)'로 간주하여 특수교육(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연수대상) 및 제6조에 따라, 자격전환 연수를 포함한 모든 연수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도 특수교사로 선발된 경우에는 자격전환 연수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현직 치료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교사에 대한 연수를 소관하는 시·도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2011년 새교육과정에 따른 고졸 검정고시 준비

질의

○ 2011년부터 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가 16종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고졸 검정고시를 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국정 교과서였기에 별 문제 없이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몰라 막연합니다. 고졸 검정고시도 수능처럼 16종 교과서를 통합해서 내는 건지, 아님 16개 출판사별로 각각 다른 문제를 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 [교육복지과]

○ 그간 기출문제를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고시는 문제출제시 만학도를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누구나 답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종류가 늘었다고 하여 교과서별로 각각 다른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7차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고입, 고졸) 졸업 정도의 지식과 응용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8월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정과 과학고 입학전형일정

질의

○ 2012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이 8월 하순 경에 원서접수와 마감 기간인 관계로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우, 합격자 발표는 8월 말에 있다는데, 지원 자체를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년의 경우, 과학고 원서 접수가 9월 초에 있었는데, 올해는 8월 하순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압니다. 작년까지는 검정고시를 본 후 합격자 발표가 나면 지원할 수 있었는데, 왜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2. [교육복지과]

○ 고입검정고시는 연2회(4월, 8월)시행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고시공고일,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제2회 시험을 8월 초순에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를 8월 25일경에 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고 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청과 해당과학고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날짜 평일시행 관련

질의

○ 저는 저의아들이 중학교를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빠입니다. 검정고시를 응시를 해야하는데 4월과 8월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은 평일인데 4월은 일요일에 시험을 보는것으로 되어 있군요. 유난스럽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은 교회를 꼭 가야하기에 시험날짜를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않는 토요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안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7. [교육복지과]

○ 매년 2회 고시 중 제1회는 일요일, 제2회는 평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력취득을 위해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계신분들은 학령기의 청소년부터 직장인,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정과 배경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학력취득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현재 일요일, 평일 각각 한번씩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시행의 정확한 일자는 전국 시도교육감 소속의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인쇄 및 배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시간조정, 학교시설 및 감독교사의 차출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도교육청 관계관 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

질의

○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따로 있나요? 자퇴생에 한해 응시 할 수 있나본데 자퇴확인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육복지과]

○ 중학과정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령 제5조의2(응시자격) 제②항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검정고시위원회의 고시 공고일 이후 중학교 제적 또는 정원외 관리된 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는 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응시 예정 시.도교육청에 검정고시 공고일 등을 확인하셔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입검정고시 응시자격

질의

○ 제 아들이 1997년 3월생(호주에서 출생-국적은 한국)이며, 호주에서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 2004년 10월 한국으로 돌아와서 2004년 11월부터 부산에 있는 외국인학교에서 약2년간 학업을 하며 초등학교3학년을 마치고, 00외국인학교로 전학하여 2010년 8월(중1년)까지 4년간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정사정상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소재 외국인학교의 6년간 재학증명 및 성적표가 있는데 고입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5. 30. [교육복지과]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산외국인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졸업학력이 인정되는지를 우선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를 연간 102시간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력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학력인정이 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갖추지 못하게되어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교육복지 사업 관련

질의

○ 초중등교육법 54조 3,4항 12월 2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2011년 교육복지사업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이 사업이 시책사업과 무관한 새로운 사업인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6. [교육복지과]

○ 교복투는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층 지역을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총체적 지원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교복투 사업이 그간 특교로 진행되어오다 보니 특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 교복투의 제도화 수준이 미흡하고 재원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도에 교복투 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복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도 보통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명칭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교육비 지원 결과 통보일

질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후 기일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심사중인 이유와 결과가 언제 통보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2. [교육복지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학부모님들이 교육비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학부모님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조회를 거쳐, 해당 학교의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역별 또는 학교별로 심사 일정이 다소 상이하여 아직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향후에는 관계 기관 자료 조회, 단위학교 심사기간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질의

○ 동생이 학교에서 교육비지원신청 안내문을 들고와서 신청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개인정보 동의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이트에 나온 본인인증 3가지 방법은 휴대전화,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데, 신용불량자이므로 인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1. [교육복지과]

○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님은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 행정실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행정실 앞 교육비 신청서 수거함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원클릭 교육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질의

○ 원클릭 교육비신청관련(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을 꼭해야하는지 혹은 자동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3. 15. [교육복지과]

○ 각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적을 보유하고 있어, 학교에서 지자체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적을 요청하여 통보받는 형식이기에 직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혹시모를 전산 등 누락에 대한 경우를 대비하시어 원클릭 교육비 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질의

○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국내에 제작된 자료가 있나요?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회신 회신일 : 2010. 7. 20. [교육복지과]

○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증가 등으로 국내에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컨텐츠 개발,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물 등으로는,

1. “다름에서 어울림으로”(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제작, 필요시 교과부에 요청하시면 송부 가능)
2. 내 친구 석호(인천시교육청 제작,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과 문의)
3. “난 자장면이 아니야”(충북교육청 제작, 충북교육청 학교정책과 문의)
4. 남북한 청소년 친구되기(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문의)

5.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제작물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해당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외에,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1.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포함하여 범교과활동으로 타 문화 등을 경험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CCAP(CCAP :Cross Cultural Awraness Program)활동 등 다문화 이해교실 등 : 외국인,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을 활용하여 모국의 언어, 문화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3. 다문화 관련 페스티벌, 캠프 등: 교육청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의복, 음식 등의 문화를 경험하고,나와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련 행사
4.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등: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자료

질의

○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한국어반/특별학급 현황'라는 제목의2006년 4월 1일자 교육부 자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중고등 학교에 '한국어반/특별학급'이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업데이트된 자료는 혹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1. [교육복지과]

○ 다문화 가정 관련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정보자료실)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검색하시면 "2010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과 2010년 4월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학비 지원

질의

○ 본인은 3자녀의 부모입니다. 저희 자녀는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다른 혜택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0. 9. 16. [교육복지과]

○ 다자녀 지원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급식비 지원이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급식비지원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서의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가정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고소득가정 학생도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어 형평성 및 유상급식 학부모의 반발(고의적 급식비 미납) 등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현행 급식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자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이며, 그 이외에도 지원자 선정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학교별 '급식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긴급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학교 담임교사 상담 또는 행정실을 통하여 급식비 지원 여부를 문의하여 바랍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에 따라 다자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져 있사오니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지역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차이

질의

○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교육복지과]

○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은 초. 중등학교까지로 정하며, 무상교육은 교육을 받을시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같은 사항으로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아동의 중학교 입학허용 반대

질의

○ 불법체류자는 법을 어긴 외국인들이며 고의적으로 법질서를 어겨가면서 오랜기간 체류하

는 자들입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무료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애들이 무슨죄가 있냐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들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애들을 방패막이 삼아 이용하는 것은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아이들만 한국에 남겨진 채 부모들만 강제추방하는게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또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한뒤 돌아간다는 보장은 있나요? 계속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녀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결국은 한국에서 오랜기간 살았으니 돌아가기 힘들다면 그때가서는 어찌할건지 묻고싶습니다. 불법체류자(아동들도 포함)추방은 세계의 흐름입니다. 구미선진국은 물론 한국에 불법체류자를 보내는 동남아중국도 불법체류자들은 강력히 추방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2. [교육복지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인 아동 등의 중학교 취학절차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 전에는, 외국인 아동 등의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중학교 전.입학 절차는 학칙이 정하도록 하여, 의무교육 단계 내에서도 전입학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특히,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경우,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서류가 아닌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초등학교 전.입학절차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학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었고, 학칙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외국인 아동 등의 중학교 전.입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UN 아동권리협약」(1991년 대한민국 비준) 등 국제규범의 취지를 존중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더라도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등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준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는 단속이 어렵고 국가가 불법체류를 양산한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자녀나 부모의 체류자격/신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체류자격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체류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관리.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침 및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선택 또는 사정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 아동도 기본적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절차 개선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들이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불만세력이 된다면, 이는 범죄 등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녀 가정 혜택 있는지

질의

○ 3자녀를 키우는 학부형 입니다. 혹시 3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학교에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가정형편 이나 재산 자동차 이런 건 어느정도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7. [교육복지과]

○ 현재 우리부에서는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여러가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5인가족 기준으로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54,000원, 직장건강보험료의 경우 47,200원(10년도 기준)이하 납부자의 경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통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대상자 확인

질의

○ 저소득가정아동 온라인 교육비신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2. [교육복지과]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간 ·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시도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시기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시기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탈북민 입학 및 편입학 관련

질의

○ 북한탈북민 입학과 편입학에 대한 문의

- 북한에서 인민학교 4년 졸업, 고등중학교 4년 중퇴자로 고등학교의 입학이 가능한지, 현재 고등중학교 5학년 졸업시에 대학 입학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2. 21. [교육복지과]

○ 2008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탈북민 학력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력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교육청방문-담당장학사에게 학력인정신청서 제출-학력심의위원회 개최-서류 혹은 면접심사 받은 후 학력인정증명서 수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98조), 자녀의 소속교육청서 학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당교육청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자녀 혜택 있는지

질의

○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교재 및 학용품비 지원 등 혜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직도 셋째부터 혜택이 있는 것 맞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 [교육복지과]

○ 다자녀 가구의 자녀 및 취약계층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2012년이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과 다자녀 가정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 곤란자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학비납부 현황을 파악하여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계신 동 주민 자치센터 및 교육청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방법

질의

○ 2010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어디에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29. [교육정보기획과]

○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해 교과별 3단계(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비율이 공개될 것입니다. 평가결과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9조

부적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대상 제외요청

질의

○ 학교장추천(권고전학)에 의한 부적응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제외 대상 포함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7. 16. [교육정보기획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 탈북 청소년 등은 탈북 또는 입국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에는 참여하나 결과 산정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국학력평가(일제고사) 관련 학교수업 파행 우려 등

질의

○ 일제고사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아이도 선생님도 모두 힘든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평가를 해야 합니까? 성적순으로 줄 세우려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도 없고 선생님들 역시 성적향상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들을 몰아가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교시부터 쉬는 시간 없는 연강수업에 방과후 수업까지. 그리고 하루라도 좋으니 선생님이 되셔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좋으니 공부에 지쳐 아무 힘없이 아무 의욕도 없이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5. [교육정보기획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찾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여 일부 과목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수업 운영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서열화하거나 잘 하는 학생을 찾기 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국가차원에서 적어도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학력을 확인 점검하고, 더 나아가 창의와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더불어 양질의 평가문항을 통해 선생님들의 수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점에 대해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수업시간 연장 또는 반강제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면 동 평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전체 학생에게 학습부담을 지우게 하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질의

○ 학생 교육 수준을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매년 행하고 있는데 그 성적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성적은 전체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니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31. [교육정보기획과]

○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유일합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전국단위로 교과학습진단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령에 따라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 개선 기초자료 활용, 기초학력미달학생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전국 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난 10월에 학생들에게 직접 통보한 바 있으며, 학교별 응시현황 및 학업성취 수준 3단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학교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에 접속하셔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업성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근거

질의

○ 저희 지역에서는 11월 23일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2010 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에게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2. [교육정보기획과]

○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준 시행 권한 : 장관

- 초중등교육법 제9조(평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제7차 교육과정 총론(4-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관리)

2. 시도 수준 시행 권한 : 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20조(교육감의 관장사무), 제7차 교육과정 총론(4-3-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관리)

특히, 제7차교육과정 총론(4-3-다)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질관리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 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감의 관장 사무) 제6항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도교육과정 편성 운영 질관리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에 반별시간표 입력 사용선택 여부

질의

○ 교무업무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교육과정〉 시간표 〉 반별시간표 “ 메뉴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 길라잡이를 보면 반별시간표의 입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은 꼭 입력해야하는 필수 메뉴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사용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20. [교육정보화과]

○ 법령 상 사용 의무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 관련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용 의무 : 맞춤형통계시스템의 수업시수, 학부모서비스의 주간학습안내 등위 2항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1항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올바른 자료 제공을 위해서 반별시간표를 입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나이스 반별시간표 메뉴의 기능이 다수의 여러 학교에서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용프로그램의 기능보다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나이스에 상용프로그램의 우수한 기능(ex. 주간학습, 반별시간표, 교육과정시수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외 장소에서도 나이스 접속여부

질의

○ 교무업무시스템과 나이스가 통합되면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접속이 제한되는데 인증서가 있으면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1. [교육정보화과]

○ 교육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에 문의하신 원격근무 보안관리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급기관장의 판단하에 기관외(가정 등)에서 원격근무 지원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재 원격근무지원시스템(VPN)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주소록 문의

질의

○ 전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주소록은 다운 받을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7. [교육통계과]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교과부통계사이트→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각 학교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에는 자료의 활용목적, 보호방법 등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초등학교와 전체학생 수

질의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가 몇개이며,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질의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4. [교육통계과]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통계 및 홍보(간행)물 → 교육통계서비스(cesi.kedi.re.kr)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다자녀가구 학비 혜택

질의

○ 2011년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2010년도에 언론에 3자녀는 학비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학비를 내라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8. [직업교육지원과]

○ 질의하신 3자녀 학비혜택에 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셔야 하며, 학비지원 관련에 대해서 공무원 자녀 및 일반회사 자녀와 외부 장학금지원을 받는 학생인 경우 장학금 지원대상임으로 학교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스터고 관련

질의

○ 마이스터고 진학관련 문의

1. 지역에 동일 또는 유사 전공 배치하여 지역을 우대요망
2. 남, 녀학생의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건의
3. 성적커트라인을 대략적으로라도 공개해달라는 건의

회신 회신일 : 2011. 5. 4. [직업교육지원과]

○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마이스터고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 학생에 대한 입학정원을 일정 비율 할당하여 지역 주민 자녀 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남녀학생 모두 선발하고 있습니다.

○ 마이스터고는 성적, 면접, 인성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종합하여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업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 성적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이스터고를 가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하는지

질의

○ 아이가 원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보냈지만 대학간판이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걱정이 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반드시 취업을 해야만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31. [직업교육지원과]

○ 마이스터고 학생이라고 해서 대학 진학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충분히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길러내자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마이스터고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학교에서도 취업 중심 진로지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경제5단체와 산학협력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업과의 연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교 차원에서의 채용 협약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 졸업생이 13년 2월 배출되지만, 협약 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등 산학협력 체제 구축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업계교 등록금 지원관련

질의

○ 특성화고교(실업계교) 재학생들은 올해부터 등록금을 면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은행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는 면제가 아니고 정부로 부터 학자보조를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라는데 사실인지요? 어차피 국비지원인데 보조를 받아서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9. [직업교육지원과]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내는 대신 국가와 지방이 5:5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체 재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국고에서 학비지원을 받고 있어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수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계고 현장실습 관련 질의

질의

○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을 11월초에 나갈수 있는지와 현장실습 대상자는 누구인

지, 현장실습에 나가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직업교육지원과]

○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11월중순경) 다만, 산학협력취업약정제 등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 이수와 관계없이 실시 가능합니다.

○ 기업체 현장실습 수습 대상자는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합니다. 현장실습을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직업교육훈련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획 등), 동법시행령 및 각급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절차에 의해 사전시찰 방문으로 신중히 결정. 현장실습정상화방안(2005년)은 폐지되어, 2/3이상 교육과정 이수후 현장실습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은 현재 교과부 차원에서 통제하지 않으며, 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모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3학년 2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보통교과 이수대책이 마련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직업교육훈련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획 등), 동법시행령 및 각급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면 됨. 또한 교과부 차원에서 현장실습 매뉴얼을 작성하여 '11년 연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학비지원에 대한 질문

질의

○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전문계 고교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상 전문계학교의 수업료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지난 신문 기사에서 전문계 고교에 학비지원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모든 전문계가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7. [직업교육지원과]

○ 모든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종합고 전문계학과 포함)입니다. 자녀가 입학을 원하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가 맞는지 해당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급시 중복지원여부

질의

○ 특성화고교 입학 성적우수자에게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자녀에게 일반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는지와 장학금 지급이 중복지원이 해당된다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6. [직업교육지원과]

○ 2011년부터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학생 중 기 수혜대상자 제외한 자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 수혜대상자는 법정면제, 법정지원, 차상위계층, 직장학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지원이 되나 저소득층자녀에게 주는 일반장학금의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할 경우는 중복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자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신규 증원 요청

질의

○ 전문상담교사 신규채용관련 민원

회신 회신일 : 2011. 1. 26. [진로교육과]

○ 정부조직법 제8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와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공무원의(전문상담교사포함) 정원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교원의 정원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시도교육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배정합니다.

○ 전문상담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우리부로부터 배정 받은 정원내에서 퇴직자등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신규채용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채용 규모는 정원 증원 규모+자연감소분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결정).

○ 위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인 공립 학교의 예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정원 운영은 사립학교법 제4조에 의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인해 전문상담교사 증원에 피해 발생

질의

○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로 인한 전문상담교사 사실적 피해민원

회신 회신일 : 2010. 11. 8. [진로교육과]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진학지도를 총괄하는 보직교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신규채용하지는 않고 학생지도와 진로교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 중에 희망하는 교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비교과교사)는 별개의 정원에 의하여 운영되며,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부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에 노력을 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진로상담교사 연수 자격을 중등 1급 정교사로 수정 요청

질의

○ 진로상담교사 연수 받을수 있는 자격을 중등 1급 정교사로 수정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0. [진로교육과]

○ 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원칙적으로 중등 현직 교과교사로서 1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만 부전공 연수 대상입니다. 정교사 자격이 없는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사와 교사의 종별이 다르므로(일반적으로 교과교사, 비교과 교사로 구분함) 원칙적으로 연수 대상이 아닙니다. 시도 교육청 부전공 연수에서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과 같은 비교과 교사가 국어, 영어, 사회 등과 같은 교과목의 부전공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에 선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도 비교과 교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임용이

된 상태이므로 정교사 표시과목의 부전공 연수 대상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2011년 현재 교과교사를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교 현장에 부장교사로 배치되는 교사로 많은 교직 경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 아래 1급 정교사만을 연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 등 더욱 엄격한 자격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과 교사만이 연수 대상이 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국어, 영어 등의 교과 교사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전문상담교사 중에는 1급 정교사로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목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연수와 자격 취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물론 교과교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과교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1급 교과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부전공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적 행위에 속하는 것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교직경력이 있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연수 대상을 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재량 행위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연수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실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게 됩니다.

○ 전문상담교사의 일반 교과목의 부전공 연수를 완전하게 허용하고 그에 따른 임용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교과교사와 비교과를 구분한 교사 자격증 체제에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교사가 비교과인 전문상담교사가 될 때에 일정한 임용 절차를 새롭게 밟은 것처럼 비교과 교사가 교과교사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임용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합니다. 우리 교원 시스템은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과 같은 비교과 교사가 국어, 사회, 수학 등과 같은 교과 교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국어 선생님이 자유롭게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없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대학원을 통하여 또는 교육청의 부전공 연수를 통하여 교사 자격증을 여러 과목 소지하고 있다하여도 그 교과로의 발령은 교원 수급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하

게 됩니다. 따라서 부전공 연수 이수 또는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여 곧 그 부전공 과목의 교사로 발령이 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과와 비교과의 교사 자격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임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이미 전문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를 교과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무의미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통한 학생의 인성 및 심리 문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 수급 상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과교사로 전환하는 전문상담교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전환된 만큼 새로운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교원 인력수급의 낭비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뽑지 않아도 될 신규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직 경력이 있는 1급 정교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수와 자격 취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교사로의 임용은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를 허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그 영역이 다르므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에 각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가 원만히 정착하여 질 높은 진로진학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인성 및 심리 상담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전문상담교사의 확충과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의 일탈과 부적응 문제, 학생 자살 문제 등 학생들을 위한 인성과 심리 상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문상담교사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공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배치 계획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학제도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2011년에 1,000명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진로직업 상담교사의 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 채우느라고 질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아요. 우수한 전문적인 진로직업 상담교사를 선발

하여 배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9. [진로교육과]

○ 2015년까지 전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1년에 1,500명을 배치하였고, 2012년에 활동하실 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현직 중등교사 중에서 전문성과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약 600시간의 부전공자격연수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와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재교육, 평가 등을 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우리나라 진로교육 최고의 전문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신청 시 휴직 중인 교사 허용 여부

질의

○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신청시에 휴직중인 교사의 대상여부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4. 8. [진로교육과]

○ 개별 휴직기간에 따라 복직연수여부가 결정되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시도선발기준이 다르고, 복직예정자의 사정변경발생시의 대체인원수급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선발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휴직중인자도 연수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지만, 세부 연수기준은 해당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서 확답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운영 미숙

질의

○ 학생들 독서록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 질의응답 메뉴에서 문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질의사항만 있고 운영자의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듀팟을 입학사정제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가입을 홍보하는 등 다른 학교의 경우엔 수행평가 등 반영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독서록을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쓰도록 했는데 시스템 불안정 등 학생들의 민원에 관리자의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0. [창의인성교육과]

○ 먼저 시스템 불안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www.reading.go.kr 이라는 사이트에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6. 1부터 에듀팟의 독서활동 기록 기능이 삭제되고 독서활동 기록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사용자가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에듀팟의 독서활동 자료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으로 이관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www.reading.go.kr 서버가 주말 등에는 다소 불안하여 시스템 사용자인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00시교육청은 7월 중에 자체적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도교육청들도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간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기임을 참작하시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동 시스템 내의 '묻고답하기'란에 올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서교사 증원 요청

질의

○ 2011년도 임용고사에서 사서교사는 단 한명도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선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 [창의인성교육과]

○ 사서교사의 증원은 교원의 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계 부처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외에도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원은 학생수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 상황에서 증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부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독서교육 추진을 위하여 사서교사를 증원하는 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자료 이관

질의

○ 학생들 중에는 학기 초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대해 학교에서 통보받지 못하여 에듀팟에다 꾸준히 독서활동을 기록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대해 약 1달 전에 공지 받았고, 그 곳으로 제가 작성했던 독서활동을 에듀팟에서 옮기려 해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듀팟의 독서활동 코너에는 '독서시스템으로 이관'이라는 버튼이 있는데도 실질적인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 계속해서 전화를 드리고 그 분들의 말씀대로 기다려도 계속 지방이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만하시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시기만 합니다. 독서시스템 이관 버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7. [창의인성교육과]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모든 시도교육청이 www.reading.go.kr 사이트를 함께 사용하다가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서버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여전히 www.reading.go.k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문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서버 구축 및 운영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사료되며, 자체 서버의 운영이 시작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도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선도학교신청방법

질의

○ 2012년까지 예술교육선도학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예술교육선도학교에 대한 신청자료도 받고 싶어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 [창의인성교육과]

○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은 올해 12월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술교육모델학교'로 개칭,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신청은 '11. 12월 중,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규모와 신청 방법은 12월초, 공문으로 안내합니다.

예술계 고도 특목고 지정운영 연장 가능한지

질의

○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5호, 6호, 10호에 보면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산업계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연장에 대해 해당이 되어 예술계 고등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 동법 제6호 제4항(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6.29〉)에 의거 예술계 고등학교도 특목고 지정운영연장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2. [창의인성교육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1 제4항 특수목적고는 5년 이내로 지정, 운영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동령 제90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예술계열고등학교, 체육계열고등학교), 제10호 학교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제90조의1제3항에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님)

수학여행 계약업무 처리 지침

질의

○ 2011학년도 수학여행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학여행에 관련된 계약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답사 등 업무를 추진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4. [학교문화과]

○ 수학여행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계약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정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하여 교과부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시도교육청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는 수학여행 관련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내드릴 예정이나 각 시도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교과부의 지침을 기다리기보다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학여행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학여행 총액 입찰제에 대한 의견 및 반론

질의

1. 수학여행 총액 입찰을 하는데 있어 무슨 이유로 숙박, 식사, 교통 등등 이 포함된 항목을 특정 여행사에서 일괄로 입찰을 하려고 하는지요?
2. 교육비리를 근절 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부 업체가 여행의 권리를 독식할 경우 또 다른 폐단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3. 굳이 전자 입찰을 할거면 조금은 불편 하더라도 각 업체별로 입찰하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굳이 업체가 학교나 여행사로 로비를 벌이는 일은 없을 거 아닌가요?
4. 또한 전자 입찰 시행시 소외받는 일부 영세업자들도 외면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소 선정시 호텔이나 콘도를 선호하면 전국에 수학여행으로 영위해온 많은 관광지 숙박업소(모텔, 여관 등)는 일시에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질게 뻔합니다.
5. 지금의 수학여행에서 각 교육청은 여행사에 의한 여행을 자제하고 직영으로 계약을 독려하였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학교가 여행사나 콘도 직원을 사칭한 에이젼트에게 여행을 맡기고 업체에서 이들에게 35%나 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서류는 직접 계약 한 것으로 하구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0. [학교문화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효과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7월 8일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수학여행 등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축소하여 전자공개경쟁 방식 도입을 확대하되,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 및 여행의 질 문제를 보완하겠다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총액 입찰제”로 이해하시어 의견 및 반론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1, 2, 3에 대한 답변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련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총액 입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없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도입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르면 패키지 상품(총액입찰)과 함께, - 총액 입찰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숙박업체/교통업체/프로그램 업체 등도 각각 개별적인 상품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방안” 및 우리부가 지난 7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별첨 문서 2page, 밑에서 5째 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비리예방에 취약한 수의계약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2천만원 이하(기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의 계약 체결이 여전히 가능하며, - 2천만원 초과 계약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이 아닌 전자공개경쟁입찰 방식을 그대로 취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폭을 다양화 하고 있으므로,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획일적 통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질문 4에 대한 답변 -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라면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스스로 여행의 질과 학생의 안전성・교육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할 때, 조달청의 업체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 업체를 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증제・등급제 등 관련 업체와 프로그램의 질관리 또한 추진할 것이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탑재하는 등의 수요자에 의한 업체 질 관리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질문 5에 대한 답변 - “교육청은 여행사에 의한 여행을 자제하고 직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독려” 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의 계약 방식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다만, 계약서 위조는 형법 및 계약 관련 법 상 ‘위법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청 감사관실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복폐지 관련

질의

○ 저희 학교의 교복은 불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여야 하는 교복이라면서 학생들에

게 불편을 주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은 스타킹을 구입하여 신어야합니다. 의자는 나무로 된 것이기 때문에 스타킹이 쉽게 고가 나가기 십상 입니다. 그리하여 스타킹 값만 해도 엄청납니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점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문화과]

○ 정부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교복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하는 규정은 없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바지, 치마, 반바지, 티셔츠 등 학생이 입기에 편한 다양한 재질/디자인의 교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 바지와 치마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 강제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교복 자율화

질의

○ 교복 구입과 유지비용(세탁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사복을 안 입는 것도 아니고 사복을 또 사게 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4. [학교문화과]

○ 각급학교 생활규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생의 생활규정과 관련된 규정을 학교에서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교복 자율화 등은 생활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관련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학교의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조·종례시간 등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계획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질의

○ 초등학교 안전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8. [학교문화과]

○ 우리부에서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하여 경비실 구축 및 출입문자동개폐보안장치 설치 추진, 민경경비 및 배움터지킴이의 배치확대, CCTV 미설치 초등학교의 전면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방문증 발급을 통한 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에는 우리부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1,000교 선정하여 경비실 등 학생안전보호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606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학생안전보호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안심 서비스의 무료 요청

질의

○ 어린이 등하교 안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신청서와 이용안내가 왔는데 이용요금이 5천원, 1만7천원 정도이고 1학년 여학생들이 받은 단말기는 수업시간 끝나고 돌봄 교실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교실에서 교실로 이동을 하여도 부모님에게 호출이 가서 돌봄 선생님이 확인 전화 받느라고 수업도 안 되는 실정이다.

○ 처음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무료로 부모한테 문자로 서비스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휴대용 단말기는 생각지도 않았다. 무료로 해주면 좋지만 안 되면 1천원, 2천원 정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상업적으로 한 통신사에게만 주지 말았으면 한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 [학교문화과]

○ 초등학생 등하교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09년 40개교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10년에는 1,724교에 100억원 예산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안심 알리미는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만큼 학교마다 실정이 달라 서비스 내용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 즉 교사, 학부모,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및 학부모 특성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등하교만 알려주는 서비스를 받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 또한 이 제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 중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는 무료로 지원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향후, 모든 학부모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하고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 법률 검토 및 부처간 협조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고에서의 교복바지 착용이 학교장 재량인가요?

질의

○ 여자고등학교에서 바지 교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 사항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5. [학교문화과]

○ 학교장은 별도의 조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입생들이 입학 이후 교복 구매를 추진할 경우에는 공립(국립) 초·중등학교 학교회계 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교복 구매 방식에 대한 개별학교의 심의 결과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기 안내하여, 학부모, 학생 및 제작업체가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참여자 봉사활동 시간 인정

질의

○ 요즘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9. [학교문화과]

○ 통계청에서는 학생 봉사활동의 특성은 봉사학습 개념으로 궁극적 목적은 '서로 돕고 배우는 것'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속에서 실천할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봉사활동 2시간 인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 2시간 인정의 내용은 - 인구주택총조사 교육(1시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알기(30분)- 엄마,아빠와 함께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으로 참여(30분)으로 총 2시간을 인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공익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5일수업제 실시로 인한 학생 생활지도

질의

○ 주5일 수업으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탈선 등이 지금보다 많아져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6. 27. [학교문화과]

○ 학교-가정-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박물관·미술관·과학관·체육관·국민체육센터 등의 지역 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체육·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대학, 문화회관, 주민센터, 예절교육 체험센터 등과 연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또한 휴일 나눔 및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음 - 학생의 재능·특기를 나누어 주는 1교 1나눔 체험활동 권장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 봉사단' 운영 권장

※ 형식적·의무적 봉사활동에서 벗어난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대전 00초등학교 : '가족봉사활동의 날' 운영)

○ 이와 함께 Wee센터, Wee 스쿨과 연계한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상담 활동을 제공하겠음 - 봉사활동, 특별교육프로그램 등에 동행하거나 상담 등을 통해 든든한 후견인 역할 수행

※ 2,792교('10년) ⇒ 3,200교('11년)

중학생 학교폭력에 대해

질의

○ 중학교 학생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구타하고 하면, 퇴학을 시킬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문화과]

○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처분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조문을 알려드립니다.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

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8]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 배치 계획 문의

질의

○ 초등학교 안전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청원경찰 배치와 관련하여, 이 정책이 폐지가 되었는지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4. [학교문화과]

○ 우리부에서는 2010년 고위험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경비실을 구축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경비인력 중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작년에 예산확보 문제로 청원경찰보다는 민간경비와 배움터지킴이로 배치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시범학교 10교 운영 및 심층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체벌의 대안 관련

질의

○ 체벌의 대안으로 상담·경고·격리·학부모 면담 활용 '생활평점제·성찰교실제 확대'가 제안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급하게 시행하여 대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체벌의 대안으로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이 제구실을 못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체벌 없이 어떻게 생활지도를 하느냐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1. [학교문화과]

○ 사회변화와 더불어 인성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으며 따돌림, 학교 부적응, 폭력 등의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의견대로 우리부에서도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 전문상담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 운영이 현 일반 교원을 포함한 교원 전체 정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전체 교원인력의 수급 문제는 정책 시행에 따르는 예산확보 및 그 구체적 시행방안 등 여러 논의 사항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우리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생활 상담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처벌 관련

질의

○ 학생을 올바로 선도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처벌이 없어진 후 노골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약을 올리고 수업 시간에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학생에게 지식을 주는 곳은 학원이 학교 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성장 시키는 곳이 학교 입니다. 어떤 처벌도 할 수 없고 학생들이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지금에 상황에서 학생들을 사람이 아닌 백과사전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 처벌방 이라든지 처벌의 시간을 주든지 어떤 형태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0. [학교문화과]

○ 우리부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생활지도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대책과 그린마일리지 제도(상벌점제)운영을 시도교육청에 보급하였습니다.

○ 향후, 이 제도뿐만 아니라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실태에 관한 질문

질의

○ 선진사회와 비교하여 한국의 성교육은 아직 낙후되어있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성교육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계획이나 논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29. [학교문화과]

○ 현재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학교장은 1년에 한번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및 학교 단위 운영계획에 반드시 학교 성교육 10시간 이상 확보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질의

○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경찰관을 위원으로 두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학교문화과]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법률가, 청소년전문가, 경찰관 등 다양한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대신 다른 분을 위촉하셔도 됩니다.

학교폭력단체(일진)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

질의

○ 최근 5년간 학교폭력단체(일진)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침이 있는지와 지침을 내렸다면 일진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0. [학교문화과]

○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 부처는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단체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학교폭력 단체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는 학교폭력(단체) 조기발견을 위한 학교단위 설문조사, 신고함, 전화, 사이버(www.wee.go.kr) 등으로 학교폭력(단체)을 신고하며, 학교폭력(단체)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 신문, 방송, 온라인매체와 포스터,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긴급전화 (1588-7179)

○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단체) 신고, 상담센터' 운영 - 담당장학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Wee센터 카운슬러 등으로 조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학교폭력 신고, 민원, 상담 원스톱서비스 신고(학교연계), 위기상담(직접개입), 민원처리, 상담 - 학교폭력 SOS지원단, 전문상담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시행중입니다.

학생 징계의 종류

질의

○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문화과]

○ 학교의 학생징계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학생 퇴학 처분

질의

○ 학교에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9. [학교문화과]

○ 학교의 학생징계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학생안전강화 학교

질의

○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배치 계획과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7. [학교문화과]

○ 우리부에서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고위험 안전취약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경비실 구축 예산을 지원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경비인력으로는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중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배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사업이 후반기에 시행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힘들어 민간경비와 배움터지킴이로만 배치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시범학교 10교 운영 및 심층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리스트 공개 요청

질의

○ 교과부 선정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된 학교 전국 1,000개 초등학교 명단 발표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8. [학교문화과]

○ 우리부에서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중에,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과부 및 경찰청에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선정하였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해당지역의 기피현상 등), 비공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유학 후 귀국하는 경우

질의

○ 초등학교 5학년 초에 외국에서 유학한 경우 6학년 2학기쯤에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 졸업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중졸이전에 미인정 유학한 경우에 외국에서의 학력은 해당국가의 학력일 뿐 국내의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해당학년에서 무단결석 처리되며 결석개시 3개월 후에 학업이 중단되는 학적정리(정원외 학적관리)가 됩니다. 이후 귀국하여서는 학업을 중단한 학년에 다시 취학해야 합니다.

○ 인정유학인 경우(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에는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편입학년을 결정하여 편입학하게 되고, 거기에 2년이상 체류(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고 2년이상 재학하였다면 특례 편입학 및 신입학을 적용합니다. 한편, 국가가 인정하는 유학이라도 비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이나 정규학교에서 정규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인정 유학(어학연수 등) 기간은 기본적으로 수학기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귀국 후 편입할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해당 학년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할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3자녀 가정 특목고, 자사고 특별입학 혜택 시행여부

질의

○ 3자녀 가정의 경우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에 대한 특별혜택을 주겠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시기는 금년도부터라 하구요.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30. [학교선진화과]

○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를 모집 정원의 20% 선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사배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입니다. 사배자의 범위는 법령상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 '다자녀'를 사배자 전형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학년 1학기 수료 후 유학시 초등학교 졸업장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유학을 떠나 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국내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0.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와 제50조에 의거 졸업은 해당 학교의 전과정을 마친 것, 수료는 해당 학년의 전 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1학기를 마친 것은 수료 및 진급에 의한 수업일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가정과의 평가방법 변경

질의

○ 저희 학교에서는 기술가정 및 가정과학 과목의 평가를 학기당 지필(35%)/중간(35%)/수행

(30%)로 3번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수가 점점 줄어들어 한학기에 3번의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말(50%) 수행(50%)로 평가방법을 바꾸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4. [학교선진화과]

○ 학생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고, 평가의 횟수, 반영비율 등은 시·도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반영비율과 시험횟수는 시·도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질의

○ 학생이 친척 결혼 등 경사가 있는 경우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를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학생이 경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처리 가능한 일수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일, 회갑(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일, 사망(부모 및 부모의 부모) 7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5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3일, 탈상(부모 및 부모의 부모) 2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1일. 2012년부터 예정된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교생 전국대회 수상경력 학적부 기록가능 여부

질의

○ 고교생이 예체능계 대학 진학을 위해 전국대회에 출전, 수상한 경력이 학교 학적부에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5.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2011년도부터 모든 교외상은 초·중·고 기재가 불가합니다. 수상경력은 교내상에 한하여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배제의 일환(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2009.12.1)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발 전기/후기 구분

질의

○ 고등학교는 선발시기에 따라 전기 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나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기고등학교에는 어떤 학교가 있나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인가요? 아니면 후기고등학교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 [학교선진화과]

○ 고등학교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에 나와 있기에 그에 따른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1. 삭제
2.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5.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이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또다른 부담 유발

질의

○ 올해부터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에 별도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모두 합산하여 성적을 냅니다. 현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외에도 논술도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내신도 챙겨야 하는데 수행평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첨가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조별로 토론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학원 시간이 달라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까지 전화로 수행평가 준비를 합니다. 고등학교 과목은 한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의 수행을 다 하자면 부담이 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3. [학교선진화과]

○ 고등학교의 학생 평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 2011.2.24)의 '별지 제9호'에 따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방법과 내용 등은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행평가는 지식평가 위주의 선다형 지필평가 방식에 대한 보완으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부는 수행평가 실시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전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행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행평가의 방법, 내용, 횟수 등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므로 과제물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학교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종류

질의

○ 고등학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예컨대,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와 지금 변경된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분류 방식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학교선진화과]

○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일반계고, 전문계고, 교육목적을 기준으로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성을 기준으로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 등으로 구분하고, 특목고는 농・공・수산・해양, 외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체육 등 9개 계열로 구분하는 등 다양한 기준으로 복잡하게 구분하여 왔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2010년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학교유형별로 목적을 명확히 하여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지방자치제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업무가 이관되어 있어 시도별 학교 명단은 우리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은 각 시도교육감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종류 관련

질의

○ 고등학교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특목고, 특성화고, 자립형사립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4. 삭제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9. 삭제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9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

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립/공립 학교의 차이점

질의

○ 국립/공립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양자의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5.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국제고 사회배려자 전형 타지역 응시도 가능한지

질의

○ 강원도에는 국제고가 없어 타지역 국제고는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배려자 및 국가 유공자 포함 전형은 지역으로 한정하며 타도에서 지원은 불가하도록 조항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원하려면 일반전형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 배려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타 학생들에 대한 배려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0.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제81조제2항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 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고의 경우 현재 전국에 4개교가 있으며, 내년에 경기 화성, 고양국제고가 개교함에 따라 6개교가 됩니다. 국제고의 지원자격은 국제고가 소재하지 않는 타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전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도 해당이 됩니다.

국제중학교 입학자격 지역제한 관련

질의

○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은 서울시 소재 국제중학교에 원서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제 아이도 서울 소재 국제중학교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1.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의해 국제중학교(특성화중학교)는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제중학교의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교과부에서 행정지도 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제중학교는 전국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 서울에 영훈, 대원중학교가 있고 부산에 부산국제중학교가 있으며, 지역단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청심국제중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을 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제중학교에 지원을 원하신다면 전국단위 모집을 하고 있는 경기도 청심국제중학교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중학교는 지원할 수 없지만, 현재 전국단위 모집이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심국제중학교 지원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중학교 재학생의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영재학교 지원자격

질의

○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영재학교 지원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7. [학교선진화과]

○ 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 중학교 졸업생은 거주지에 소재한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국제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과학영재학교는 출신중학교,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귀국학생의 성적 입력

질의

○ 외국에 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은 유학기간 동안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는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귀국학생의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은 유학(미인정유학 포함)하고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당상황'란은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기타결석 처리 관련

질의

○ 학교에서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결혼식에 부모와 같이 동행하면 기타결석으로 처리되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족 봉양, 기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의 결혼식에 부모와 같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이외의 결혼식에 부모와 같이 동행하여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근거법령

질의

○ 공식적으로 대안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어떻게 다른지요?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이 인가된 학교로 해석해도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7. 29.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상의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점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된 '07.6.28 이후이며, 이 법령에 의거 설립 인가받은 학교로는 현재 3개학교(TLBU 글로벌학교, 서울실용음악학교, 여명학교)가 있습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91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서 제3호(중학교), 제4호(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며,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는 동법 제2조 제6항(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는 학교라 함은 관할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요건을 갖춘 학교로 보면 되겠습니다.

홈스쿨링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시 처벌 받는지

질의

○ 초등학교를 홈스쿨링으로 하거나 미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면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도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학교선진화과]

○ 홈스쿨링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 처리 후 정원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거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불이익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초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초등교육기관에 취학시키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미인정 유학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배정할 수 있는지

질의

○ 2010학년도 8월에 1명, 11월에 1명 모두 2명의 5학년 학생이 미인정 유학을 떠난 상태입니

다. 2011학년도 2학기에 6학년으로 재취학을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6학년에 재취학 해서 졸업까지 시킬 예정)에 대해 학부모가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 통상 미인정유학을 떠난 학생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돌아 왔을 때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학부모가 원하는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출석일수가 2/3가 안 되더라도 진급시킬 수 있음)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올해 훈령 205조에 의한 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들은 결과 출석일수의 2/3가 되지 않으면 재취학을 시키더라도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5.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학교자율화정책으로 학적처리지침은 해당 교육청의 별도의 지침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적관련 사항을 설명 드리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이후의 처리절차는 해당학교의 학칙과 교육청의 학적담당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학년 시작일부터 결석이 3개월 경과하게 되면 학적을 정원외로 관리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학업중단일부터 재취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해당학년 출석일수의 1/3이상이 되어,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2/3이상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수료가 되지 않음에도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학년말 해당 학년의 미수료로 유급되기에 익년도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하여야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지·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재취학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령과 훈령에 대해

질의

○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특수성 등으로 전문교과 등 많은 과목을 수행평가 100%, 지필평가 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 고등학교 '정보사회와 컴퓨터'과목을 수행평가 100%, 지필평가 0%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령이나 훈령 등에 위배되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1. [학교선진화과]

○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다.' 에 의하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서 정한 전문교과 실기과목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 질의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실적 입력 내용

질의

○ 봉사활동 실적 입력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생부에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하는 경우 입력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4. 11.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봉사활동실적에 입력되는 내용에는 연간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 전학

질의

○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이 있는 경우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전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2. 10.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의해 학

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전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운영

질의

○ 비인가 대안학교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의 법규, 지침이 궁금합니다.

○ 사회복귀시설과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1. [학교선진화과]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정식 학교나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 사회복귀시설이란 어떤 종류의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시설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일단 대안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경우는 미인가 형태의 운영입니다.

빠른 1,2월생의 학교입학시기 개정

질의

○ 빠른 1,2월생들에 대한 법령이 개정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8. [학교선진화과]

○ 빠른 1.2월생으로 인해 학교에서 겪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미성년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은 별개 사항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통념적 나이를 같은 해에 태어난 경우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동일한 나이로 보고 해가 바뀌면 모두 1살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적 연령은 당해 생일이 도래하여야 1살이 증가하게 되므로, 같은 해에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는 시기는 다릅니다.

○ 따라서, 성년이 되는 시기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며, 현행법상 1, 2월생과 관계없이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미성년자로서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에서도 그 동안 자녀의 출생연도가 한해 빠른 아동들과 함께 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1, 2월생 학부모들이 제기한 입학기준일 변경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아동의 발달상황에 맞추어 취학시기를 학부모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이후 1, 2월생 아이들이 전년도에 태어난 학생들과 학습하는 등에 대한 부담감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 감독기관

질의

○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는 누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6. [학교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시·도교육청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 정보 및 중임의 시기

질의

○ 학교홈페이지의 법인정보와 등기내용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2. 16. [학교선진화과]

○ 홈페이지의 학교법인 정보와 등기내용이 다른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청이 승인한 기간이 임원의 재임기간이 됩니다.

○ 그리고 임원의 등기는 관할청의 취임승인 후 3주일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취임한 날과 등기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임을 임기 도중에 하여도 되는지 학교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일인이 임원을 중임하는 경우 임기만료 이전에 재선임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중임은 계속할 수 있는지 중임은 여러번 반복하여 임명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사의 경우처럼 1회 등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 계속 재임이 가능합니다.

생리결석에 대한 문의

질의

○ 여학생에게는 생리결석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제화 되어 있나요? 관련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2006년 1학기부터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현행 훈령(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에 의거하여 학교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여학생 생리결석 인정으로 인한 성적처리 등 성적관련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자격증 기재

질의

○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컴퓨터관련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 일주전(3월2일)에 취득한 자격증이라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5.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자녀분의 자격증 기재 여부 관련하여,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11.2.24, 일

부개정, 교과부 훈령 제205호) 10조에 의거하여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에 한해 기재가 가능하므로 기재는 불가합니다.

○ 2010년에도 중학교는 자격증 및 인증을 기재할 수 없었으며, 2011년부터는 고등학생 재학 중 취득한 기술관련 자격증 등에 한해서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교육유발요소가 있는 어학 및 한자 등 자격증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외고 입학에 지역제한

질의

○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지역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고가 지역에 없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학교선진화과]

○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학 영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로, 어학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이들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우선은 이러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임을 유의하시고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제도 변경의 시기는 외고가 현재 야기하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비교육적인 현상의 파장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전체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고 지역제한 철폐 요청

질의

○ 왜 외고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다른 지방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이는 학생간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시도간 균형적인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09.3.27일자 개정을 통하여 전국단위 모집에서 지역단위 모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외고의 경우 현재 전국 31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학년도부터 외고, 국제고 등에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소를 배제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내신+면접)이 도입되었습니다.

○ 그리고 신입생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고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수업료 등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외고 입학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러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하여 외고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거주시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질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2년 동안 외국에 부모와 함께 가는 경우 처음부터 유예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년 유예를 받고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면제 받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의무가 완전히 면제 되는 것인지, 한국에 들어온 경우에는 바로 면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지요?
3. 초등학교에 취학의무면제 결정을 받았다면 중학교 의무교육도 면제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0. [학교선진화과]

○ 외국에 부모와 함께 나가는 경우라도 상사주재원이나 공무 또는 이민으로 나가시게 될 경우는 면제 신청을 해당학교에 하게 되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미인정 유학은 3개월간 결석처리 후 유예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년 후 다시 연장을 해야 합니다.

○ 면제 받은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면제 효력이 상실 됩니다. 물론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즉시 면제효력이 상실 됩니다.

○ 초등학교에서 취학의무면제 결정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면제사유가 지속되는 한 중학교 졸업 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취학 절차

질의

○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의 신분입니다. 자녀가 내년에 8세가 되어 취학연령이 됐는데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등록자실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6.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관련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해 2000학년도까지는 입학이 불가능하였으나, 우리부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의 취지와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한다는 국제협약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를 2008.2.22 개정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 등만으로도 초등학교장에 입학 및 전학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를 2010.12.27 개정하여 중학교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등 만으로도 중하교장에게 입학 및 전학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학교별 여건, 해당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교육과정이수 등을 고려하여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학구 내 초등학교 또는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교를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학기간의 학교 성적 처리 및 귀국자의 편입학 서류

질의

○ 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유학기간 동안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외국에서 3년 생활하다가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귀 학생의 경우는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학교에 재취학 경우는 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생성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학 때문에 성적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됩니다. 내신 성적 반영은 각 시, 도 지침에 의거 내신이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자 편입학 시 필요한 서류는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장 직인 없으면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여권사본(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기록),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가 대안학교 교사의 월급

질의

○ 인가된 대안학교 교사는 국가에서 봉급이 지원이 되나요? 사립학교 교사의 대우를 받게 되는지요? 정확히 인가된 대안학교 교사의 처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2. [학교선진화과]

○ 모든 초중등 교사의 봉급은 국립학교의 경우 일반회계(국고), 공립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안학교 특성화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사 인건비에 대한 재정결함을 보전 받고 있습니다.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거 설립된 각종학교 형태의 사립 대안학교(3개교 : 서울2, 경기1)의 경우에는 모두 등록금 수입, 법인 전입금 등의 학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인가된 사립 대안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일반 사립학교와 같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을 받지 않는 관계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책정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여타 신분 등은 처우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게 됨을 첨언 드립니다.

일반고등학생 전학 관련

질의

○ 일반고등학생이 다른 도로 옮겨 이사를 갔다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원래 다니던 학교로 가야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고교의 전학은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장 허가 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운영되는 1학년말까지의 전학은 용이한 편입니다.

○ 그러나, 개별 학교마다 특성 있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므로 인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열을 달리하는 학교간의 전학은 더더욱 교육과정 운영상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간에는 학생모집전형의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교의 경우 동일지역내 거주하는 학생 중에도 선발고사에 불합격하여 입학하지 못한 학생이 존재하므로 거주지 전입만을 이유로 일반고교로의 전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해당 시도로의 고교생 전입학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학습 자료 확인 방법

질의

○ 과학교육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자기주도학습'을 발간했다고 하는데 자료집을 올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

○ 문의하신 자기주도학습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학부모 -〉 주요정책(http://www.mest.go.kr/me__kor/parents/parents1/parents11/index.html) 또는 고입정보 포털(http://www.hischool.go.kr)에서 자료 확인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학 방법

질의

○ 아이가 해외 초등에 입학하려는데 주위에서 유학이라고 합니다. 유학 후에 다시 한국 학교

에 돌아왔을 때 학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3.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다음에 해당하는 귀국학생이 외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정규교육의 그 해당 수학기간을 인정받아 국내학교에 재취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 외국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유학하는 초중학생
- 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체류하며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학칙의 의거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등에 따라 학교에서 학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 등으로 인하여 학력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자율과 교과시간 배정방법

질의

○ 현재 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교과시간 배정이 어느 정도 자율적이라는데 특정과목에 몰려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2. [학교선진화과]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2009개정교육과정상 필수이수단위 50%이상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다만,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동 정책에 대해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 등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부는 자사고뿐 아니라 고고다양화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전반에 걸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진단 및 평가를 금년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율형사립고 제도가 학비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질의

○ 현재 중학교가 무상교육이며 차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고등학교를 사립으로 유도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6. [학교선진화과]

○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학사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책무성을 평가받는 학교 모델입니다. 자사고는 서울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해당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추첨 등의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라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학비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사고를 늘린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공립고의 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이유로 일반 학생들에게 학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기결석자 처리 방법

질의

○ 초등학생이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 50일 정도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장기결석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3개월이상 장기결석일 경우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독촉·경고 및 통보)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취학의 독촉 등)

① 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전입시 학적절차

질의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 학력 인정과 학적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1.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학력이 인정되며,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

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 재외공관장에서 확인받은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 학년 해당 학과 학업성적으로 반영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급의 절차

질의

○ 아이들의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 조기진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조기 진급은 어떤 학생이 어떤 절차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6.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이하 "교과목별조기이수"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 제6조 (교과목별조기이수의 인정)

①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각급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조기입학 방법

질의

○ 조기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에 필요한 동법시행령 15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학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시기 선택권을 부여하며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1년 빨리 또는 1년 늦춰 입학시키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 작성기간에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2항)
2.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아동명부 정리에 따라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취학적령기 보다 1년 빨리(만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시키고, 1년 늦춰(만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3항)
3. 취학절차 시기 조정 - 읍·면·동장이 현행 11월에 작성하던 취학아동명부를 9월에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취학통지 일정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의 경우 2011년도에 입학대상이 되오나 앞에서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이 가능하므로 원하시는 학년도 즉 2010년 또는 2012년에 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령개정이후 입학대상년도표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년 입학대상 : 초등학교 : 2004. 01. 01 ~ 2004. 12. 31 생

   * '12년 입학대상 : 초등학교 : 2005 01. 01 ~ 2005 12. 31 생

   * '13년 입학대상 : 초등학교 : 2006 01. 01 ~ 2006 12. 31 생

○ 또한, 셋째자녀의 조기입학의 경우 해당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적 측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학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시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해 조기입학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며, 학교장과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입학은 조기입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졸업장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질의

○ 초등학교 졸업장을 분실한 경우 다시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서 발급을 받

아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학교선진화과]

○ 졸업장은 졸업할 당시 한번 발급이 원칙이며,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기 원하신다면 졸업하신 해당 학교를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학교가 폐교되었다면 해당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로 문의 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유급 관련 질의

질의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습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 유급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중학교 유급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질병결석시 제출서류

질의

○ 질병으로 결석한 학생이 질병결석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학교에 제출하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특례입학 자격 기준

질의

○ 국제고 특례입학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82조 3항 특례입학자격 관련하여 부모모두 외국인이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다목에서는 특례입학자격으로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또한 제82조제3항제2호의 특례입학자격은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몇일인가요?

질의

○ 학교에서는 꼭 이수해야 할 수업일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법으로 1년에 몇일 이상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4.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수업일수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등학교 부모직장근처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직장근처 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관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학부형 직장 근처학교로 배정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

○ 초등학교 입학 배정 관련하여 거주지 우선 배정을 기본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관련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권한사항이므로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조기진급제도

질의

○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지식과 능력이 탁월할 경우 5학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6학년으로 올라 갈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월반과 흡사한 제도로 조기진급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2005년 시도교육청별로 시행지침을 수립하게 했으며 각 학교의 학칙에 동 시행령 규정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특수목적고 지정한 학교 현황

질의

○ 1970년부터 1995년까지 교과부에서 특수목적고를 지정한 학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일부 학교는 관보에 고시된 자료가 있어서 확인이 되었는데, 나머지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4. [학교선진화과]

○ 우리부에서는 지난 1월에 고등학교 입학정보 포털사이트(www.hischool.go.kr)를 개설하였습니다. 학교 유형별 특징과 전형방법, 학교명단 및 홈페이지 링크 등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목고 현황 등)고입 포털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율휴업일 결정 절차

질의

○ 학교 자율휴업일을 결정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휴업일을 결정할 때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 학부모가 휴업일 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4. [학교선진화과]

1. 학교별 재량휴업일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에 의거 실시

○ 학부모협의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재량휴업일 제정. 홍보

2.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수업일수)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

②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정의

질의

○ 사립학교법이나, 법령에 '학교법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립학교 경영자를 지칭합니까? 학교법인 자체를 지칭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학교선진화과]

○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학교법인” 또한 같은 의미로 보아 사립학교경영자를 제외한 학교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학교법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5. [학교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법인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은 기본재산에 불과하므로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학교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법

질의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교직원의 행정관련 업무 경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보조부를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예를 들면, 각종 누가기록부 등)하도록 하는 것으로 누가기록 자료를 출력하여 결재 받지 않으며 또한 수기장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학생상담 보조부는 학생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 관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질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대장에 따른 정정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9.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11.02.24, 일부 개정 중 제 19조 자료의 정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시 자세히 안내해드렸으니,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관련

질의

○ 학교생활기록부 용어정의에서 사용자의 의미

회신 회신일 : 2011. 6. 21.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학교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학교장의 임명을 받은 교사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는 학급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및 필요시 교직원 중 전산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을 통칭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의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장기간 학교를 결석할 경우 출석은 어떻게 처리

한요? 만약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에 의거 해당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32주(8개월)나 학년말까지 의사 진단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재요구를 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 결석으로 진급과는 관여되지 않습니다. 출석인정 학생에 대하여는 진단서 외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유급이 가능한지

질의

○ 학부모가 학년말에 진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중학교 1학년 학생이 2학년으로)유급을 시켜도 되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유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지 않았거나,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이수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학부모가 원하여 유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유급을 허락할 경우 내신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생수가 증가하면 다음년도에 학급을 증설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교원을 또 충원하여야 하며, 상급학생과 하급학생이 같이 수업하게 되어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배들도 연쇄적으로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 또 유급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즉 유급이 사회적으로 유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내신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와 같이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유예 또는 휴학을 통하여 충분히 건강을 회복한 후 진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텝스(tepr)성적 등재할 수 없는지

질의

○ 올해부터는 비교과에 교외 자격증이나 해외 봉사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취득한 텝스성적이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올해 노력을 기울여 성적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텝스성적이 올해부터 등재 될 수 없다는 군요. 제 낮은 텝스성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6. 17.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은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2010 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란에 각종 자격증 및 인증의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2011년도부터는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사교육유발요소요인이 있는 외국어 분야 및 인문 분야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텝스 성적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학업성적 관리 위원 관련

질의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와 학부모 위원도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0.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업성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구성은 학교장을 위원장,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위원에 한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거주 학생 편입시 수업일수

질의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국내에 올 경우 학제가 다른데 자기학년을 찾아가려면 어느 시기에 입국하여 편입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외에서 다른 학교의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대학 입학시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합니다.

○ 따라서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편입할 때 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 외국학교에서의 수업일수 부족은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학제이수만 판단합니다.

에듀팟 관련

질의

○ 에듀팟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학교혁신과로 전화하면 콜센터로 콜센터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연결만해주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없네요. 문의 사항은 에듀팟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활동 학교장이 인정한 체험활동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혹시라도 학생이 허위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린다거나) 승인해 준 교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활동 내용을 교사의견을 입력하고 승인하고 한 것은 교사이잖아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3.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에듀팟에 탑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한 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활동의 내용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승인할 때 사실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담임교사 혹은 해당활동의 담당교사는 사실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또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은 교사의 책임문제에 앞서 교사로서 교육과정내의 활동 그리고 학교계획에 의한 학생활동에 대한 책무성입니다.

에듀팟 기록 사전승인요청에 대하여

질의

○ 에듀팟 기록에 대한 사전 승인요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3.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에듀팟에 학생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당해년도 활동을 당해년도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사전에 했음에도 승인요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 수 있어 이미 3월에 1차 전년도 자료 승인 요청 기간을 주었고, 이때 미처 못한 학생이 있어서 4월 한달간을 2차 전년도 자료 승인 요청 기간으로 두었습니다.

○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전년도 자료를 새롭게 입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입력을 했음에도 승인요청을 못한 학생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에듀팟 입력은 반드시 학생이 해야 합니다.

○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에듀팟 활용은 학생 자율 선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생 스스로 활동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팟에 자녀가입하기

질의

○ 얼마전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어떤 문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에두팟에 가입하라고 하는 문서였습니다. 개인정보 넣고 자녀 추가를 눌려 찾아서 넣고 승인여부에 요청을

눌려야 하는데 마우스에 손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차례 하였는데도 안되더군요. 그래서 상담전화를 했습니다. 에듀팟 홈피 첫 화면에 보면 좌측하단에 상담전화 1544-4409로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담원이 상담중이라고 합니다. 대기 하실려면 1번을 눌려라고 합니다. 그러다 좀 있으면 다시 하라고 합니다. 정말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통화 못했습니다. 에듀팟 사용하게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4. 6.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에듀팟에 대한 관심과 좋은 말씀 에듀팟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 및 학교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신장하고,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교과외 영역에 대한 활동 강화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시스템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11년 1단계 성능고도화 사업을 실시하여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2단계 성능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에듀팟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에듀팟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활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 교과부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 2단계 성능고도화 사업과 함께 상담센터 증설, 상담시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

질의

○ 에듀팟 가입 도중 FireFox라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는 가입을 못하던군요 그래서 Internet Explorer로 접속하니 가능 하더군요 근데 이건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에서 끼워파는 인터넷 Internet Explorer 때문에 마이크로 소프트의 운영 체제를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운영체제 거래를 위해 정부기관 홈페이지만이라도 다른 웹브라우저를 이용하게 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6.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에듀팟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 및 학교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신장하고,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교과외 영역에 대한 활동 강화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에듀팟은 윈도우기반의 경우 익스플로러외에 FireFox, 구글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윈도우 익스플로거의 경우 에듀팟 전용브라우저가 자동설치되지만 다른 웹 브라우저의 경우 수동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방법은 에듀팟 사이트의 전체알림방 35번 게시글 첨부파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듀팟에 대한 관심과 좋은 말씀 거듭 감사드립니다. 에듀팟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비 IE 계열 사용 불가

질의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독서교육 지원시스템이 비 IE 비 윈도우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웹표준을 준수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7.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두 사이트 모두 현재 비 IE 계열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이트는 교원(선생님 등)의 접속을 위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 IE 계열의 웹브라우저의 경우 관련 기능을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IE 계열의 브라우저를 표준으로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웹표준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OS와 웹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사용대상 확대

질의

○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은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창의적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상황이라면 초등학교 교사나 학생들도 가입이 가능토록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7.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현재 우리 부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문가 및 현장교원과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에 시범운영 후, 2012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의적체험활동을 수련관에서 해도 되는지

질의

○ 내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계획에서 4-6학년 계발활동을 인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30.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가 학교의 특성과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운영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4-6학년의 계발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을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내용은, 학교계획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일 경우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용에 따라 수익자 부담, 학교예산 지원, 연계기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에 대한 질의

질의

○ 질의1) 제89조②항 규정에 편입학이라 함은 재학생에 국한하는 것인지?

○ 질의2)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규정의 중학교 졸업자란? 고등학교 중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 질의3) 제98조의4 규정은 89조②항 규정에 상관없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자격에 해당한 것인지?

○ 질의4)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정규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도 학년 결정 입학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10. 12. 22.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②항 및 제98조의4 관련

○ 질의1) 제89조②항 규정의 '편입학'은 재학생에 국한하는 것인지?

⇒ 동 규정에서 '편입학'이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갖춘 인정유학 귀국자녀, 탈북청소년, 외국인 학생, 고교 학업중단학생 등)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의2)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규정의 중학교 졸업자란? 고등학교 중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 동 규정은 대상은 기본적으로 질의1의 대상자와 동일하여 고교 중퇴자를 포함합니다.

○ 질의3) 제98조의4 규정은 89조②항 규정에 상관없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자격에 해당한 것인지?

⇒ 고교 전·편입학의 세부절차, 학년결정 입학 자격 등은 전·편입학, 학년결정 입학을 희망하는 고교를 지도, 감독하는 관할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질의4)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정규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도 학년 결정 입학이 가능한 것인지?

⇒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는 기본적으로 고졸 학력 이상을 갖추었으므로 제98조의4 규정에 따른 고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학년결정 입학을 희망하는 고교에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음에도 동 학생에 대한 편·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논외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은 고등학교의 장이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학교 외 학습경험(예시)

○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에서 적정기간 학습한 경험 - 해당기관에서 2학기(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학습 시, 고등학교 2학년 편입학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등

※ 전학 또는 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동 제도 적용대상이 아님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적정기간 학습한 경험 - 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해당

※ 국내외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 - 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등

※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동 제도는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정책이 미치는 범위나 속도, 현장에서의 체감도, 개별 상황에 따른 세세한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 드리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제도의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학년결정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청 또는 해당고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학관련

질의

○ 자퇴하였다가 중간에 다시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 학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5.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추진목적

○ 학업중단자 등의 학교 재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학력인정 방안의 마련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공포일/시행일 : 2010.2.26 / 2011.3.1)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예시) (입학 신청자 → 입학 희망학교)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입학 신청 시 '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입학 신청학교)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통과 후 → (입학 신청학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 입학 신청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입학 허가 여부' 결정 → (입학 신청학교 학교장)입학 학년을 포함하여 입학 허가 여부 결정 → (학교장 → 입학 신청자)결정 결과 통보 → 입학 신청자에게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허가하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 학년 포함)

※ 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NEIS 학적처리 포함)

○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기준(예시)

○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에서 적정 기간 학습한 경험 - 해당 기관에서 2학기(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학습 시, 고등학교 2학년 편입학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등

※ 전학 또는 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중인 학생은 본 제도 적용대상이 아님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적정 기간 학습한 경험 - 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해당

※ 국내외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 - 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등

※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 그 외 시,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등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예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한 지필평가 실시 - 지필평가 내용은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수준으로 출제(예: 고2 입학 신청자에 대해, 고1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서 출제 등) - 사회(또는 과학)교과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편성, 운영중인 과목 중 입학 신청자에게 선택기회 부여

※ 학교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과목 변경 및 과목 수 가감 가능 (전문계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 포함 또는 전문교과 과목만으로 대체 등 포함)

○ 평가에서 취득한 점수가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 과락, 일정 수 이상의 과목에서 '과락'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불합격 - 지필평가의 난이도는 해당 학교 정기고사에 준하여 운영

※ 과락기준 및 불합격기준 등은 해당학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접수 이전에 결정, 안내

○ 기타사항

○ 입학 희망학교, 입학 신청 시기, 입학 결정 시기 등은 시, 도교육청별 고교 전편입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이 가능한 시기를 학년초 특정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 입학 희망학교의 정원 범위내에 한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도 운영 여부 등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양식 및 정원 여부 등은 고교 학년 결정 입학을 희망하는 해당 시, 도교육청에 직접 문의

고졸 검정고시 학생의 고교 재학가능여부

질의

○ 해외근무 등으로 아이는 해외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본인이 원하는 학년에 입학이 어려워 최근에 고졸 검정고시는 통과하였고 수능을 보기 위해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학력은 고졸이지만 일반 인문계 고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7.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고등학교 졸업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경우도 고등학교에 편입학이 가능하나, 편입학의 결정권은 해당학교의 장에게 있으므로 자녀분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도에 따라 고등학교 편입학 관련하여 일부 규정들이 상이한 관계로 자녀분의 편입학과 관련되어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 학적담당과 통화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체험학습,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질의

○ 체험학습,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 교환학습, 교과야외학습 등의 용어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4.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주관 현장 체험학습(교과 및 창의적재량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현장교육활동 즉 실험, 관찰, 조사, 수집, 토론, 노작, 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말함)과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1주일 이내의 체험활동 또는 현장 체험학습)과 학교(도, 농)간 교류 체험학습(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서 타 학교에서의 위탁교육 등의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이수 학기 관련

질의

○ 현재 싱가폴에서 6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청심국제중학교를 지원하려고 생각중인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다니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6학년, 그러니까 12학기를 전부 마친 상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9월에 원서접수던데, 학교만 외국이지, 9월이면 한국이랑 똑같이 6학년 2학기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하는게 불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8.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국내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져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므로 위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면 국내 중학교에 진학할 자격이 됩니다. 위의 '이와 동등한 학력'의 조건 중 하나로,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어집니다,

○ 만약, 싱가폴에서만 학교를 다녀서 총 5.5년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면 국내 중학교 진학자격이 없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몇년 다니다가 싱가폴로 유학하여 6학년1학기를 수료하였고, 국내와 싱가폴의 정규학교 재학기간이 총6년 이상이라면 국내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해외유학후 재입학시 다니던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는지

질의

○ 초등학교 약 1년반 정도 다니다가 해외학교를 나간 후 다시 한국의 학교에 재입학 하려고 했는데 정원의결원이 없다고 전입신청을 하고 순서대로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학교운영

규정에 따라서 다니던 학교에 못 다녀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4.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초등학생의 해외유학 이후 정원 외 학적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1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위학교의 학생정원 등은 해당학교의 시설, 교사 배치 등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자녀분이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교육청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재취학 학교를 배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석일수 모자를 경우 체험학습 인정 등

질의

○ 해외 대학입학을 위해 고3학년도 9월 27일 비행편으로 가야하는데 문제는 수업일수가 이틀이 모자랍니다. 방학때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이틀 운영해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학교운영지침에 수시입학 후 체험학습 사항이 있는데 이 경우엔 수시입학 후 체험학습으로 들어가진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5.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현행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조에 따라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수업일수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각 학년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업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 48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학교장 재량에 따른 특별프로그램 참여시 출결 인정 여부는 당해 고등학교의 학칙에 따라 운영할 사항이라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사립학교 학력인정 관련

질의

○ 알제리 사립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한국의 학교에서 그 학생의 알제리 현지에서의 학력인정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따라서 첫째, 한국 교육당국에서 알제리에서의 초 중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한국의 교육당국에서 알제리에서의 학력인정을 해 줄 수 없다면,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1. [학교선진화과(창의체험활동지원팀)]

○ 유학 후 귀국학생의 학적 처리 사항은 의무교육단계인 초, 중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29조와 제75조, 고등학교는 제92조를 근거로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초, 중, 고 학력의 국내 인정 여부는 정규학력인가 학교라면 공, 사립 구분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학 후 귀국학생들의 사례가 다양하여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학생의 유학상황(인정 유학 여부, 해외재학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이수 학기 등) 및 학생의 수학능력(교목과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취학(초, 중학교 단계) 또는 전, 편입학(고등학교 단계), 학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재취학 또는 전, 편입학 등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교육청(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 도교육청)에 개별사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제92조(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75조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으로 본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질의

○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어떤 아이들은 돈을 내고 여러 가지 강좌를 들을 수 있으나, 일부 아이들은 한 강좌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학부모지원과]

○ 저소득층 자녀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은 꼭 필요하며, 현재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매년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전국 48만명 학생들에게 연간 36만원 내외의 자유수강권 지원)

○ 또한 2012년에는 전국의 60만명 학생들에게 연간 48만원 내외의 자유수강권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확대

질의

○ 돌봄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방과후 돌봄교실을 좀 더 확대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0. [방과후학교팀]

○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로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방과후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그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11년 1,000개 교실)

○ 앞으로도 우리부는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교실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질의

○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로 겨울방학, 봄방학 동안 아이들 점심식사 해결과 돌봐 줄 방법이 없어 고민입니다. 지역 보육센터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고, 아이들을 맡길 마땅한 학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1. [방과후학교팀]

○ 우리부는 방학중에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방학 중에 4,991개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은 4,48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0.6월현재)

○ 특히, '11년부터 운영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방학중을 포함하여 연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

고,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기중에는 물론 방학중, 토요일과 같이 사교육 수요가 많은 시간에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임 가능한지

질의

○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지역위원으로 위원직을 바꾸면 연임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은 선출직이므로 위원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조례에 의거하여 연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직 임기를 마치고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수

질의

○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수는 학교별로 똑같은가요? 학교에는 몇명의 운영위원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9. [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및 성격

질의

○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고 그 성격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9. [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차기구이자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법적 성격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방법

질의

○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학부모지원과]

○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로는 1.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등에 참여 2.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또는 의견 제시(학생의 의견수렴등 가능) 3. 학교 학부모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 4.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으로 공모 참여(매년 3~4월경 공모)하여 정책관련 의견 제시 5.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운위 위원 선출 방법

질의

○ 학운위 위원 선출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

며, 교원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3. [학부모지원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은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시도 조례 및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완료 후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학운위의 책임 한계

질의

○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4. [학부모지원과]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 생 건 강 안 전

체육 초중등학교 설립 가능한지

질의

○ 체육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초·중·고 설립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1. [학생건강안전과]

○ 초·중·고등학교의 설립 관련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며, 대학교의 설립 관련규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 이에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학교 설립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국가정책사업 중 학교 조명등 설치 계획

질의

○ 2011년도 국가 정책사업 중 학교조명등 설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년부터 15년까지 매년 200군데씩 300억원을 투입해서 학교 운동장에 조명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1년 이후 차년도부터 15년까지의 대략적인 추진계획도 요청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5. [학생건강안전과]

○ 먼저, 야간조명등 설치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방과후 학생 체육활동 및 학생운동선수 정상수업 이수 후 운동, 생활지도 등을 위해 초·중·고에 야간조명등, 스프링클러 등 설치 지원

* 중앙집중식 조명으로 민원 최소화 등 고려

○ (목표) '11년 200개교, '15년까지 1,000개교 설치 - 200('11)→200('12)→200('13)→200('14)→200개교('15년)

○ (선정) 주말리그대회 전환 종목 운영 학교 및 대회장소로 사용되는 학교 우선 지원

* '09년부터 축구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 '11년도부터 야구를 전환 예정

○ (예산)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과 지자체(지방비)가 5 : 5 분담 - 30,000('11)→ 30,000('12) → 30,000('13)→ 30,000('14)→ 30,000백만원('15년)

* 내역('11년) : 15,000백만원(150백만원×1교)

* 스코어보드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지자체, 학교 예산으로 충당

○ 11년도는 활성화 방안이 9월 30일자로 발표해서 지자체에서 예산 심의에 들어간 시기라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적은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15년까지 계획을 실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기록부 수기장부 계속 보관해야 하는지

질의

○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강기록부는 현재 나이스시스템의 보건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기 장부 또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기장부를 계속 보관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0. [학생건강안전과]

○ 학생건강기록부는 법정장부로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누가기록·관리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정보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학생건강기록부 수기장부는 제도변천과정(sa -〉 cs -〉 neis)에서 일정기간 수기토록 한 것으로, - 학생의 수기자료를 현행의 neis 건강기록부에 이기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이관, 보존해야 합니다.

○ 상기 학생건강기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법」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미한 계획변경시 학습환경조사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학습환경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교육감은 학교 또는 정화구역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비구역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동 조사는 실제 지정 고시된 지역내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일조량의 경우 사전조사 필요)에 교육청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단계에서는 학습환경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제6조의2 및 동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변경에 따라 변경된 정비구역내 교육환경보호계획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관련

질의

○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30%를 보조금으로 도교육청에 교부하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완료후 정산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6. [학생건강안전과]

○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완료후 정산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동 사업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의 지방비 공동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지관별로 정산하여야 하며, 지자체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환경 평가 관련

질의

○ 2003년 3월 교육부로부터 00대학 설립인가를 득한 후 2004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기존부지 포함 2필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 대책으로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 여부를 사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제도를 2008. 4. 28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교육환경평가대상은 학교설립의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바, 기존 운영중인 학교의 확장에 대해서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용지 확장에 따라 기 설정·고시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변경이 불가피한 바, 사전 정화구역 설정 고시권자인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정화구역 변경에 따른 유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환경평가 관련

질의

○ 기존에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지 내에서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새로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하지 않고 학교설립 예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중

인 학교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관리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는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의 급이 바뀔 경우 학교의 급에 따라 적용될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교육청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평가 관련 질의

질의

○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인(교육환경평가제도) 1990년대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공공시설입지승인(대학교)을 득하여 공사 완료 후 현재 대학교로 운영중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회 학교 주변의 토지를 매입(기존 학교부지의 10%이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추진중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교육환경평가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용지 선정시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도록 하는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환경평가대상은 학교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운영중인 학교는 교육환경평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학교용지 증가에 따라 정화구역의 설정 고시가 불가피하므로, 학교용지 선정시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변경되는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와 필요시 이전대책 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관련

질의

○ 재개발구역내에 학교는 초등2개, 중등1개가 계획되어 있으며 2008년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면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12조에 의해 학교와 인접한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 상업용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재검토는 평가지준에 의한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이 변경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재개발구역내에 학교에 대한 위치변경 및 주거용지, 상업용지의 변경없음.

○ 그리고,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기준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도로의 접근성도 현재 25미터 미만 도로에 2면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음. 이와 같을 때 초등학교 1곳이 25미터 미만의 도로와 2면이 접하고 있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한 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공원 접하여 도로가 나란히 설치하여 교육환경여건이 좋아지도록 기반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교육환경평가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학교보건위원회 검토)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한 이후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동 규정은 학교용지 주변 또는 학교용지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 바, 기존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와 비교하여 시도교육청의 심의기준 이내의 변경 또는 객관적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교육환경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환경평가 재시행여부 관련

질의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의 위치이동(20m)시 교육환경평가의 재시행의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

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의 2에 따라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새로이 선정하는 개념으로 보아 새로이 선정한 학교용지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교육환경평가평가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 관련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교과부 고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평가제도 관련

질의

○ 농촌의 폐교된 학교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자 할 때, 이 학교는 이미 폐교가 되어 몇 년째 방치된 상태로 학교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주변에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조 3호에 따른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 설정·고시하게 되는데, 동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5조제4항에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대상 중 심의대상 제외의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한 용지(사립의 경우 교육감의 설립인가(설립계획승인)를 득한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용지)가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폐교된 학교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로 존치될 경우 학교설립예정지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정화구역내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가 아닌 것으로 변경될 경우 정화구역의 설정고시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폐교이후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에서 제외된 경우 다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후 학교용지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근거

질의

○ 급식비 지원에 대해 논의된 처음 시점이 언제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5. 6. [학생건강안전과]

○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당시부터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에 동 사업이 지방이양 되어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급식비 지원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앙정부의 기본입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특정분야 교육재정 지원이 집중될 경우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우선하여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안학교 설립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질의

○ 학력인가 대안학교 설립시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1.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관계 법령**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2. 학교란?(대안학교도 포함)
3. 학교설립예정지란?

회신 회신일 : 2011. 3. 8.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대안학교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규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서도 학교설립예정지의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개교이전까지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없어, 현재 우리부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교육환경평가의 경우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대안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므로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설립계획수립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상대구역 타구장(야구장) 소음관련 설치문의

질의

○ 우리 타구장은 학교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만약 설치 후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소음이 초과하여 주변 주택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 될 경우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4.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구장(타구장)은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바, 동 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 야구장(타구장) 설치에 따른 주변 주택지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 등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다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지내 당구장 설치 관련

질의

○ 대학교 내 당구장 신고문의를 받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영업을 할 목적으로 당구장을 설치하려하는 데 이때 당구장도 교육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6. [학생건강안전과]

○ 대학 교지내 있는 모든 시설은 교육 및 연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용 기본시설인 학생회관, 교수회관 등의 학교구성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부대시설로 인정됨에 대학의 장, 즉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구장 역시 학생회관 및 기숙사, 교수회관과 같은 학교 교지내 복지차원의 교육 및 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 수익을 보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부 과격한 시설이 아니라면 이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므로 인정됩니다. 소비조합의 매점이나 이발소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캠퍼스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질의

○ 대학교 캠퍼스 부지내 호텔 및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교지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0. [학생건강안전과]

○ 1.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2. 저희 교과부에서 동 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여부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 및 재학생과 학교관계자의 편의시설 등) 3. 그러기에 비즈니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설치 등은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등 타 법률과 함께 접목시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해석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학중에 실시하는 급식이 학교급식인지 여부

질의

○ 방학중에 급식을 실시할 경우 이를 학교급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6. 2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이외에도 급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구체적 영양관리 기준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고, 학교급식 일지 등 법정장부는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업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인지

질의

○ "스포츠 토토"복권 판매업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인 '사행 행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11. 10.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행 행위장' 또한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스포츠 토토' 판매업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이라면, 「학교보건법」상 '하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화구역 설정·고시권자인 해당 교육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일부가 포함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질의

○ PC방 전용 출입구는 정화구역 밖에 있으나 PC방 시설의 일부가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

우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9. 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일부라도 정화구역내 포함된다면 이는 동 금지행위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 출입구의 위치에 관계없이 동 구역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 관련

질의

○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보상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2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벌률상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정한 질병은,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범위는 안전사고의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질의

○ 교육환경평가제도가 2008, 4.28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내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2003년 토지매매협약체결후 2005년 전문대학설립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안건번호 제424호)을 거쳐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법인 설립허가(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 - 4056호)를 받아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용지선정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7.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제도 시행 이전(08.4.28)에 학교 용지 선정과 관련하여 교과부(당시 교육부)와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협의 당시 주변 여건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 예정지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 유무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추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볼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차이점

질의

○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의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학생건강안전과]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절대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 있는 경우 대학원설립 못하는지

질의

○ 특수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전화방이 있어 용지로 선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화방'은 청소년보호법 규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대학원에 다닐 학생들은 다 성인인데 전화방이 절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대학원의 설치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2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용지 선정시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교육환경가항목에는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 주변에 대한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용지로 선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의2)학교용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고시하고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행위 및 시설을 절대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학교가 설립될 수도 없음,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이전/폐쇄조치 필요)학교보건법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동 구역내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단지 보호대상이 미성년자인 학생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동 시설로 인한 학습환경 저해 및 안전, 위생에 대한 보호 측면이 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로 학교보건법에서는 유치원 및 대학의 경우 당구장,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미니게임기(대학만 적용제외),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담배자판기, 노래연습장업 등에 대해서는 정화구역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전화방이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기 행위 및 시설과 마찬가지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목적은 학교의 보건·위

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 하고 있는데, 대학원대학의 학생의 상당수가 성년의 직장인이라는 것만으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대학과 차별을 둘 만큼 그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없고, 대학원대학에서도 일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학습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대학 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대상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더욱이 원격대학 등 일반적으로 교육활동과 시설의 연관성이 적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을 배제할 필요성이 대학원대학보다 강하다고 보이는 학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특례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대학원대학은 이를 대학과 구별하는 명문의 규정을 법령에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의 보호 등 「학교보건법」의 규율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업무 일부위탁 절차는?

질의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급식 업무위탁(일부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9. [학생건강안전과]

○ 2006.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조리 및 배식·세척 업무만 업체에 위탁하는 일부위탁(부분위탁)은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위탁이 가능하나,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구강검진 병원 지정

질의

○ 몇 해 전부터 초등학교 구강검진의 시스템이 학교별로 특정 치과로 한정되어 꼭 그곳에서만 검진해서 기록을 받아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구강검진을 받던 병원이 있는 학생들은 그 병원에 가서 검진표를 작성해 오도록 해주고, 특별한 병원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정병원을 정해주어 검사해 오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5. [학생건강안전과]

○ 학생 검진기관 지정은 현행 법령에서 학교의 장이 두개 이상의 검진기관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가정에 안내하면, 학부모님이 선정된 기관 중 한 개 기관에 방문, 검진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 학생 구강검진은 치료가 아닌 성장기 학생들의 구강보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발견하여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학생 개인이 정기적으로 치과검진 및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구강검진을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여 생략하시고 자체 검진기록을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상대정화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질의

○ 유치원부지 근처 정화구역에 축산폐수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4. [학생건강안전과]

○ 축산폐수 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정화구역내 설치가 불가한 시설인 바, 동 시설은 학교부지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급식 현황과 식중독 발생 현황은?

질의

○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초·중·고에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식중독이라든가 위생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3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급식 운영방식 현황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실국마당-교육복지국-정보자료실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식중독 예방 대국민 사이트(http://fm.kfda.go.kr)의 식중독 발생 통계 또는 식중독 발생동향을 살펴보면 연간 시도별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도물 수질 검사 필요

질의

○ 학교에서 수도 배관을 스텐레스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수돗물로 급식을 하기에 수질검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1. [학생건강안전과]

○ 우리부에서는 학교 먹는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위하여 매년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까지 시달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의 수도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중 저수조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수질검사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 채수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측정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옥내급수관에 대하여 매년 일반검사(수질검사 포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수질검사상 초과항목 발생시 초과항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왜 실시하는지?

질의

○ 우유가 건강에 이롭다는 의견과 해롭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아는데 정부에서는 왜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 우유급식은 낙농진흥법 및 축산법 등에 근거해서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조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영양전문가들은 우유는 영양소를 고루 함유한 완전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고른 영양섭취가 중요하고, 특히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우유를 통해 섭취할 수 있어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관련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장에 의거하여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가 "학교 이전" 자체를 심의 기관이 승인하는 것인지, 단지 학교부지에 대한 적합 여부만을 심의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시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대한적합 여부를 위한 평가단계로서, 그 자체가 학교 이전에 따른 심의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인접건물 신축시 일조량조사

질의

○ 학교 일조량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고등학교로 인하여 자녀교육 및 주거생활권에 관하여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육감은 정비구역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검토항목에는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여부는 해당 교육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학교보건법에서 일조량을 조사하도록 한 사유는 일조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일조 부족시 채광율 하락, 겨울철 추가 난방, 운동장 해빙의 어려움 등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우려 등에 따라 최소한의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중 축산물의 기준은?

질의

○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는 학교까지 납품할 때까지 1차가공과 2차가공으로 나누어지는데 도축부터 1차가공, 2차가공이 모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에서 가공하여야 하

는지 아니면 1차가공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안 되는 작업장인 일반 식육점이나 업체에서 고기를 매입해서 HACCP작업장에서 2차가공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한지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7.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동 기준 지정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거나 위의 작업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은 가능하나,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소분, 분할, 재포장한 식육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식재료품질관리기준 위반시 학교장 및 교직원, 위탁급식업자에게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납품업체가 이를 위반한 경우는 학교에서 계약해지와 함께 경찰 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대상은?

질의

○ 초·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학교급식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0.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급식 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이기에 위에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사고 보상 관련 건

질의

○ 방과 후 자율학습을 하고 나오면서 내려오는 계단에 발을 삐끗하면서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0.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안전사고 해당여부는 관할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학부모는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또 불복 시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교사내 소음 측정 기준 문의

질의

○ 학교보건법의 '교사내 소음 55dB(A)이하로 유지한다'에서 교사내가 학교 건물내의 실내(교실)를 의미하는 것인지? 실외 운동장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창문을 열고 측정했을 경우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기 등에 의한 외부소음과 교사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상태를 점검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청력보호와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교사내 소음을 55dB(A)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사내 소음은 소음환경과 소음수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소음환경은 외부소음

의 영향 및 일반교실, 음악실, 복도, 급식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내소음의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소음수준은 소음환경조사에 의거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하고, 학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음측정시 교실내 창문은 개방한 상태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원인제공자에게 소음저감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그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경우는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소음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중창 또는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중 예측기관의 범주 관련

질의

○ 일조시뮬레이션 분석기관이 정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교 또는 정부출연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조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와 대학에서도 수행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정비구역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조의 경우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하되,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교지의 예측일조량에 대하여 정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또는 정부출연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실시한 일조권 관련 예측자료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일조평가를 2개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 사유는 현재 국가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개 기관의 자료만으로는 일조평가의 공정성 또는 검증이 어려운 관계로 2개 기관에서 실시한 일조평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정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교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반 사설 평가

기관도 동 평가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기관과 일반 조사업체를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정하리라 판단됩니다.

학교보건법 중 교육환경평가관련

질의

○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아직 조합으로 승인은 안 받고 가칭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학교용지를 선정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미승인 위원회를 학교보건법 6조2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와 만약 볼 수 없다면 미승인난 위원회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심의신청을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5.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평가서의 실시 주체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용지 선정과 관련한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질의하신 개발사업자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해석할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 부처로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상 교사내 소음기준

질의

○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주거부지와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교사내의 소음은 55dB(V)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 부지와 인접한 주거부지 그리고 학교내 교사의 기준이 다를시 주거부지는 65dB(V)이하로 하고 학교내의 교사는 55dB(V)이하로 유지하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교사내 소음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특성상 정온한 환경에서 학습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 드리며,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호 규정(별표 4 참고)에 따라 55dB(A) 이하로 관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상대정화구역 경계 적용 기준

질의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보건법상 학교지적경계선으로부터 175.53m 학교출입문으로부터 201.66m이므로 금지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운동장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5.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고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화구역의 경계의 주요 쟁점은 학교경계선을 도시관리계획상 고시된 용지로 선정할 건지 아니면, 귀하가 제기하신 실제 활동이이루어지고 있는 경계선(예, 담장 등)으로 정할 건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정화구역 설정시 도시관리계획상 고시된 학교용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를 정화구역으로 설정 고시하고 있는데, 동 사유는 학교 교사의 확장이나, 담장 없는 학교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학생들의 주요 활동이이루어지고 있는 경계(학교 담장)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하신 후 설치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 한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익자 부담 예방접종 건

질의

○ 학교에서의 수익자부담-학부모 부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학교보건교사 및 학교장 명의로 접종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지정 건강검진 지정병원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을 학교보건실로 파견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준비중입니다.

○ 이에 표본작업을 준비중 방문한 학교의 보건교사로부터 학교에서의 단체접종은 교과부의 금지사항이므로 업무 협조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실수요조사자체도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5. [학생건강안전과]

○ 국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정기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바에 우선 근거하는 것으로 학교주관 하에 학교에서의 예방접종은 불가하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복지부장관 또는 자치단체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예방접종 관련 규정

질의

○ 학교에서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학교장, 보건교사와의 업무 협조로 이루어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외에는 현실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안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9. [학생건강안전과]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의 주관하에 의료기관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일지라도 학교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학교의 소음관리 구준과 측정방법

질의

○ 현재 학교와 인접하여 선형개발(철도 및 도로)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사시 및 운영시 학교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검토할 경우 소음기준을 적용시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피해대상이 학교이므로 [학교보건법] "교사내 소음기준" 55dB(A)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소음관리 기준을 55dB(A)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까지 아침·저녁 60dB(A), 주간 65dB(A), 야간 50dB(A)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관리법보다 강화된 소음기준을 제정한 사유는 쾌적하고 정온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소음 측정장소 등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음(학교보건법은 교실내, 소음진동관리법은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따라서, 철도 및 도로 개발과정(공사중) 및 완공 후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5dB(A)을 초과한다면 소음 저감을 위한 별도의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교사내 소음은 소음환경과 소음수준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소음환경은 교통, 항공 등의 외부소음과 교실, 급식실, 운동장 등의 교내소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소음수준은 소음환경조사에 따라 외부소음의 양향이 가장 큰 교실을 선택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며 소음발생원에 따라 측정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대해

질의

1.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은 언제 나오는지?

2.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3. 프로그램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지?

4. 개인별 특수성(건강한자/비건강자 등)을 감안해서 수립되는 건지?

5. 수립후 개인별로 알아서 하는건지? 아니면 저조자에 대해 특별히 예산을 들여 국가에서 운동처방사를 두고 시설과 여건을 사용할 수 있게 끝까지 추적관리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7. 26. [학생건강안전과]

1. 학생건강체력검사 후 교무업무시스템 내 PAPS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가결과 및 개인별 신체활동처방이 나옵니다.

2.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의 경우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학생별 건강체력 정도, 체력요소별 증진방안, 체육수업이나 가장활동과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되며, 학생들은 신체활동(운동) 후 건강체력일기를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PAPS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신체활동처방(운동프로그램)의 경우 체력요소별, 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밀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전문가, 대학이나 국민체력센터 등과 연계한 운동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위와 같이 개인의 건강체력 수준을 감안하여 신체활동 처방이 제공됩니다.

5.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저체력, 비만학생의 경우 학교별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거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개 등으로 건강체력을 증진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스포츠 자원봉사활동, 스포츠 바우처제도 확대 외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에 관해 문의

질의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시스템에 사용되는 무선심박수측정기 제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조달청(내자)구매공고에 따르면 조달청과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종합체력진단장비의 구성품인 “학생들의 체력평가의 심폐지구력 측정기에 사용하는 심박수 측정기기”는 의료기기법 제 2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박수계(A26080.01,2등급)에 해당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석에 따라 심박수 측정기는 의료기기 2등급이므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9. 24. [학생건강안전과]

○ 현황 - 2009년도부터 보급된 무선심박수측정기는 '종합체력진단장비'로 조달청에 등록되었으나, 이 중 한 업체가 식약청에 '의료기기'로 허가받고, 조달청에 통보됨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은 거래정지 되어 7개 업체는 제외됨 - 동종의 제품이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타제품도 의무적인 사항이며, 위반시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므로 체육용품 등으로 판매될 수 없음

※ 미국과 일본 등도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다른 7개 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시 소요기간이 3~6개월 소요됨(식약청)

○ 검토의견 - 현재 식약청에서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기기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식약청의 견해를 존중하여 추후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초·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구)치료교육교사 1급 자격연수 문의

질의

○ 2007.03.01.자로 치료교육 교사로 발령받아 현재 교육경력은 5년 이상(기간제경력포함)이나 자격전환 발령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정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앞으로 재활복지로 1정 연수가 열릴 예정인가요? 아님 부전공 영어로 1정 연수를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님 재활복지 과목이 희소과목이라서 그냥 중등특수로 받아야 하는 지?

회신 회신일 : 2011. 5. 4. [교원정책과]

○ 정교사(1급) 자격기준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자 중에서 학교장 및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지명합니다.

○ 민원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영어전공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교과 교육경력이 3년이 되어야 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융합형 과학에 필요한 교원자격증

질의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융합형 과학'을 가르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상치과목 교사 임용시 반려'라는 공문이 와서 올해 재임용이 어렵겠다는 학교의 설명에 따라 공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공통과학' 자격증이 필요한 과목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인사담당자에게 재차 교육청에 문의를 드린 결과 '융합형 과학'이 기존의 '과학' 대체 과목이기 때문에 '공통과학'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융합형 과학'은 선택과목으로서 '국민공통교육과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과학'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9. [교원정책과]

○ 학교교육과정운영은 먼저 국가수준 법령에 근거하고 시도교육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계획에 의하여 단위 학교의 장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융합형과학교과의 운영도 과

목의 특성상 공통과학 표시과목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는 것이 전공과목에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교원 수급형편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과학교과 교사가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급형편에 따라서는 관련 전공과목 소지자를 임용권자가 임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관련전공 표시과목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상의 교과목 지도 또한 임용권자인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 즉 교과목 지도와 교사자격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 등 기타 교원수급형편에 따라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이 소지자격과 연계되는 전공과목으로도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자격과 임용(채용)은 분리되어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융합형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질의

○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에서 끝나고 '공통과학' 또한 중학교로 완전히 내려가고, 기존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도 '융합형 과학' 교과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등의 자격증 표시과목만을 가진 교직희망자들이 신규교사로서 고등학교 1학년의 '융합형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요? 보통 사범대학 출신이 아닌 경우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출신들은 공통과학 자격증이 없으며, 사범대학 출신 또한 공통과학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6. [교원정책과]

○ 융합형과학교과의 운영을 비롯한 학교교육과정운영은 먼저 국가수준 법령에 근거하고 시도교육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계획에 의하여 단위 학교의 장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통과학 표시과목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는 것이 전공과목에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물화생지 전공분야별로 나누어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의 교원수급형편에 따라서는 관련전공과목소지자를 임용권자가 임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관련전공 표시과목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상의 교과목 지도 또한 임용권자인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즉 교과목 지도와 교사자격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 등 기타 교원수급형편에 따라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이 소지자격과 연계되는 전공과목으로도 임용또는 채용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자격과 임용(채용)은 분리되어있습니다. 또한 자격검정령상 전공불일치경우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2012년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제에 관해 문의

질의

○ 초등교사와 비교과, 특수교사는 사전예고에 왜 포함되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2. [교원정책과]

○ 이번에 실시된 사전예고는 중등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초등교사와 비교과, 특수교사는 사전예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예고인원은 당해 교과목 교사 중 정년퇴직 인원 및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수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정확한 채용규모는 본공고에서 확정됩니다. 비교과교사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채용인원을 산출하는데 있어 정년퇴직 인원이 거의 없는 등 채용인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을 증원 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본 사전예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2학년도 치료교사 임용가능 여부

질의

○ 2012학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 시험에 특수학교 2급 정교사(치료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응시 가능한가요? 기간을 두고 그 후로는 시험을 제한할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14. [교원정책과]

○ 우리부는 임용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한 적이 없으며, (구)「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치료교육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조치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국·공·사립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행정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알려주시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치료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현직에 들어올 경우, 제일 먼저 자격전환 연수를 받게 되며, 다음으로 부전공 연수,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 후 1정 연수를 받게 됩니다.

가산점 관련 문의

질의

○ 1달 동안 병가를 한 경우, 보직교사나 농어촌 근무 가산점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보직교사 점수 및 농어촌 근무 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교육감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부여하는 선택가산점으로서 귀하의 복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산점 산정은 소속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개명에 따른 인사기록 사항 변경

질의

○ 교육공무원이 퇴직(면직)을 한 경우, 개명에 따른 인사기록사항 수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 및 증명서 발급에 수정(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시 기재된 내용을 변경없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30.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은 현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퇴직자는 정정요청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공모교장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

질의

○ 공모교장 당시에는 관련법에 평교사 출신과 사립출신 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원직으로 복귀한다"고 되어있었는데, 현행 법에는 교장 자격자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함으로 이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교과부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평교사, 사립출신의 공모교장들에게도 교장 직무연수를 통해 교장자격을 부여하여 교장공모 임기 후 현행 법에 준하여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2. 만약 있다면 시행 재량권이 교과부에 있는지? 아니면 “도”나 “시”교육청에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8. [교원정책과]

○ 교장자격이 없이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공립학교의 공모교장(내부형)으로 임용되신 경우 원칙은 임용당시의 규정대로 4년의 임기를 마치시면 원소속학교로 복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지금 국회에 법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리부에서도 교장공모제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약제 교원 임용 관련

질의

○ 계약직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가 있는데 계약제교원 중에 정원내로 임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 [교원정책과]

○ 계약제교원 중에 정원내로 임용하는 경우는 第32條(기간제교원)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3.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고등학교 교사의 근무 시간

질의

○ 고등학교 교사의 근무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학교의 교사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는 것이 행안부 복무담당부서의 유권해석입니다.

고용휴직 관련

질의

○ 한국학교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고용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외국에 설립된 토요학교도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포함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30. [교원정책과]

○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외학교 뿐만 아니라 토요학교도 가능합니다.

공개채용 절차 관련

질의

○ 사립학교 공개채용 절차에 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7. 21.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 공개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9항에 의거하여 신규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개전형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4항에 의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세가지를 모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외 국외 여행 관련

질의

○ 현직 교사가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일수는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학기중에도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방학 등)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가일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휴가(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전 행위

질의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가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8. [교원정책과]

○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대판 95누 18536, '96.3.8)

공무원 징계 관련

질의

○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중에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은 무엇이며 타기관의 전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6. 22. [교원정책과]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는 승진임용, 타 기관으로 전보,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는 의원면직, 정부포상 또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휴가 관련 문의

질의

○ 교육 공무원 휴가 중 특별휴가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특별휴가는 산입함

※ 단, 경조사 특별휴가중 "결혼(자녀)", "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자녀 결혼 경조사 휴가일수는 1일 인데 자녀 결혼 날짜가 휴무 토요일인 경우 위 단서 조항에 의해 금요일에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경조사 휴가 기간인 3일인 자녀 사망이 공휴일(일요일)에 발생한 경우 공휴일을 빼고 경조사 휴가 기간을 월 화 수요일까지 3일 동안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1. [교원정책과]

○ 일부 수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시행 2010.9.10]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33호, 2010.9.10. 일부개정]

* 결혼(자녀, 1일), 입양(본인, 20일)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결혼(자녀)의 경우 결혼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그 다음주 월요일(또는 결혼전일인 금요일)을 특별휴가 기간으로 본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정신과 진료 기록 채용신체 검사 관련

질의

○ 정신과 진료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3. [교원정책과]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은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에서 실시·판정하고 있습니다. 불합격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별표]와 같으며,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관련

질의

○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파면을 당하게 되는 경우 받는 불이익이나 효력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3. [교원정책과]

○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되어 퇴직급여액의 1/4(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1/2(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감액, 퇴직수당 1/2감액되고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이 여관업 가능 여부

질의

○ 공무원이 여관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영하게 하는 것은 영리업무 종사행위가 되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참고로 공무원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이 공무의 직무 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대학의 인사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임대업이 가능한지?

질의

○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한 때 둘째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고용휴직 제도에 대해서

질의

○ 해외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말일자로 휴직이 끝나고 다시 고용휴직을 하

려고 합니다. 주당 6시간 비상근으로 다시 고용휴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3.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으로 현재 고용휴직 중이시며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질의를 올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교육공무원이시며 동법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휴직 중이시라는 기본 사항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휴직조항을 일러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장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여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휴직중에 있는 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임용 시험 가능 여부

질의

○ 군복무 중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자도 유예기간을 주어 합격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 선택시과 소집일 선택시에 제가 우려 했던 것은 응시만 할 수 있을 뿐, 합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걸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용공고문을 보면, 공고일로부터 6개월내 전역자만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규정이 다른건지 전부 알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7. [교원정책과]

○ 임용시험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복무자도 응시가능 합니다. 그리고 합격시 합격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연장을 포함하여 현재 2년입니다. 따라서 2년안에 전역이 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등록기간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임용을 유예하셔야 합니다.

공통사회 교사 과목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고등학교 1학년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14년부터 고등

학교 1학년 공통사회가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공통사회 교사들의 자리 자체가 줄게 되는데 복수전공 과목이나 부전공 과목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요? 어떤 방법으로 줄어드는 도덕이나 공통사회 교사들의 티오를 흡수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0.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통사회는 2014년부터는 7~9학년까지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서 줄어드는 도덕이나 공통사회 등의 담당교과는 교사 임용시 수요가 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발령 과목 변경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므로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중등학교, 전문계고 등의 선택 교과목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로 표시과목과 상치된 교과를 지도하는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복수전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오납 퇴직급여 환수 분할납부 가능한지

질의

○ 대학교병원에서 정년퇴직 하였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과오급 퇴직급여 등 환수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수금 납부기간 연장이나 장기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교원정책과]

○ 2009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에 의거 환수결정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수금 분할 납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만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요청하신 환수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정하여진 대로 업무처리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연수대상자 지명 관련

질의

○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은 전문직으로의 전직 직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기 직전에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면

비록 보건교사로 전직하기 전에 중등학교 정교사(1급) 교련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교원양성연수과-5109(2006.07.26.)〉 아울러서 중등 2정 취득후 교육경력 4년 만에 1정연수를 받아 1정취득후 교육경력 2년이면 2정 취득후 6년의 교육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27. [교원정책과]

○ 교육전문직은 전직 전의 자격종별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및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5항 및 6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중등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등 2정 취득후 교육경력 4년 만에 1정연수를 받아 1정 취득후 교육경력 2년이면 2정 취득후 6년의 교육경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별표1의 교육경력은 각항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휴직 가능한 기관

질의

○ 연수휴직 사유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9. [교원정책과]

○ 연수휴직이 가능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 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한국과학기술원.
4. 기타 교육부 장관이 개발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부산발전연구원)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사 육아휴직수당 지급 관련

질의

○ 2011년 3월 1일 자 육아휴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0.3.1 자 21호봉 2011.3.1자 22호봉 승급입니다. 2011.3.1 자 정기승급 작업을 2월 중순에 하게 되어 2011.3.1 자 육아휴직 교사가 22호봉으로 승급발령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은 2011.3. 1- 2011.8.31까지 이럴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21호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승급된 22호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 [교원정책과]

○ 호봉승급일(3.1자)에 육아휴직이 신청되었으므로 22호봉 승급은 정정 되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육아휴직을 3.2자 신청이었다면, 22호봉 승급이 인정되나 귀하께서 주신 사례는 호봉 승급은 불가하며 21호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교사 임용과 퇴출

질의

○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나 성추행 등 부적격 행동을 한 부적격 교사의 퇴출이 그다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여 부적격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5. [교원정책과]

○ 우선 교사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부에서도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한편 다른 비위와는 달리 상훈 등에 따른 징계를 경감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 4대 비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학생의 성적과 관련한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성폭력 범죄

※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4대 비위에 대하여는 중징계 처벌토록 강화하고 징계 감경제한 근거 신설('05.10.6) 및 감경제한 대상에 "인사관련 비리" 추가('10.4.9)아울러,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이 4대비위와 관련하여 파면, 해임된 경우 다시는 교단에 설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에 4대비위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신설('08.3.14)

○ 하지만 부적격교사에 대한 퇴출이 이루어 지지 않아 교사 신규임용이 줄어든다는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부적격교사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엄중 문책하고, 신규교사 임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교원임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의 유학휴직

질의

○ 교사가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유학휴직이 가능한가요? 유학휴직은 몇 년간 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교사의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을 위한 휴직의 종류는 동법 제44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반드시 그 휴직사유가 발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이에 귀하의 경우 유학휴직의 다른 휴직은 휴직명령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사의 호봉 재획정

질의

○ 중등학교 1급 정교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사가 과원 또는 본인희망 등의 사유로 당초 담당과목은 강의하지 않고 다른표시 과목의 2급 정교사의 자격에 맞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우 호봉재획정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6.[교원정책과]

○ 중등학교 1급자격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로 근무명령 발령되었다 할지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재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급을 달리하는 이동의 경우초등1정 및 중등 2정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중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중등 2정을 기준으로 호봉 획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2](구「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인정 기준」)에 의해 호봉을 상향 인정 받아 근무하던 교사가 상향 인정 기준 대상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상향 인정 전 호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교사임용 전 취득한 학위 인정 여부

질의

○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취득한 석사학위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연구점수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당해 직위(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경우

질의

○ 일부 교사들이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교사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상 교사의 자격증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교원정책과]

○ 교사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1997.12.5)
-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임용된 자로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제150조 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1991.1.1 이후 임용된 자는 해당 없음)

교원 경력 및 급여 관련

질의

○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사범대학에 학사편입하여 2년간 학교를 더 다닌 후 졸업하여 임용되었습니다. 개인기업체와 2개 이상의 학교가 각각 호봉은 인정되었으나 경력은 개인기업체만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교육행정시스템에 제 경력은 5년 6개월로 나옵니다.

○ 2개 이상의 학교는 호봉만 인정되고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만약 경력에도 인정된다면 저는 경력이 7년이 됩니다. 저는 2010년 10월까지 5년 미만인 자에게 해당되는 정근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력이 5년 6개월이라면 11월 이번 달을 빼고도 지난 5개월간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고 현재 경력이 7년이라면 2년 동안 정근수당을 잘못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받지 못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1. 8. [교원정책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근무연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매월 1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

○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1.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이한 휴직은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영창·근신 및 또는 견책은 6월의 기간 ※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영창·근신 및 또는 견책은 6월)은 일정한 기간(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영창·근신 및 또는 견책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징계처분기간은 산입하

지 아니함)

※ 외국유학 휴직 및 육아휴직(1년이내), 국제기국·외국기관·국내외대학·국내외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위한 휴직 등은 복직한 후에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 위와 같은 근무연수 계산 기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 근무 상황 관련

질의

○ 교원근무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참, 조퇴, 외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조퇴와 외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5. [교원정책과]

○ 교원근무상황에 차이점은 지참은 정해진 근무시작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고, 조퇴는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이며,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외출과 퇴근은 외부에 나간 후 돌아오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교원 산후휴가 시작 시기에 관한 문의

질의

○ 초등교원입니다. 내년 1월 10일 예정일이어서 출산과 동시에 산후휴가 90일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산후 45일 이상 확보해야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교원정책과]

○ 교원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90일을 부여하도록 하되, 출산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후에 그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가는 복무관리권자의 허가사항이니 복무관리권자인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성과급 지급 기준일

질의

○ 저는 작년8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8월에 퇴직한 교육공무원은 성과금을 1/2도 주지 않고 9월에 발령받은 교사는 성과금을 받는다는군요. 개월수로 따지자면 8개월이고 학기별로 계산하자면 똑같이 6개월인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1. [교원정책과]

○ 정년퇴직을 8월 말에 하신것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조항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이 조항에 의해 2월 28일 생은 2월에 퇴직, 3월 1일 생은 8월에 퇴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과급도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라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12월 30일에 퇴직하신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급기준일이 12월 31일 공무원입니다. 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1년을 정규교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한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9월부터 근무한 정규교사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말, 8월말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정년퇴직자들 사이에 극히 일부 있으나 성과상여금은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전원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학점의 인정범위

질의

○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것이 아닌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이 연수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지요? 물론 대학원 학위를 연구점수로 쓰지 않을 경우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7. [교원정책과]

○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 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잔 자에 대한 자격연수

성적은 A학점 만점의 90퍼센트, B학점 만점의 85% C학점 만점의 80%로 평정합니다. (직무연수는 해당 없음) 자세한 것은 시도교육청에 문의 바랍니다.

교원 인원감축 관련

질의

○ 현재 초등 임용시험 재수생이고 올 1학기에 영어 회화 전문 강사로 6개월간 근무 하였습니다.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제도도 그 자리에 교대 출신이 정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는 것 아닌가요? 중초교사도 그렇고 미발추도 그렇고 영어 회화 전문 강사나 스포츠 강사도 그렇고..저도 사범대나 행정학과나 법학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취업률이 높은 곳과 적성을 생각해서 왔는데 취업률이 50%도 안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교원정책과]

○ 학령아동 감소 추세와 중장기적 교원 수급 계획을 고려할 경우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07년이후 입학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하며, 향후 1,000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교원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타 대학 편입은 편입대학의 학칙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 교원들에 대한 해외 인턴쉽 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취업 기회확대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선발, 배치되어 학교 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분 안정을 위해 제42조 제5항을 개정하여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것이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영어 수업을 담당하기 위해 정원 외로 선발되는 인력이므로 기존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원 자격 회복 관련

질의

○ 1980년 사범대학(가정교육과)을 졸업과 함께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 공립 중학교에 발령

받아 근무하고 당시 규정인 의무연한 4년을 못해 자격증을 박탈 당했습니다. 1983년 퇴직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규정이라하셔 반납하고 동의서에 사인도한 기억이나요.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떼어보니 '의원면직'되었더군요. 명예회복차원에서 제가 구제될 수는 없나요? 교사출신이면서도 교사자격증이 없어 일할 기회는 물론 경제적 심적 고통이 많았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8. [교원정책과]

○ 당시 교육법시행령 제146조와 제147조에 의하여 재학기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았으며, 학비보조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50조(복무의무)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종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교육법 시행령 제152조(자격증박탈)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복무의무기간 미이행으로 자격증이 박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 정근수당 관련

질의

○ 정근수당을 받는 부분과 관련하여, 근속년수를 계산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22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신규발령자라고 하더라도 교육대학(또는 사범대학) 이전에 타 일반대학을 졸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 경력을 정근수당을 계산하는 근속년수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고 신규발령 받은 첫해부터 정근수당을 받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5. [교원정책과]

○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7조제4항에 의거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원의 경우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시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산입)

교원 질병휴직-불임치료

질의

○ 교육공무원으로 중학교에 재직중 입니다. 불임클리닉을 다니고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한 상태입니다. 이같은 경우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6.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에 있어 불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동일하며 그 보수 또한 일반공무원의 질병휴직과 같이 휴직기간동안 7할의 보수가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허가하는 행위이니 이점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내용 및 허가여부는 귀하가 소속된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령개정에 의한 교원 호봉재획정 관련 질의

질의

○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승급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휴직기간 중에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그 휴직기간을 호봉승급에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직 이후 호봉재획정 당시의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여 100%를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1. [교원정책과]

○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2000.1.28에 개정된 것이나, 이는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2000년 1월 28일 이전에 임신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했던 교육공무원도 재획정하여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호봉의 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새로

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자격변동이 생긴 경우 , 학력변동이 생긴 경우, 직명변동이 생긴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직 시 위에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재획정하는 것입니다.

교원과 교육공무원 차이

질의

○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교원이라고 한다면, 교육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교육청 발령으로 근무한다면 이 같은 경우는 교원은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5.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 장학사,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입니다.

○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님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교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과 행정직원의 근무관리 규정

질의

○ 중학교에서 교원의 퇴근시각과 행정실 직원의 퇴근 시각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교원정책과]

○ 학교의 교원 근무시간은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하여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확보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8시30분에 출근시각을 정한 학교는 4시30분이 퇴근시각이 됩니다.

○ 행정실은 시.도교육청에 정한 지방직공무원 근무시간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학교의 교원과 행정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질의

○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련

- 5단계 평가를 해야하는 이유
- 서술형 평가만으로 할 수 없는 이유
- 온라인으로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6. 30. [교원정책과]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평가방법은 계량적 측정방법(5단척도 체크리스트)과 서술형 평가방법(자유서술식)을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5단척도 체크리스트 방식과 자유서술식 방식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합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조제4호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시행 기본계획)에는 온라인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석벽지 등의 컴퓨터 환경 미비로 온라인평가가 곤란한 학부모들을 고려하여 종이설문지 병행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은 대통령령과 이에 따른 교과부장관의 지침(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 자율영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지역적 여건이나 특색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하여

질의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선생님들 점수를 매겨 서열화하여 상벌을 주는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7. [교원정책과]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선생님을 점수 매겨, 서열화하여 상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그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아 선생님의 수업활동 내지 학

교교육활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교육주체간 의사소통 기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많은 학부모님께서 생업 등의 이유로 학교교육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하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학부모님의 평가영역이나 평가문항 등을 간소화하거나 축소하여 평가참여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점수를 매긴다는 의미보다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는 의미가 더 강하며, 순수하게 1(매우미흡) ~5점(매우우수)척으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의 수준을 0~100%로 볼 때 등간(20%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가실시방식은 학교의 특성,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단위학교에서의 통계처리업무의 경감을 위해 온라인 조사를 권장하되,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문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제 실시단위는 평가제의 목적이 학교간 비교 내지는 교원간 비교(서열화)에 있지 않아, 단위학교 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하여

질의

○ 현재 각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학부모 참여수업에 잠시 본 교과의 선생님 외에는 얼굴도 모르고 평소의 태도도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각 과목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소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에 대하여 모든 학부모에게 평가를 하라니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7. [교원정책과]

○ 우선, 학부모님의 응답은 '하시고 싶어 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에 대해 각각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학부모님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여, 최소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문항은 학교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게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관리위원회는 학부모님이 50%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서 평가제의 목적에서 말씀드렸듯, 학부모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 올해 첫 시행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평가요소 내지 지표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등 지속적인 모형 개선을 통해 동 제도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간의 의사소통 기제로 정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연금

질의

○ 저는 3년 6개월의 초등학교 교직경력이 있으며 10년전 의원면직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교원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의 교직생활을 더 해야 하며 대략의 월평균연금수령액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8. [교원정책과]

○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으며, 연금법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계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과 연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겸직의무

질의

○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영어원서를 번역, 출판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 겸직 금지의 의무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7.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토록 기술하고 있으며,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

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처리될 문제이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교원의 복무지도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경조사 휴가로 인한 공가일의 판단 기준

질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규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혼인으로 인한 공가일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는 주의 목요일에 혼인시 공가일은 사유발생일인 목, 금, 토, 월, 화, 수, 목까지 7일로 이해되는데 제 해석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4. [교원정책과]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교원(본인)의 혼인으로 인한 공가일수는 7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7.15일 개정된 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 휴가일수를 적용,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참고로 목요일에 혼인시 공가일은 목,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7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교원의 계절제 교육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

질의

○ 방학중에 교사가 계절제 교육대학원을 다닐 경우 복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교원(공무원)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 사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근무시간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 요청에 대해서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원이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받을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으나, 이 지침의 취지는 퇴근시각전 1

시간내 등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권자가 판단하여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동 지침은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관련 업무와 해석·적용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였음)

○ "출장(연수)" 휴업일 중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 승인과 같은 경우 정상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점에서 상사의 명을 받고 근무지 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출장과 구별됩니다. 만약 출장(연수)으로 처리한 시간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됩니다. 결국 교사의 복무관리 문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므로 기타 사항은 학교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질의

○ 현직교사인데 연휴 기간을 활용해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토요일, 일요일, 추석연휴 등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교장선생님 허가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7. [교원정책과]

○ 공무외국여행 중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2.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정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도록 사전 지도
3. 국가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점검되므로 반드시 허가를 얻어 실시하도록 학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를 업무하도록 사전 지도(전교직원에게 반드시 주지시키고 필요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청구)
4. 특히, 국내. 외의 외부단체나 기관, 여행관련 업체 등에서 자매결연이나 수학여행. 체험학습 답사 등을 이유로 무료 또는 일부 개인부담이라는 명분으로 초청하는 교원의 국외여행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절대 참가하지 않도록 유의또한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이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유학휴직

질의

○ 고용휴직 중인 교사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를 위해 유학휴직을 했고, 연장하여 4년을 더 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유학과정에서 학위를 받지 못하여 또 다시 유학휴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교원정책과]

○ 유학휴직 허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 드리니 소관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임용고사 합격 후 휴직 가능 여부

질의

○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한 경우 바로 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용고사에 합격하였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므로 휴직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아울러 교원 임용이후의 휴직허가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임용고시 가산점에 대해 문의

질의

○ 유초등임용고시의 경우 일반인이 얻을 수 있는 가산점은 지역가산점을 제외하고 영어, 컴퓨터, 한자(경기지역)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일반가산점은 1차에만 반영되는 것에 비해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은 1차,2차,3차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이든, 일반인이 취득한 가산점이든 가산점이라면 모든 과정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8. [교원정책과]

○ 현재 중등 임용시험에 있어서 각종 가산점은 05년도 입학생의 경우 2010년도 임용시험까지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입대로 인하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 기간만큼 연장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임용시험 가산점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1차 시험에서 2배수를 선정하는데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련 규정의 변경은 향후 시험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치루어진 시험과의 비교는 무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임용시험 자격 중 장애인의 기준

질의

○ 교원임용 시험을 위해 시험장을 찾았을 때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전형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단지 시력이 나쁨으로 인해 장애전형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수험생 일각에서는 장애인전형에 대해 매우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뿐더러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2. [교원정책과]

○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장애등급 규정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에 공통과학과 공통사회가 과목이 사라진 경우

질의

○ 이번 교원임용 관련 발표서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는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안뽑은 이유가 현직에 계신 검퓨터 전공 선생님들이 5주연수를 받아 공통과학을 가르치게 돼서 그렇다네요. 시험한달 전에 발표를 하면 1년에 한번 보는 임용고시생들의 그 땀과 노력을 어떡해 하실겁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0. 7. [교원정책과]

○ 교과목 신규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별 교과목 수요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교과목의 교원자격소지자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이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가 없는 교과의 교사 선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교원 정원 배정의 산식화를(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추진중) 통해 시도에서 스스로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발예정인원 추정치를 최소한 6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2011.6.22)

교원임용시험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산점 부여

질의

○ 교원임용시험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산점을 부과하여 달라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2. [교원정책과]

○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교원임용시험 포함)에서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특전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5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한자와 그 가족에 한해서면 가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저소득층의 채용)에 의하여 9급공채시험의 경우에만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호봉 획정관련

질의

○ 4년 일반대 졸업 후 3년제 진학한 사례 대한 교원 호봉획정 및 인정에 대한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6. 14.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학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1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의 비율을 인정하며, 동법 제50조제1항에 의해 전문학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1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를 인정합니다.

○ 그러나 전문학사학위와 학사학위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등에 차이가 있어 각 1개의 전문학사학위와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학교를 졸업했다고 볼 수 없고, 학위에 따른 호봉인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의 학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경력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사범대의 시범계열 인정 근거

질의

○ 비사범대가 사범계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거 및 그에 따른 호봉 책정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3. 21.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비고 3. 가산연수에 따라, 교육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연수 1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4년제 대학)에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개설한 교육과를 말합니다.

○ 사범계학교에 대한 판단은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대학의 학과포함) 여부에 따

라 결정하며,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등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학이 아닌 곳은 사범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사범대학의 유아교육과는 아니지만,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4년제 대학의 학과로서 졸업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므로, 사범계 가산연수 1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공무원 불임휴직 관련

질의

○ 불임휴직 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해야하는데, 그 진단서에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불임의 특성상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5.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같은법 제72조,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45조에 의거불임휴직도 1년이내 가능하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여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등급결정 관련

질의

○ 교육공무원(교사)의 성과상여급 등급결정은 누가 하나요? 성과급심사위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성과급 지급등급은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별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내용은 보면 학교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급철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작성하고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행합니다.이후 시도교육청이 지급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위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 성과평가 완료되어 순위명부가 작성되면, 단위학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도교육청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교사의 계좌에 성과상여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서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등급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관련

질의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어 질의하고자합니다. 교장선생님 대신 보직을 가진 일반교사는 위원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즉, 교감, 교사, 외부위원으로 구성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6. [교원정책과]

○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내부구성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4항에 따라 위원장은 교감선생님이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 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해당되므로 학교의 행정실장이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보직교사나 다른 교사로는 불가능하고, 위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제4조 4항)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전 경력 인정률

질의

○ 교육공무원 임용 전 경력에 대한 인정률과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 영어강사'로 근무한 경력(근무시간 평일 10:00~17:30)에 대하여 위 교사가 중학교 교사로 임용 되었을 때의 임용전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률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4.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경력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 등에 따르면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고 전일제로 근무(1일 8시간 이상)한 경우, 10할을 인정합니다. 시간제 근무의 경우 "초중등 교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대비 실근무시간의 비율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산된 환산율의 50%를 인정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한 상태에서의 초등학교 강사 경력은

(실제 주당 근무시간 / 교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 0.5 × 근무기간

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포상 시기

질의

○ 교원이 업무수행이 우수한 경우포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원이 포상을 받는 것은 언제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30. [교원정책과]

○ 매년 5월 15일 스승의날 표창이 있고, 매년 6월과 12월에 수여하는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포상이 있으며,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시도전출 관련

○ 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을 관련문의와 전출최우선순위에 국가유공자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제1항에 의하여 임용권자(교육감)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류의 순위는 관련 법령 및 교육청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2009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국가

유공자에게 시도교류에 우선순위는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의하여 11학년도 시류교류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무조건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시도교류에 우선순위는 부여하는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 교원의 시도간 교류 시 국가유공자를 우대토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시도교류 기준은(서울시교육청 2011학년도 시도교류 기본계획) 1순위는 배우자와 1년 이상 장기간 별거 교육공무원으로서, 전출 희망 시도 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 교육공무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의 해당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부양 교육공무원 2순위는 전출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부부별거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의 임용전 재외한국학교 근무 경력 인정율 관련

질의

○ 초등학교 신규 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중에 한국국제학교에서 6개월간 정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의 제1류 교원으로서의 경력으로 보아 환산율을 10할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 [교원정책과]

○ 북경한국국제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호봉 경력인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제1류 제1호(교원으로서의 경력)에 해당하는 교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2. 동법 제21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학교급별 교원자격을 갖추고
3.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북경한국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급에 맞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한 경력에 대하여 별표22 제1류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의 경력(10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관련

질의

○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언제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9. 8. [교원정책과]

○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평정하여 1월말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는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를 결정하게 되어있으며 동 순위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충을 위한 후보 인력풀이므로 동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이 자신은 승진될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임명권자는 반드시 동 후보자 모두 당해학년도에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장의 최대 임기

질의

○ 사립고등학교 한곳에서 만62세안에 교장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3. [교원정책과]

○ 교장임기는 사립학교법제53조제3항에의거 각급학교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수 있으며, 다만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또한 자체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교장임명방식을 달리정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 정한 임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교장임기

질의

○ 교장임기중 전문직근무는 교장임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의 법적인 근거는?

회신 회신일 : 2011. 6. 2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교장은 근무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는 전문직에 해당되며, 직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직 근무는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국외 2개의 대학원 졸업 연구점수 인정

질의

○ 교사가 된 이후 2개의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1~2003년까지 국외 석사-TESL, 국내 1997~2000년까지 입니다. 국외도 석사의 경우 임용이후면서 2006년 이전이므로 연구 점수 1.5점이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4.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제37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07.7.26) 및 변경사항 통보(2008.5.19) 사항에 의거 2005년 1학기 대학원에 입학한 자 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 등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시 교사와 학교의 부담 비율

질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2006년 7월 사학연금으로 전환이 될때, 호봉 인정을 받으려면 호봉에 맞는 사학연금을 목돈으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학여금은 원래 교사와 학교가 반반 부담하는 거니까, 그때도 학교에서 반은 부담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2.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1948년 8월 15일부터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호·제2항 및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및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합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의거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의 규정은 1984년 7月 1日부터 施行한다.第2條 (在職期間의 遡及通算) ①敎職員으로서 1948年 8月 15日부터 1974年 12月 31日(事務職員은 1977年 12月 31日, 私立의 特殊學敎 및 學校經營機關에 在職중인 敎職員은 1981年 3月 19日, 第3條第3號 또는 第60條의 4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 適用對象의 學校·學校經營機關 또는 硏究機關으로 指定받은 學校機關에 在職중인 敎職員은 그 指定을 받은 전날) 사이에 敎職員으로 勤務한 期間이 있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月 당해 月分의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을 따로 遡及納付하는 경우에는 그 遡及納付한 期間을 在職期間으로 通算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期間에 대한 遡及通算에 있어서 遡及納付하는 모든 負擔金은 당해 敎職員이 全額을 負擔하되, 그 金額은 每月 당해 月分의 個人負擔金의 2倍에 해당하는 額으로 한다.

1. 在職하고 있는 學校機關(學校經營機關이 동일한 다른 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아닌 學校機關에 敎職員으로 勤務한 期間 2. 在職하고 있는 學校機關의 敎職員이었던 者가 退職한 후 다시 당해 學校機關에 再任用된 경우의 그 退職전의 敎職員으로 勤務한 期間 ②삭제 第3條 (遡及納付하는 負擔金의 一時納付) ①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을 遡及納付하고 있거나 遡及納付하고자 하는 敎職員은 당해 月分의 負擔金을 基準으로

하여 나머지의 遡及通算할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附則 第2條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職員이 負擔하는 負擔金을 말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時에 納付할 수 있다. ②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을 遡及納付하고 있는 敎職員이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나머지의 遡及納付할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附則 第2條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職員이 負擔하는 負擔金을 말한다)을 一時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退職 또는 死亡으로 인하여 退職給與(退職年金을 제외한다) 또는 遺族給與(遺族年金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退職給與 또는 遺族給與에서 一時에 納付하여야 할 負擔金을 控除하여 支給함으로써 그 納付에 갈음한다.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국외자율연수 신청 관련

질의

○ 방학중에 국외자율연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0일 정도는 친지 방문을 하고, 이후에 외국대학에서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국외자율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복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5. [교원정책과]

○ 방학기간 중 공무외국외여행의 형태는 두가지(연가일수범위내, 국외자율연수를 위함) 입니다. 친지방문은 연가일수범위내의 국외여행이 되며, 교육관련자료 수집 등의 사유로 외국대학을 방문하는 것은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국외여행에 포함됩니다. 이에 친지를 방문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를 할 경우엔 친지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국외자율연수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은 얻은 후 가능하며,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 교사 지원 자격에 관하여

질의

○ 국제학교 초등에서 근무를 하려면 정교사자격증만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나라별 지원자격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7. [교원정책과]

○ 국제학교 초등과정의 교원임용의 경우 해당국의 학교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우에는 정교사 자격종별에 의한 초등, 중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국제학교의 경우 임용권자가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고용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국제학교에 직접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질의

○ 교원의 총 경력을 계산하는 경우, 임용전 군경력이나 임용 후 군 경력을 포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의 별표 1에 의한 경력의 등급 및 종별경력 중 가경력 3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으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명부작성권자인 임용청의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해당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경력환산시 군인경력의 경우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군경력은 10할 인정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명부작성권자인 임용청의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해당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군경력인정

질의

○ 1986이전 방위병으로 14개월 근무한 사람의 군경력을 14개월 전체로 인정요청 민원

회신 회신일 : 2011. 1. 10.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교직원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에 대한재직기간 산입 중-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자인 경우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역사유가 만기인 자는 12개월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 호봉산정

질의

○ 2011.3월2일부터 공립고등학교 기간제로 국어를 가르칠 예정인데, 기간제교사의 호봉산정은 2011.10.1일자 계약제교원 개정에 의하여 17호봉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2.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초.중.고 학교 구분 없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만 14호봉의 제한을 받으며 그외의 경우는 호봉 획정을 통하여 책정된 호봉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 획정은 임용권자가 책정하게 되므로 호봉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임용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의 봉급 관련

질의

○ 기간제교사의 호봉 14호봉 철폐는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폐지 되었나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2.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초.중.고 학교 구분 없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만 14호봉의 제한을 받으며 그외의 경우는 호봉 획정을 통하여 책정된 호봉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침으로 모든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만 최대14호봉으로 제한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도록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남교육청 계약제교원 관리지침에는 14호봉 제한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1. [교원정책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30)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간제교원 계약사유는 변경이 되었지만 단절 없이 근무중인 경우 계속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기간제교사 계약만료 후 수당 소급 지급

질의

○ 기간제교사 계약만료 후 수당 소급 지급 유무

회신 회신일 : 2010. 11. 24. [교원정책과]

○ 퇴직한 기간제 교원이라도 재직 중 청구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에 따라 퇴직 기간제 교사는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당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제교원 관리지침을 관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교사의 경우 2개월만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수업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1년을 근무하고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이나 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7. 2. [교원정책과]

○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사는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51호) 제7조의 2(성과상여금 항 ①소속장관은 별표 2의 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학생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부는 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기간제 교사가 많고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법령 주관과인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 최대 임용 기간

질의

○ 기간제교원 최대 임용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31.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호봉재획정시 기산호봉 가산 여부

질의

○ 중등학교에서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교사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여 일반사회 정교사(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일반사회 과목으로 전직 임용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교원복지를 고려하여 정교사(2급)로 호봉재획정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0.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의 사유에 해당될 때 하게 되며,중등학교 교원의 자격변동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임용되지 아니한 교과목의 자격을 취득할 때는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논문작성 위한 연수휴직 가능 여부

질의

○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대학원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한사유로는 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4. 4.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제1항제8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이므로,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퇴직 시점 문의

질의

○ 형 확정일 : 1981.2.24, 임용일 : 1981.3.12. 형확정일=당연퇴직일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는 퇴직발령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7. [교원정책과]

○ 형 확정이후 임용이 제한된 기간재의 특정일에 임용이 되었을 경우, 당연퇴직임은 임용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반휴직 교육공무원 영주권 신청

질의

○ 미국에서 근무하는 남편으로 인해 동반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원이 동반휴직기간중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가 있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 면 나중에 교육공무원으로 복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0. [교원정책과]

○ 귀하가 질의하신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교원의 신분에 영향여부는 관련이 없으나 시민권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있어 면직사유가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반휴직 중 석사 학위 경력 인정 여부

질의

○ 국외동반휴직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교육연구대학원까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력에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어있지만 호봉인정이 되지 않아 민원을 신청합니다. 동반휴직이라서 호봉승급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직기간동안 자비로 학업을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경력과 호봉인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9.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반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승급의 제한이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자비로 대학원에 출석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휴직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제1류제2호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호

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휴직에 대해

질의

○ 두번째 동반휴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동반휴직에 대한 횟수제한에 관한 규제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2번째 동반휴직이 가능하지 않은지 납득이 가지 않아 민원을 신청드리는 바 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7. [교원정책과]

○ 동반휴직 요건에 있어서 재직기간 중 총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휴직은 가능하나, 동 휴직은 휴직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휴직을 허가하는 행위가 아니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과 같이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적 행위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동일경력 아닌 경우 근무경력 연금에 미인정

질의

○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대학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에 간호사 자격증 없이 일한 종합병원에서 사무직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1.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법률 제9413호)」에 의하면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o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47호)」에서 사무직원중 일반직 및 기술직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사무직원의 급류와 근무기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중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을 말하며, 표준봉급월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계산을 위한 경력의 환산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직원중 일반직 및 기술직의 경력환산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환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경우 환산율을 80%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경력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해당하는 경우 환산율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자녀 육아휴직 중 대상을 셋째자녀로 바꾸는 것

질의

○ 현재 둘째자녀로 육아휴직 중인데, 대상을 셋째자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0. [교원정책과]

○ 행안부 및 교과부 관련 공문의 첨부내용은 이렇습니다.

- 국가공무원법-기존)

제15조 ② (생략)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개정)

제15조 ② (기존과 같음)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위 사항은 교원단체 및 인사과 왈 호봉산입은 가능하나 승진경력 및 경력평정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으로 현재 검토 및 추진중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르면 올해안에 개정안이 발효될수도 있는 사항임)6번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육아휴직)/제72조제7호즉, 쌍생아의 경우 둘째 자녀의 휴직을 먼저 실시하고, 셌째 자녀가 "최소한 만 5세이하이고, 초등학교 취학 1년 전"에 둘째 자녀에 대한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셋째 자녀에 대해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 받아야 함.

○ 그러지 아니할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셋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장학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본상 분리된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질의

○ 가족수당지급요건에는 공무원의 등본 상에 같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 하고,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되는 자여야만 지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본 상에는 분리되어 있으나 연세도 많으신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형의 생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선생님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5. [교원정책과]

○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3년도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됨으로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미시민권자 한국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지원

질의

○ 한국에서 사범대학을 나왔으며, 미국에서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 할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미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한국의 중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지원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31. [교원정책과]

○ 헌법 제2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외의 자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2(외국인 교원)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대학교원의 경우 법률에서 임용을 허락하고 있으나, 초 · 중등교원의 경우 아무런 법률적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간제교사로의 채용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통대 출석수업 참여

질의

○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입니다. 출석수업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다 사용한 경우 이후에는 방통대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4. [교원정책과]

○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수업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방학동안 출근하지 않는 교원

질의

○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 방학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교육, 연수 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방학은 휴가가 없는 학생들에게 개인시간과 그동안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학으로 인하여 선생님들은 월급을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모두 받아갑니다. 교원관련 법에도 출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 또는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0. [교원정책과]

○ 학교의 방학은 휴업기간으로 공휴일이 아니므로 교사가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교사는 원활한 학교수업을 위해 일반공무원과 달리 방학기간중에만 휴가(일반공무원과 같이 최고2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업체나 공공기관에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가 완전 정착되지 않고 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충지도를 위해 대부분의 교사가 출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교사의 직업특성상 주기적인 연수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 및 연수기관 외에서의 연수도 법령으로 허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병가 초과 신청

질의

○ 지병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병가가 7일이 초과하였으므로 병가를 사용하지 말고 연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학교에 등교하기 힘든데 연가를 사용해도 되는지 사유에는 사실대로 몸이 아픈 내용을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7. [교원정책과]

○ 병가의 운영 지침에 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며, 이 또한 각 시. 도교육청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정확한 것은 해당 시. 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가 확인 서류

질의

○ 병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입증 서류로 일반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병가 확인 서류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에 의거 병휴직시 입증서류는 의사의 진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구체적인 설명자료에 의하면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이어 연가 사용 관련 문의

질의

○ 병가 사용에 이어 연가를 사용할 경우 공휴일도 연가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교원휴가업무처리업무예규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따라서 나머지 연가 일수+공휴일포함=00일 성립됩니다.

보건교사 병가 신청에 따른 대체강사 임용

○ 보건교사의 25일간 병가로 보건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강사를 임용하려고 하는데요. 보건교사는 1개월 미만이라도 강사를 임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7. [교원정책과]

○ 보건교사 대체강사는 전일제 근무로 시간강사 채용은 고액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개월 미만이라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해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되려면

질의

○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4년제 대학 간호학과

를 졸업하면 되나요?

○ 간호사 면허증을 받고나서 3년제에 다시 가서 교직이수 후 졸업 시 보건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교원정책과]

○ 보건교사자격증 검정시험 응시자 자격사항은 아래의 사항과 필히 일치하셔야 하며, 아래의 사항이 만족될시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1.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명칭

질의

○ 2002년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명칭 개칭하였는데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시 보건교사로 재발급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1. 16.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의거 발급대장번호관리와 표시과목변경시의 연수유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교부는 교과부장관 지침(실무편람26쪽 등)으로 최초발급당시의 기재사항대로 시도교육청에서 발급됩니다. 단, 재입학 등으로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면 보건교사로 새로 나가게 됩니다. 2002년 이전 자격증을 보건교사로 재교부하면 자격증관리번호체계 유지가 변동되어야 하며, 명칭변경 법률도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음을 명시한 것이므로 단순재교부시 발급자명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체육 수업 가능 한지가능한지

질의

○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 내에 보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 부분을 보건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교원정책과]

○ 보건교사의 교과수업 참가에 관한 부분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관련 교과 협의회 등 학교장의 지도감독과 학교 교사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학교 보건교육 기본 방향'을 통하여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운영문제는 해당교육청의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직일의 휴직기간 포함 여부

질의

○ 교과부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지침(2008.1.1.)을 보면,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복직되고, 이 경우 복직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09. 3. 1.~2010. 2. 28.까지 휴직하고 2010.3.1.자로 복직한 경우 복직일이 휴직기간에 포함된다면 휴직기간은 1년 1일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교원정책과]

○ 복직발령일(3.1)은 휴직기간이 아닌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동 내용은 육아휴직 외에다른 휴직사유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라 육아휴직 지침은 이미 폐기가 되었고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부공무원의 동시 육아휴직 가능 여부

질의

○ 부부공무원의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3.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에 근거하여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단, 여자교육공무원의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여성은 3년, 남성은 최대 1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허가 여부는 임용권자가 결정하므로 본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는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교사의 경우 쌍둥이 육아휴직 관련 질의

질의

○ 쌍둥이 출산예정이고, 사립중등교원 남편과 공립중등교원 아내입니다. 육아휴직 개정으로 문의드립니다.

1. 유급휴직급여 및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 유급휴직급여는 여전히 “50만원”인가요?

4. 아내는 쌍둥이 “만8세”까지 총6년 휴직가능하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7. [교원정책과]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며, 첫째, 둘째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으로, 휴직개시일 기준 기본급의 40%(하한 50 ~ 상한 100만원)이며, 지급액의 일부(1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이며, 육아휴직 신청시, 휴직신청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이어야 하며, 휴직기간 중 자녀가 만6세를 초과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휴직사유가 소멸됩니다. 휴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자녀에 대해 최초 1년의 범

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장교사 보직교사 수당 지급 관련

질의

○ 부장교사가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 보직교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출산휴가에 들어갈 교사의 보직을 해임하고 그 기간동안 다른 교사를 임명하는 것은 기관장인 학교장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갈 부장교사의 보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휴가 중이라도 보직교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임으로 인한 병가 및 질병휴직에 대해

질의

○ 아이가 없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및 인공수정을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서 시험관 아기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쓰고,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학교에서는 병가와 질병휴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0. [교원정책과]

○ 현재 국가공무원(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중에 '불임휴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임용규칙을 살펴보면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용약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 또는 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간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불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진단서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기간 포함) 되는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 하지만 민원인의 휴직을 승인하는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문의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선생님께서 소속해 있는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립교원 근무경력 관련 연금합산과 원로교사 수당

질의

○ 사립교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동안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당시에는 불법이었음) 몇 년 전 임용전 사립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재조정 받고 교육경력을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을 공무원연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만55세, 총 교육경력은 30년이 지났습니다. (임용전 사립경력을 포함) 원로교사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5. [교원정책과]

○ 첫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받은 기간이 있을 경우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거 재직기간 산입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11에 의거 교직수당 가산금중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립경력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 경력이라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 겸직 허가 기준

질의

○ 겸직를 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직위를 겸하여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겸직 조항이 적용되므로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형편 등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대학의 인사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질의

○ 교육청의 관내 사립고등학교 감사결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학교법인측에 중징계처분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다른 교육청의 관내 사립학교로 옮긴 경우 “퇴직불문”으로 종결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 관련자료를 이송하여 징계요청을 하여야 하지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1.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3항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령 제6조 4항에 의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령 제6조 5항에 의하면 징계사유를 통보한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자료를 다른 교육청에 통보하면, 그 교육청에 둔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채용 및 교장임명 관련 질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54조 2항에 의거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 한 때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 퇴직한 교장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요?

○ 교육공무원법 32조 4항 교육 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삭제되어 있어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교장을 임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8.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의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 연수, 정직, 휴가, 직위해제 등의 사유는 복직이 예정된 경우를 가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원면직, 직위해제 교원의 배제징계 등 종국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신규채용에 의할 것이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00조에서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법은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감액 지급

질의

○ 2005년도에 사립대학병원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의 50%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반환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환수조치 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4.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준용)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법등에 의한 급여 제한)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형법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기 지급된 금액의 1/2을 환수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 62조 관련

질의

○ 사립학교법 제62조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학교이사이면서 학교장인경우) 5인의 징계위원이구성되면 학교법인의 이사인 수가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교원3명 이사2명이면 학교장은 교원에 포함하나요? 이사에 포함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4.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62조에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이사인 학교장은 교원과 이사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수가 징계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 이사 수의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이사이면서 교원인 학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임용시험 신체검사시 외사시의 불합격 요인여부

질의

○ 제가 왼쪽눈이 외사시 입니다. 교원임용시험 3차 수업실기와 면접에 있어사시때문에 감점요인이 되거나, 불합격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9. [교원정책과]

○ 교원 임용시험에서 신체검사 관련 내용은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중에서 눈에 관련된 불합격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두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경우
2. 두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4.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인턴의 사학연금 관련

질의

○ 대학교에서 행정인턴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였으나 중간에 취업이 되어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낸 사학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4.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에 의거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며,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임시로 임명된 행정인턴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산학겸임교사 임용

질의

○ 산학겸임교사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자동차업계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산학겸임교사로 임용이 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7. [교원정책과]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의 근무한 자입니다.

생활지도관련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질의

○ 교사가 돌아가면서 학생기숙사 생활을 지도하는 경우 저녁5시부터 아침9시까지 16시간 동

안 초과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을받는 것은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정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6. [교원정책과]

○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감으로서 전일 17시부터 익일 9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지급규정은 없으나 학교운영상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편성된 자체예산에 한하여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사취득 목적 유학의 기간 내 박사학위 취득 가능 여부

질의

○ 외국의 석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3년 유학휴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사학위를 2년만에 받은 경우1년 기간동안 박사학위를 취득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9. [교원정책과]

○ 공무원 임용규칙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생님 찾기 방법

질의

○ 선생님을 찾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9. 7. [교원정책과]

○ 선생님 찾기 서비스가 우리 부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현재 선생님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선생님 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찾고자 하는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 경력인정

질의

○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로 3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3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책정시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8.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경력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 등에 따르면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고 전일제로 근무(1일 8시간 이상)한 경우, 10할을 인정합니다. 시간제 근무의 경우 "초중등 교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2006년 3월 1일 이후 42시간)" 대비 실근무시간의 비율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류와 학교급 또는 담당과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산된 환산율의 50%를 인정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진가산점에 대한 문의

질의

○ 승진 가산점 중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 경력 평정 사항이 있는데 유치원 원아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초등학생이 주가 되는 청소년 단체활동에 병설유치원 교사가 초등학교의 청소년단체 업무를 맡았을 경우 승진 가산점 경력 평정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이 업무를 위해 받은 연수는 유치원 승진 평정 시 연수이수 실적에 포함이 될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4. [교원정책과]

○ 선택가산점에 대한 권한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4항에 의해 명부작성권자에게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가산점) ④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실기교사 응시자격 관련

질의

○ 중.고등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을 한터라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데 2009년 11월 21일 피부미용자격증을 취득한 후 피부강 사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8.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하여교직과목 이수 및 전공과목 이수 후 무시험검정을 거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실기교사 자격증

질의

○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02년에 대학을 졸업하였고, 교육학개론(2학

점)과 실기교육방법론(2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실기교사자격증 취득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5.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자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실기교사의 자격기준은 전공과목이수 + 교직과목이수 +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전문대학 졸업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실기교사 자격증이 발급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위해서 교원양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 작성 방법 및 자격요건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생아 휴직 후 호봉 반영 관련

질의

○ 셋째아 육아휴직기간을 경력과 호봉 인정해준다(2011.1.1자 기준)는 관련 공문을 안내해 주셔서 신청을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2001년 3월에 쌍둥이(둘째, 셋째)를 출산을 했는데 당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2개월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1년 휴직 후 휴직연장을 할 때 셋째아로 휴직한 것이 아니고 둘째아이 이름으로 연장 휴직을 한 것이기에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 [교원정책과]

○ 공무원임용령이 2011. 3. 7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근거인 교육공무원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서 개정발의가 된 상태이며, 아마 일반공무원과 같이 소급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과 같이 이미 당시의 휴직요건에 따라 휴직한 사항에 대해 다시 정정 휴직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인사의 원칙에 반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가 신청에 대한 제한을 받는 대상

질의

○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기중 연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

한 연가 신청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6.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원의 복무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연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가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대회 입상실적 기준

질의

○ 연구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우연구를 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상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연구연도와 입상년도가 다른 경우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구학교 가산점 문의

질의

○ **도에서 연구학교 가산점을 가진 교사가 ㅇㅇ로 전출한 경우 00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시·도간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소속한 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정여부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로 인한 출장시 시간외수당

질의

○ 지난 겨울 방학부터 부전공 자격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도 산발적인 연수(1개월 이내)가 실시되고 있는데 숙박을 하면서 야간까지 연수가 진행되기도 하고, 휴무 토요일에도 연수가 진행되곤 합니다. 평일 야간과 휴무토요일에 실시하는 연수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락한다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9.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자지부 예규 제321호, 2010.7)중휴일의 교육참고, 행사동원 시의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양교사 교육실습 면제

질의

○ 영양사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교육실습을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학교의 교장이나 이사장이 될 수 있는지

질의

○ 외국인이 교장 또는 이사장이 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한민국의 국

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외국인학교 등)

회신 회신일 : 2010. 8. 12. [교원정책과]

○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이 경우 자격증의 성명 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됨. 그러나 외국인은 헌법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없어 국·공립학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자격과 임용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중등임용고시 응시 및 국공립 중등교사 활동 가능 여부

질의

○ 저는 중국(타이완) 사람으로, 한국 대학에서 중국어과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해서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공립에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6. [교원정책과]

○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격증의 성명 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헌법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없어 국공립학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자격과 임용은 별도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공무담임권 :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 담임할 수 있는 권리

원격교육원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가능한지

질의

○ 학점은행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받은 원격교육원의 직원은 사립학교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8. [교원정책과]

○ 학점은행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인정받은 원격교육원의 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로교사 관련 규정

질의

○ 원로교사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찾아 볼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원로교사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원로교사의 우대등) ① 법 제29조의2제6항(교육공무원법)에서 "원로교사"라 함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당직근무의 면제·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⑤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⑦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원로교사에 관한 규정

질의

○ 공무원 보수규정에 원로교사는 30년이상 경력에 55세이상 되는 자에게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원로교사에 대한 처우가 달라 수당 지급 이외에 일선학교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 원로교사에 대한 처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에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의 복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로교사에 대한 임용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로교사의 복무 및 대우에 대하여

질의

○ 교장 8년 만기로 원로교사로 전직하신 분에 대한 복무와 대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7. [교원정책과]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임기만료된 교장의 경우 원로교사의 대우사항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3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2) 명예퇴직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3) 교내 행사시 우대와는 별도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 자문에 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은 해당 교육청의 교원인사팀의 지침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전공 학점 중복인정여부

질의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점을 교육대학원에 유사 전공시 학점의 중복이 인정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교육대학원의 유사 전공에 진학하여 다른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시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전공 및 교직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시 공휴일 포함 여부

질의

○ 교원 휴가 업무 처리 요령 중 특별휴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휴가 일수 계산에서 8주에 유산인 경우 5일 입니다. 5일 중 공휴일 또는 주5일 산업제의 휴무일이 포함 될 경우 산입하는 지요? 또 5일 후에 안정을 위해 2~3일 정도의 병가를 연결해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9. [교원정책과]

○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 11주(77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특별휴가(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는 산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연근무제 문의

질의

○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집약근무제를 신청할 경우 (1일 10시간 4일 근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일수만큼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휴가, 교원 자가연수 등 에 대해서도 감액하지 않는데 1달에 4-5일을 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 교원 자가연수나 장(단)기휴가에 대해서는 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산정할 때 점심시간을 포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25. [교원정책과]

○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존치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현재 일반공무원과

달리 주5일제 근무가 완전 정착되지 않고 있고 점심시간에도 생활지도를 하여야 하는 이유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교원에게는 집약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

질의

○ 초등학교 명예퇴직한 선생님이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지요?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만약 유치원 원장 연수받을 자격조건이 된다면 혹시 자부담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8. [교원정책과]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대상) ① 교육연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②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③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수대상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④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⑤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⑥연수원에서 연수할 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유치원교사의 기간제 교사의 경력 인정 문의

질의

○ 공립유치원교사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10년 9월) 있는 제 딸이 사립 유치원에 2011년 3월 1일 자로 정 교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유치원에서 기간제 근무경력이 많은 것을 알고 1급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추천 하였더니 공립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9. [교원정책과]

○ 현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 7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한하여 시 · 도교육감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원)장과 교(원)감 및 모든 1급(정)교사 자격기준 중의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교사입니다. 제 딸이 2007년 7월에 출생하였고, 현재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중에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4. [교원정책과]

○ 남성교원의 육아휴직은 만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에 한해 최고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수당(50만원, 1년이내의 휴직기간에만 지급)외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셋째 아이 호봉 승급

질의

○ 저는 셋째 아이 육아휴직을 3년간 하고 지난해 2010년 3월 1일자로 복직해서 1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1년에 한해서만 호봉 승급을 했습니다. 2011년 1월자로 셋째 아이 육아휴직에 한해 최대 3년까지 호봉을 승급해준다는 내용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셋째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호봉 재획정을 통해 못했던 것을 승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2.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2011.1.10. 공포)제15조제6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은 산입한다.

육아휴직 소급인정

질의

○ 2004년 9월에 쌍둥이를 출산하여 육아에 어려움이 많아 2005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첫아기 이름으로 신청해서 6개월 하고 바로 다시 둘째아기이름으로 육아휴직을 1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005년 당시 육아휴직법이 생후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쌍둥이가 돌전에 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후로는 휴직신청이 아니고 연장만 가능하다고 하여 1년을 더 하였습니다. 총 2년 6개월을 육아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해서 근무중입니다. 복직하니 총경력에서 인정되는 것은 1년6개월이고 1년은 경력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복직한 그 해 말에 육아휴직법이 바뀌어 7살까지 미취학아동이 있을시는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한 아이당 1년씩 경력에 인정되고 육아휴직급여도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2명으로 육아휴직을 했으니 경력은 2년으로 인정되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7. [교원정책과]

○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6호에 따라, 각 자녀에 대해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동일자녀에 대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다가 잔여기간에 대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대하여도 그 기간을 인정합니다. 아쉽게도 현재의 규정으로는 귀하께서 둘째 자녀에 대해 연장한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승급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으나, 추후,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시 잔여기간 6개월에 대해서는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여부

질의

○ 초등학교 교원으로 올해 1년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할 일이 생겨 출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출국하여 해외에 머는 것이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교원정책과]

○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여부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자의 국내외를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휴직의 허가는 임용권자가 휴직의 목적 적합성 등에 대한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휴직 목적 및 상황에 대하여 소속 교육청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만 8세 개정으로 인한)

질의

○ 첫째 아이(2003.05.12 출생,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육아휴직 쓴 적 없음) 앞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첫째 아이 앞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할 경우에, 현재 둘째 아이 앞으로 육아휴직(2010.03.01-2011.02.28)을 했었고, 2년차 육아휴직(2011.03.01-2012.02.29) 중인데, 둘째 아이 앞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을 중간에 철회하고, 다시 첫째 아이 앞으로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6. [교원정책과]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따라서 3학년 시작 전까지가 민원인의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과 간병휴직 연속사용과 유학휴직자가 타대학 진학진학하고 있을 경우 처리방법

질의

○ 육아휴직 기간 중에 아이가 아파육아휴직 후에 간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휴직자가 당초 신청한 대학에서 유학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9. [교원정책과]

○ 육아휴직과 간병휴직은 휴직요건이 서로 다른관계로 육아휴직후 복직후 해당공무원이 간병휴직의 요건을 갖춘경우 간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휴직은 청원휴직에 해당하므로 휴직 허가 여부는 임용권자가 개인사정 및 기관 인력운영사정을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휴직자가 당초의 휴직시에 신청하여 허가받은 대학과 다른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당초 휴직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관련 질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은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은 사립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사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법인), 사립초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가 모두 해당됩니까, 아니면 사립초중고만 해당됩니까?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이 금지되고 이사 2/3 동의와 관할청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의 임명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즉,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임명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청승인 이전이라도 이사회 2/3 결의만 있으면 학교장으로 임명된 것인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0. 11. 2.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 범위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이사장의 친인척과 같은 예외대상자는 관할청의 사전임명 승인되어야 임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턴교사 신원조사에 대하여

질의

○ 인턴교사는 강사신분에 준하므로 신원조회는 생략해도 될까요? 인턴교사의 신원조사를 경찰서에 의뢰하여 해주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아야 하나요?

○ 인턴교사 채용시 구비서류에 신원진술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원진술서는 신원조사시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것나요?

○ 계약제교원 채용 시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7. [교원정책과]

○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강사로 지원자격도 이에 따름니다. 인턴교사 채용에 따른 신원조사 업무 처리는 교직발전기획과-9207(2010.08.30)호로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서에서 공문회신여부는 각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사 관련 법령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149호),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과학기술부훈령), 신원조사업무지침(국가정보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용고시 관련(군복무자)

질의

○ 현복무중인 장교는 임용고시 응시가 가능한지와 합격시 문제점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응시제한 법개정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 23. [교원정책과]

○ 교원임용시험은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시험을 응시하시고자 하는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임용연기신청등) 그리고, 현역복무중인 자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법개정을 우리부에서는 검토한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용고시자격

질의

○ 경영학과에서 교직이수하여 상업정보 2급 자격증을 받고, 국어를 교직복수하여 2급 자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어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응시할 때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뿐만아니라 일반계 중·고등학교도 응시할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5.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의하여 공개전형 응시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취득(예정)자이어야 합니다. 3. 복수전공으로 국어 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 국어 과목 임용고시에 응시가 가능하며, 임용고사에서는 일반계고 전문계고 구분없이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용시험 개정 관련 의견

질의

○ 개정된 임용시험 관련하여 지방 교대의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차 3차 시험 만으로 변별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7. [교원정책과]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수업능력 중심의 교사 임용이라는 대전제하에 개선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포함된 내용들은 2009년에 발표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된 내용들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층면접이나 수업실연평가의 경우, 전문가적 안목에서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심층면접이나 수업실연평가는 기시행중인 시험을 좀 더 구조화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새로

운 형태의 시험이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교사의 선발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가산점 등 각종가산점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1차 시험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용시험 개선안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필요한 실질적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뽑겠다는 의미로 특정교대의 이익이나 불이익 해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임용시험 토요일 실시에 관한 민원

질의

○ 임용시험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시행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등 임용시험날짜와 초등 임용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4. [교원정책과]

○ 임용시험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한 것은 일요일 시행에 따른 반복적인 민원제기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 모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은 토요일에 실시하겠다는 결정과 더불어 타 부처에서도 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임용 시험날짜는 10월22일, 초등임용 날짜는 임용시험을 관리하는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5일제 확대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무원 채용 시험이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법고시 : 2.27(토), 행정고시 : 2.6(토), 외무고시 : 2.6(토), 7급시험 : 7.24(토), 9급시험 : 4.10(토)3. 이에 교원임용시험도 올해부터 토요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용시험에 한국사 자격증 관련

질의

○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임용시험에 필수 자격요건이 돼야 합니까? 다른 전공자들까지 한국사 자격증을 갖추라니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9. [교원정책과]

○ 한국사자격증 관련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이유는 최근에 교사의 건전한 국가관, 윤리관과 봉사의식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사관과 관련지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2. 시험일자 관련임용시험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일요일 시행에 따른 반복적인 민원제기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 모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은 토요일에 실시하겠다는 결정과 더불어 타 부처에서도 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리며,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채용 시험도 토요일에 치뤄지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교원의 인사발령

질의

○ 장애인교원의 경우, 인사발령, 인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장애가 있어 각자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들에게 인사발령이나 복지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5. [교원정책과]

○ 장애인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등에서 명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고용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장애인 전체적인 내용으로 교원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내용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1학년도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6조 교원(감) 및 교사 전보의 우대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인사 및 복무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장학관 관련 질의

질의

○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와 장학관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4조에 의한 교원단체 또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학사와 장학관이 교원 단체 또는 교원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3. 11. [교원정책과]

○ 교원은 열정과 사랑으로 교단을 지키고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학사와 장학관도 본질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수학습 경력을 가진 교사가 전진을 통해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으로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된 것입니다. 본질적인 교원의 역할과 책임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원단체는 회원의 전문성 신장과 상호간 자주적 협동단결에 관한일, 회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교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업 등 전문성 높은 단체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량활동 시 외부강사 활용

질의

○ 초등학교 재량활동 수업을 담임만 할 수 있는지, 다른 교사나 외부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수업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외부인사를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강사선임절차를 거쳐 강사로 임용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원인사과(. [교원정책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강사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의 주 흐름은 담임교사가 담당하되, 수업의 일부분은 선택적으로 보조교사가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는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재외 한국인학교 고용휴직교사 병가 관련

질의

○ 본의 한국인학교 고용휴직인 본교 소속교사가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60일 병가를 사용하여

일본 한국인학교에서 퇴직 후 귀국예정학교에 복직 후 상태가 근무가 불가능하여 다시 병가를 40일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1. 소속 기관을 달리하였으므로 60일 병가 추가 부여 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11. 3. [교원정책과]

○ 고용휴직기관에서의 휴가(병가포함)는 해당 고용기관과의 계약 관계로 성립되는 것으로 복직을 한다해서 상호 연계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타부처 및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직위급으로 고용휴직하는 경우라면 그 휴가기간은 승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재외 한국인학교의 휴가기간은 국내 학교복귀 이후 휴가 기간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경력(승진가산점) 인정 여부

질의

○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 후 귀국하여 복직한 교사의 승진가산점 인정(담임,보직교사 경력)을 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언제 인지? 본인이 2004년 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고용휴직 후 중국에서 근무하고 한국으로 복직하였는데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의 담임 및 보직교사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에 대한 승진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가산점)에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에 따라 고용휴직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 획정 및 근무성적평정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물리치료학과 졸업생 임용고시 자격

질의

○ 전문대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사졸업을 한 후에 대학원으로 특수

교육과를 입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원 특수교육과로 이수하게 되면 특수학교 등의 임용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지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원격대학 등에서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직과목 취득은 불가하며, 교육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 (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에 자격기준 및 취득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전임자의 사학연금 부담금관련

질의

○ 현재 저희 학교는 전임자의 경우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의 부담금 문제에 대해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즉, 전임자의 급여가 무급이므로 사학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만일 전임자의 급여가 무급이므로 부담금을 학교에서 개인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교직원이 휴직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제2항에 의거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수 지급일로부터 2일이내에 학교기관의 장에 납부 또는 복직후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1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년 초과 교장의 임용에 관한 질의

질의

○ 사학법인 정관에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62세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24.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정관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사항에 정년 근거 규정이없는 경우에는 62세를 초과한 자도 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장임기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임기 4년 및 1회의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년이전에 교장중임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장을 할 수 없는 등 중임제한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등 학교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중한직위로써 교육의 일관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때 가급적이면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척 및 기피

질의

○ 징계의결 과정에서 제척과 기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척과 기피는 어떤 경우에 하며 어떻게 다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8. [교원정책과]

○ 징계의결 과정 중 "제척과 기피"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협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징계위원장이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은 스스로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척”은 징계 등 협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기피”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자 할 때 말합니다.

중등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 여부

질의

○ 저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초등에서 기간제로 2006년부터 일하고 있는 50대입니다.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를 않아 초등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는 관계로 중등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에서 기간제 혹 시간강사로 일을 지금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011학년도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하여 지원을 하고 보니 중등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2.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요건은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07.8.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이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등교원 학령과 군경력의 중복시 호봉산정

질의

○ 조기졸업을 했을 시에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이 되어 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할지 아니면 학령과 군 경력은 별개로 보아서 두 경력을 인정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7. [교원정책과]

○ 학령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의 학교까지 졸업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다닌 기간보다는 졸업한 학교 수준에 따라 보수규정 별표2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 경력은 경력으로 10할이 인정되므로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시면 됩니다.

중등임용고시 가산점 관련

질의

○ ㅇ 중등임용고시 가산점 관련

- 중등임용고시 가산점 상한제 관련한 정원에 대한 적용문의
-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은 1차 2차 3차에 모두 각각 본인일 경우 취득점수의 10프로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가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가졌을 경우에는 장애인전형에도 응시가 가능한데, 장애인 전형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2. 8. [교원정책과]

○ 가점 합격률 30% 상한선의 적용시점은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발예정인원 100명을 채용하는 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1차 필기시험에서 150명을 선별하는 경우에는 가점합격자는 45명을 초과할 수 없고, 2차 필기시험에서 120명을 선발하는 경우 36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차 면접시험과정을 거친 후 최종합격자 100명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므로 3명 이하로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 전형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임용시험관련

질의

○ 중등교원임용시험에 대한 양성평등제 미실시에 대한 민원

회신 회신일 : 2010. 10. 5. [교원정책과]

○ OECD 국가 중 성비 불균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여교원이 많은 것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역할 정체성, 학업성취도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인원을 일정비율 이상될 수 있게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쟁경쟁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5.25. 2005헌마362 전원재판부) 끝.

지방교육 행정기관 인사교류 관련

질의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순회교사'와 공립의 각급학교의 '특수학교교사'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12. 16. [교원정책과]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순회교사'와 공립의 각급학교의 '특수학교교사' 간의 인사교류는 동일 자격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전보계획은 임용권자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하고 있는 교사의 관리업무수당

질의

○ 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교사에게 관리업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6. [교원정책과]

○ 관리업무수당은 교장임용에 관한 관계규정에 따라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교장으로 임용되어 해당업무에 종사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직무대리는 임용자격이 명백히 다르므로 관

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원 경조사 참여비 출장

질의

○ 직원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교사의 경우학교에서 출장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7. [교원정책과]

○ 직원 경조사 출장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방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 및 징계시 고려사항

질의

○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는 차이가 있나요?

○ 또한 공무원을 징계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3. 4. [교원정책과]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 직위해제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음)

○ 직위해제의 사유는(법 제37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됨) 등으로 이중 1,2,3호가 경합된 때에는 2호 또는 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고(법 제73조의3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5항), 직위재제사유가 소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야야 합니다. (법 제72조의3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

○ 징계결정시 고려할점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공무원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므로, 징계위원에서 위와 관련하여 징계의 정도를 절정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병휴직 가능 여부

질의

○ 질병휴직의 사유는 별도를 정해져 있나요? 어떤 질병에 대해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5. [교원정책과]

○ 지방교육행정직의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에 한하여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질병종류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신체·정신적 장애는 모두 해당됩니다.

○ 휴직 신청서류는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입증할 의사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인사권한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질병휴직의 허가종류 및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에서 심의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질병휴직 기간 중 학위취득

질의

○ 질병휴직 기간 중에 학위취득을 한 경우 승진규정상 연구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질병휴직 중 학위취득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4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의한 교

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을 살펴보면 통상 휴직업무 처리시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시 교원 수급사정, 예산상,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에 학위 취득을 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법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됩니다.

○ 특히,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휴직(동반, 유학,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는 그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목적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병휴직과 질병휴직시 대학원수강에 관한 사항은 통상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허가권자인 임용권자가 휴직목적의 적합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부에서 답변드리가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교육청과 다시 한번 상담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징계 교원의 동건 비위사항에 대한 재징계 가능 여부

질의

○ 징계 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경찰청수사(현재 검찰청 송치), 검찰수사 후 해당교사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파면 처분요청이 있은 연후 해당사건과 같은 비위사항에 대해 재징계가 가능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5. [교원정책과]

○ 징계 처분 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은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는 징계기관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징계기관에 있는 것이지 당해 혐의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사건에 대한 처분이 확정(불가쟁력,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된 이상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의 하신 동일 건(성적관련 비위행위)이 아닌 다른 건이 수사 도중 발생한다면 그 건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징계관련 법령 해석 문제

질의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 임명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결과를 통고받고 파면, 해임등 신분배제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이사장이 해당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사립학교의 교원이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아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는 데, 그 이후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립학교에서 후임자 보충발령을 못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의결결과를 통보 받았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이사장이 해당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셋째, 사립학교의 교원이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아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는 데, 그 이후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최종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립학교에서 후임자 보충발령을 못하는 가에 대한 것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했을 경우는 후임자 발령을 하지 못하지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립학교의 임면권자가 학교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징계처분 말소 기간

질의

○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에 따른 인사사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805호]에 따라 단일처분의 경우 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기간)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합니다. 그리고 중복처분의 경우 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합니다.

징계처분 무효

질의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 징계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원정책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결정한 경우,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 확인 판결이 난 경우에는 말소가 됩니다.

초등 교원의 대학 강의 겸직

질의

○ 초등학교 교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외부강의 복무검토 역시 함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감 자격연수관련

질의

○ 초등교감 자격연수 시 1정 연수점수를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로 환산해서 적용요청 민원

회신 회신일 : 2011. 1. 3. [교원정책과]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은 연수생이 당시 받은 점수로만 인정이 됩니다. 절대평가로 연수성적 받은 것을 상대평가로 환산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반영 비율을 감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초등교사의 주택임대사업 가능 여부

질의

○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법상 같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해야합니다. 초등교사도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0.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취지입니다.

○ 행정자치부 복무제도 해설에 의하면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는 불가하므로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보직교사의 수, 계약제 교원의 임용 상한연령

질의

○ 초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의 수는 몇 명으로 두어야 하나요?

○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려고 하는데 임용을 위한 상한 연령이 있나요? 상한이 있다면 몇 세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교원정책과]

○ 5학급 이하는 1명, 6-11학급은 2명, 12-17학급은 4명, 18-35학급은 6명, 36학급 이상은 12명을 둡니다.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합니다.

초빙교장 임기 교장임기에 포함요청

질의

○ 초빙교장 제도로서 이 기간이 교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임용된 교장은 8년 이상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처음 초빙교장제 취지는 낙후된 학교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젊은 전문직 출신들의 교장임기 연장을 위한 전유물처럼 되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모교장제도 역시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한번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은 최장 12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빙교장제, 공모교장제도 교장의 임기에 포함하도록 하여 8년이 지난 교장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으면 평교사로 옮겨가는 모습이 교직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7. [교원정책과]

○ 우리부는 승진규정 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탁월한 교장들을 위하여 중임제한 회수에 산입하지 않는 “초빙교장제”를 도입하였으며,

- 2007년 9월부터는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함으로서 새로운 리더쉽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적용하는 등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모 교장에 대해 중임 제한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며, 기존의 교장 임용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 더불어 2010년에 실시한 교장공모제 성과 분석에 따르면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온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학교 운영 계획 수립: 4.29(비공모)

초중학교 교사배치 기준

질의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은?

회신 회신일 : 2010. 10. 13.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④ 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인이내 3. 18학급이상 3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인이내 4.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2인이내 5.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중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1인2. 9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3.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5. 2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 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⑥ 삭제

⑦ 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산휴가 기관 관련

질의

○ 법정 출산휴가기간이 90일이지만 출산휴가를 82일간만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법정 출산휴가 90일을 다 채워서 꼭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1. [교원정책과]

○ 출산휴가는 출산공무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90일까지 그 기간을 확보해주도록 한 규정으로 출산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90일을 채워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9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 관련 질의

질의

○ 출산휴가를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산 후에는 바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2. [교원정책과]

○ 출산휴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제2항의 의거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동법 제72조에 의거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전달 방법

질의

○ 징계혐의자가 배달된 출석통지서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2. [교원정책과]

○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여부 관련

질의

○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든 근무시간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을 요구하는 사항(수학여행 등 사전답사, 학생인솔 등)에 대하여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3. [교원정책과]

○ 국내출장중 시간외근무수당 병급지급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 '11.1.17)"을 보면 국내출장의 경우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부합되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인척 학교장에 대한 질의

질의

○ 행정기관의 승인에는 인가와 허가가 있는데 인가는 조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행정기관의 처분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승인은 허가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과거 교육비리 당사자, 성폭력 등 범죄 혐의자, 기타 언론 등을 통하여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할청이 승인

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 이사 2/3의 결의가 없었거나 관할청 승인이 없이 학교장을 하고 있는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 자격이 없는 원천 무효로 보이는데, 원천 무효가 맞는지요? 이 경우 관할청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1. 3.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에 근거한 이사장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의 학교장 임명승인은 당해 학교 법인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요건을 갖추고 관할청에 요청하였다 하여 임명을 승인하는 것이 아닌 관할청의 결정재량사항입니다. 아울러 앞의 전제 요건(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찬성에 의한 의결이 없거나 관할청의 승인)에 충족하지 아니한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청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재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타연금 경력을 사학연금과 합산 가능한지

질의

○ 예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 사학연금으로 합산하려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합산하도록 도와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1. [교원정책과]

○ 재직기간의 합산은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면 합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요일에 연가내는 경우 반일로 처리되는지, 휴가 중 초과근무 인정되는지

질의

○ 현직 교원의 경우근무 토요일에 연가를 내는 경우 연가는 1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반일로 계산되나요?

○ 휴가중에 초과근무가 인정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2. [교원정책과]

○ 주5일제가 전면실시되기 전까지는 근무 토요일에 연가 또는 병가는 반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휴가 중인 공무원원에 대하여 휴가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 도초과근무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포상 제외 관련

질의

○ 정년퇴직을 하는 현직 교장으로 포상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 문의를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그 후 대통령령으로 사면통보를 받았는데 도교육청에서 벌과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였으니 포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문의 드립니다. 사면이 되어도 효력은 발생하고 있는 지, 제외가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8. [교원정책과]

○ 퇴직공무원(교원) 포상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직기간에 따른 훈격등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재직기간중에 벌금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으셨고 이는 2011년 정부포상업무지침(P.33) IV.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분야별 포상추천제한

1. 퇴직공무원

2.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자 단서조항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3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에 해당되어 금번 포상추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징계처분과는 달리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중 벌금1회 200만원 이상, 총3회이상에 해당되면 추천제한에 해당되며 퇴직공무원의 경우 추천기한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이므로 소송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준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실시 문의

질의

○ 정년퇴직 예정교원이 퇴직 3개월 전 부터 퇴직준비휴가를 신청할 경우 2-3회 분할하여 신청하여도 가능한지요?

○ 20년 이상 근속 교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할 경우, 학기중이라는 이유와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방학중에 실시하도록 권장하면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5. [교원정책과]

○ 정년퇴직 예정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신청 사용시 분할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인사(복무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재직휴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33호, 2010.09.10 일부개정]에 의하여 교원이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장기재직 휴가는 1회 10일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명예퇴직시 퇴직준비휴가

질의

○ 저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5. [교원정책과]

○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퇴직 준비휴가 가능 여부는 명예퇴직자도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의 호봉에 대해

질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교사(강사 아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책정되었던 호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초,중등학교에 소속된 특수교사는 10호봉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할 때는 8호봉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사범계열 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 항목에 의한 1호봉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9. [교원정책과]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3' 3.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2년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질의에서 인용하신 나의 항목을 살펴 보면,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 2년의 가산연수를 주게 됩니다. 지원센터 소속의 순회교사는 학교 소속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나 항목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2년의 가산연수를 부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한 사범계학교 졸업자 가산연수는 부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포상 제한에 대해

질의

○ 학교에서 포상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상 추천 제한되는 것은 어떤경우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8. [교원정책과]

○ 공무원 포상시 재직공무원일 경우에는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향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받은자
4.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위에 해당되면 포상추천시 제한되어야 하며 퇴직공무원일 경우에는

1. 재징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위에 해당되는 포상추천시 제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질의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서둘러 주셔서 과도한 수업부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세요. 초등은 26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수업시간 경감이 필요하다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6. [교원정책과]

○ 현재 우리부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경우, 교원의 배치기준을 현재 학급수 기준에서 수업시수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교원의 급격한 증원과 수업시수에 따른 보수체계 등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휴업일 변경

질의

○ 개교기념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학교에서 다른날로 바꿀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교원정책과]

○ 학교 휴업일 변경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학교의 휴업일을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정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거 관련법령 절차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장의 시간외 근무 명령

질의

○ 학교장이 일과 시간을 마친 후 시간외 근무를 명하는 경우 교사는 이를 따라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교원정책과]

○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지도, 업무처리, 기타 교육활동 지도 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원은 동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는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학교장은 교육목적을 위해 근무시간외의 근무명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원에 대한 문의

질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 3항에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1항 2호에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설립자 겸 학교장의 비리로 학력인정이 취소되고 학교가 폐교될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7.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3호에 의하여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은 인정이 되나,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2호에 의한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퇴직금관련

질의

○ 학습보조 인턴교사에 대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 [교원정책과]

○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초 · 중등교육법」제22조에 근거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하여 청년층, 저소득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비교원에게 학교현장 경험 축적 기회 제공과 초 · 중등 학생들의 수업 및 생활지도를 통한 학교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09.9월부터 각 학교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및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위 취득이 아닌 어학연수로 휴직가능 여부 질의

질의

○ 학위취득이 아닌 어학연수만이 목적이어도 휴직을 할 수 있나요? 1년 이상의 연구나 연수의 경우 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교원정책과]

○ 학위취득이 아닌 어학연수로 휴직가능 여부는 학위취득이나 해외에서 1년 이상 연수(어학연수 포함) 또는 연구를 하게 된 경우 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4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 운영지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45조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해외 석사와 국내 석사 복수 인정 여부

질의

○ 미국 대학원에서 1995년(3학기)을 1년간 수학하여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교원자격증을 얻기 위해 2006년~2008년 까지 2년 반동안 수학하여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교사 임용전 호봉 책정시 경력 인정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3. 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실제 수학기간 중 입학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실제수학

기간 중 입학일로부터 3년 이내) 연구경력으로 10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시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연구경력으로 10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갖추어 진다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이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호봉획정권자인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봉재획정 관련 질의

질의

○ 초임호봉 획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누락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30. [교원정책과]

○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은 호봉 재획정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봉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경력을 합산하여 새롭게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므로 보수도 호봉획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소급효는 없습니다.

교원의 후임자 보충 관련

질의

○ 관내 소속학교 교사가 파면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후임자 발령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학교에 후임자 보충을 해도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30. [교원정책과]

○ 파면을 받은 경우 해당 교사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송청심사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후임자 보충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교사가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발령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중 복무 관리

질의

○ 학교에서 교사에게 휴직을 허가한 경우 휴가를 받은 교사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4. [교원정책과]

○ 휴직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휴직 중 겸직가능여부

질의

○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연구프로젝트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단기간의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연구보조원 수당을 받는 경우 겸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휴직의 취지에 위배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정직위를 겸하여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겸직 조항이 적용되므로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형편 등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대학의 인사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교사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 가능 여부

질의

○ 교육학 박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중인 교사입니다. 교육대학으로부터 학위관련 과목에 대한 출강의뢰를 받았으며 아울러 관련 학과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위취득을 위한 휴직교사가 출강 및 겸임교수로 임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4.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는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시에는 당초 휴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직중인 교원이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에 담당직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겸직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당 강의시수 또는 겸임교수로서의 업무 등)

교원대 대학원 졸업후 1정 자격부여에 관해

질의

○ 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정 자격연수를 받지 않아도 1정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상담은 1정이 아니라 1급이라는 것도 압니다.) 제가 졸업후에 1급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대학원에 알아보니 전문상담은 졸업 후에도 1급 자격증을 교육청에서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급을 양성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정말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7.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며, 비학위과정 이수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하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비학위과정 이수자 및 석사학

위 취득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시험검정 신청서는 개인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교감 자격연수 취득 등 상위자격취득시 제한 요건

질의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승진임용의 제한에는 교육공무원이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견책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이내에는 승진 임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는 이러한 제한 요건이 없어 징계의결 요구중인자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첫째,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교장, 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만약 승진 임용처럼 제한이 있다면 기간 등등 어떤 면에서 제한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즉, 예를 들어 2월에 교감자격연수 면접 대상자가 되었으나 중간에 징계의결사유가 생겼는데, 면접고사 이후에 이를 근거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8. [교원정책과]

○ 교감자격연수 면접대상자 선정 전후에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연수면접대상자를 취소 혹은 연수지명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라 판단됩니다.

○ 민원인께서 근거로 제시하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은 교육공무원의 승진시 임용의 제한사항을 명기한 것으로 동 규정에 준해서 자격연수 면접대상자를 선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교감자격연수 면접대상자 선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5항에 근거한 것이며, 동규정에 근거하여 자격연수면접대상자와 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하지만 교감자격연수면접대상자-교감자격연수대상자-자격취득자-교감승진후보자 선정의 연관성이 높기에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고사를 통해 부적격한 면접대상가 최종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각급학교의 휴업일이 다른 이유

질의

○ 학교마다 휴업일이 달라 부모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마다 휴업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교육과정과]]

○ 학교마다 휴업일이 다른 이유는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질의

○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고 있는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수는 월 2회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보다 34시간씩 감축되었다. *7~10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월 2회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보다 34시간씩 감축되었다. 다만, 중학교 7,8,9학년과 고등학교 10학년에서 학년별로 감축된 34시간은 연간 총 수업 시간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3,4,5,6학년과는 달리 연간 총 수업 시간(단위) 수에 반영되어 있다.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3-6학년은 연간 총 수업 시간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7-10학년은 반영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7. [교육과정과]

○ 주5일 수업에 따른 34시간 감축에 대한 설명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편제표에 제시된 3,4,5,6학년 각 교과 및 재량 특별활동 수업시수의 총합은 986시간(또는 1,088시간)인데 반해 표

맨아래 제시된 '연간 총 수업시수'는 952시간(또는 1,054시간)입니다.

○ 이는 학교 재량으로 교과 시수를 34시간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현재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감축할 교과들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 고등학교의 경우 각 교과 및 재량 특별활동 수업시수의 합과 맨 아래 제시된 '연간 총 수업시수'가 같으므로 초등학교와 같은 재량권을 갖지 않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예체능 축소 우려

질의

○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각 학교에서 교과별 수업시수를 20%내외에서 증감 할 수 있는 걸로 하셨습니다. 이에 도덕 또는 예체능을 등한시 할 것에 대해 우려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3. [교육과정과]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2009.12.23)로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하고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실현을 위해 학생 입장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 범위 내 수업시수 증감 운영은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이며, 체육·예술 교과의 감축은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체육·예술 교과 시수가 오히려 늘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로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수업시수

질의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는 몇시간 교수하도록 되어있는지, 과목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몇시간 교수하도록 되어있으며 과목 편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0. [교육과정과]

○ 2011학년도 고등학교는 1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2,3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프랑스어 등을 포함한 제2외국어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에서는 기준 단위가 5단위로서 1단위를 증감운영할 수 있어 4~6단위가 가능합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어 2~8단위 편성 운영이 가능합니다.

○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선택인 프랑스어Ⅰ은 6단위, 심화선택과목인 프랑스어Ⅱ는 6단위로 기준단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신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 홈페이지(http://curri.mest.go.kr)에서 '자료마당'의 '교육과정 자료'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교육과정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의 자료실에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을 검색하시어 살펴보시면 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총론 자료

질의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보건"교과 교육과정 파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3. [교육과정과]

○ 교육과정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2009개정 교육과정 이라는 싸이트 http://curri.mest.go.kr/index.jsp 에 들어가시면2009개정 교육과정 관련한 여러가시 설명들이 나와 있으며, 자료마당에 들어가 보시면 교육과정 총론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 공고시기

질의

○ 2009개정 1, 2학년 교육과정을 찾아보려 했으나 문서로 아직 공고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쯤 공고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7. 30. [교육과정과]

○ 09년 12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입니다. 우리부는 수시개정체제하에서 교과별 교육과정의 경우 창의인성교육 강화와 교육내용 20% 감축 등을 위해서 '11년말에 교과

별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과] 예술교육선도학교

질의

○ 2012년 부터 적용되는 2009년 개정 교육 과정과 예술교육선도학교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교육 과정입니까? 2. 예술교육선도학교가 1천여곳으로 늘어 난다면 기존에 없던 예체능 과목이 세분화 되어 연극, 무용 교과가 창설이 되는 것입니까? 3.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예술교과목이 신설되는 과목은 없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8. 24.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시함 따라서, 문의하신 예술교육선도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됨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체육 교과군에는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등의 과목이 있고. 이외에 전문 교과의 과목을 편성 운영할 수 있기에 중점학교가 아닐지라도 연극, 무용 관련 과목을 운영할 수는 있음

○ 그러나, 일반학교에서 연극, 무용 등의 과목을 개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예술체육중점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서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운영 가능함 3. 2007년 개정 . [교육과정과] 동일하며 신설되는 과목은 없음.

2009개정교육과정 초등해설서 언제 나오는지

질의

○ 2009 개정교육과정 초등 부문 해설서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2년에 시험 준비할 예정이라 일찍 공부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9. [교육과정과]

○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해설서는 총론 해설서만 존재하며, 따로 각론(교과)에 따른 해설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출판일

질의

○ 2009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총론 / 기술가정 중 / 기술가정 고) 출판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7. [교육과정과]

○ 요청하신 교육과정 해설서의 경우 다음 과목들이 개발되어 2010년 11월 모든 학교, 대학교 및 시도 관할 도서관 기 보급되었으며, 우리부 홈페이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에 파일이 탑재되어있습니다. 기술/가정 교과를 포함한 교과 교육과정 해설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2종 교과서 검정기준 관련

질의

○ 해방후 교과서 검정이 시작된 이후로 각 교육과정 개정시기별 검정기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가원과 교육부 교과서관련 사이트를 통해 2007개정, 7차교육과정 ,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중·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기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자료는 구할 방법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1. [교육과정과]

○ 검정기준은 https://cutis.mest.go.kr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6차교육과정 이전의 자료는 검정심사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

질의

○ 개정된 교과서를 보니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교과서가 어려우니 사교육을 시켜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보편적인 학교의 정규 수업만으로도 이해되는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

합니다. 또 인성교육 부분도 더욱 강조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7. 1. [교육과정과]

○ 교과서 내용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기준을 기초로 하여 선정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학습과제라도 쉽고 흥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 재구성을 통한 흥미 있는 교수-학습 등 학교 현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현재 우리 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를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설명과 이해 자료 제시와 함께 흥미 있는 학습 내용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좋은 교과서, 창의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종류

질의

○ 내년도 초등학교 영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메뉴에 들어가야 초등학교 개정교육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5. [교육과정과]

○ 2008 초등 영어과 수업시수 확대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영어 3, 4학년 검정교과서는 2010년 7월 30일자 관보게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습니다(검정 합격자 공고). 교육과정 관련 정보는 교과부 홈페이지 좌측 최하단 주요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찾아 가실수 있으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과정 교과서 서비스 홈페이지 http://cutis.mest.go.kr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홈페이지 http://curri.mest.go.kr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 문의

질의

○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현재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각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과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31. [교육과정과]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 -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 -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성 -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 -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공통사회 교과목 자격증 관련

질의

○ 공통사회를 전공한 학생입니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공통사회 교과목이 보이질 않던데 이제는 공통사회는 아예 없어지는 건지요? 교사 선발계획에도 공통사회는 없던데 일반사회나 역사 지리 과목에 지원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 [교육과정과]

○ 6차 교육과정에서의 공통 사회는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로 수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통사회 교원자격을 가진 교사는 고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사회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선정시 [교육과정과] 교과서명이 일치해야하는지

질의

○ 컴퓨터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교과의 경우 인정도서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안에 인정도서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교재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유사한 내용의 교과서는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명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의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4. [교육과정과]

○ 컴퓨터 활용과 같인 인정 도서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부에서는 전문계고 도서를 인정도서화하고, 한 교과에 대해서 학교 환경에 맞는 인정도서가 사용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 도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승인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교과목(교육과정)에 맞는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시도 교육감의 인정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인정도서, 둘째, 시중에 이미 출판되어 있는 도서를 학교장이 인정 도서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인정도서는 위 두 가지 경우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 도서명의 경우 교육과정 명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경우 교사가 교육과정에 맞게 내용 구성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관련 과목의 이수여부를 판단할 때, 교과서명과 이수교과서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과서 저작권 관련 문의

질의

○ 국정 교과서가 아닌 사설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 및 해설 강의를 만들었을 때, 저작권이 침해 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6. [교육과정과]

○ 국정뿐 아니라 즉 검정·인정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사전에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없이 검정·인정 교과서의 내용을 이용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출판사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2608-2036~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채택 및 주문 질의

질의

○ 2011학년도 검정교과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매년 검정교과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2. 전학생이 있을 경우 교과서 지

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7. [교육과정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서 선정과정을 돕고자 「검정교과서 선정매뉴얼」을 개발 및 안내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에 탑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개발하게 되므로 통상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만 선정 합니다. 단, 교과서 사용 중 학교나 출판사의 사정으로 교과서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전학생의 경우에는 사용하던 교과서를 이전 학교에 반납하고, 반납확인증을 받아 전입 학교에 제출하면 교과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CD 파일로 제공 요청 등

질의

○ "e-교과서"는 복제불가능한 CD로만 되어 있고 해당 교과서 홈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중 CD손상이나 오류, 또는 부서질 경우 해당사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더군요. 각종 어학 시험 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에서도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왜 교과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지요? CD가 부서지거나 손상시에 무상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9. [교육과정과]

○ e-교과서는 CD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웹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어 CD로만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25조 1항). 교과서에 '게재'한다는 의미는 '복제'하고 '배포'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교과서 파일을 웹 상에서 전송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CD 파손시 무상교체의 경우, 배송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오나, 사용 중 파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 시정 요청

질의

○ 중국어 1 교재 180과 181페이지에 이런내용에 중국에서는 집안일은 남자여자 나누지 않는

데 한국은 여자들은 항상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차 사회인이 될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준다면 여성들의 집안일은 당연하고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은 계속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서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덜 민주적이다는 느낌까지 드네요. 내년후배들은 이런 내용을 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3. [교육과정과]

○ 성차별적 요소에 대하여 국정도서의 경우 '국정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통하여 성차별이나 인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4차례 이상 심의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어 교과서와 같은 검정교과서의 경우 저작권 및 출판을 개별 출판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검정 기준을 통해 성차별 요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남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문제 역시 편찬상의 유의점이나, 심의위원들의 심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남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옷차림, 놀이기구, 가정에서의 남여 역할 등의 항목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수정 요청시 적극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사 필수 과목 지정 필요

질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09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사가 대체 어떠한 연유로 선택과목이 되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5.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배워야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교육을 의무교육기간과 연계하여 중학교 3학년까지로 마무리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진로,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 이에 따라 국사의 경우 초등, 중학교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필수로 운영되며,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국어, 영어, 수학의 과목들도 선택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

사'도 선택과목으로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1 단계에서 필수로 배우던 '한국사(역사)'는 국가의 정체성 및 민족의식과의 관련등 국사 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명기 하였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고제 제2011-361호 - 2012학년도 입학생 부터 고교 한국사 필수 과목화)

국사과 필수지정 요청

질의

○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사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봐도 이번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국사 공부할 학생 없습니다. 국과와 민족에 폐륜을 저지르지 마시고 국사 필수 꼭 이루어내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0. 8. 24. [교육과정과]

○ '국사' 교육의 경우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필수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선택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국가의 정체성 및 민족의식과의 관련등 국사 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배울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명기 하였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고제 제2011-361호 - 2012학년도 입학생 부터 고교 한국사 필수 과목화)

국사교과서 사진·도표 개인적 사용문의

질의

○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이나 도표를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4. [교육과정과]

○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과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국사)에 실린 사진이나 도표처럼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저작물(사진 또는 도표)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하며 이러한 일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한국복사전송권협회(☎2608-2036~7)"이므로 확인후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국사를 대학입시 필수과목으로 조정해야

질의

○ 국사를 대학입시에서 선택과목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에 올인 하고 있는데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했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과 똑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좀더 쉬운 과목을 선택할 테니까요. 1. 언제부터 국사과목이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되었나요?2.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국가를 필수과목으로 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요? 다른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 역사를 필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고, 중국은 고구려가 자기 역사라고 가르치고 잇는데 대응은 커녕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6.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사'도 선택과목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종전과 다름없이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편성 운영되며, 고등학교에 한해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한국사'를 필수 이수하도록 강조하기 위해 *표시를 하여 모든 학교가 필수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가 포함된 '사회' 교과군의 필수 이수 단위를 종전의 14단위(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5단위로 증가시킴으로써 역사교육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 구입 애로 사항

질의

○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구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부 한정된 서점에서만 팔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다 품절입니다. 국정교과서가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1. [교육과정과]

○ 우리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주문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2011학년도 1학기 국·검정도서 2,869종 총 114백만부를 공급 완료하였으나, 개편된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 외에도 학원종사자, 선행학습자 등의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일시적으로 일반서점이나 직매장에서 교과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일선학교 교과서 담당교사로 하여금 전학생에 대한 추가주문 수요 파악 및 필요시 일정수준의 교과서 여유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한국검정교과서로 하여금 의무교육 대상자인 전학생에 대한 추가 주문수요를 파악하여 조속히 일선 학교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개별 구입자를 위해 일반서점이나 직매장에도 교과서를 조속히 공급하여 일선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덕·사회과목 폐지 반대

질의

○ 부모님은 맡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도 없는데 학교에서마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덕 사회과목을 폐지한다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영어랑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31.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1까지였던 공통 교육과정이 중3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때 공통과목으로 각 교과별로 배우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체육, 음악, 미술이라는 과목명이 없어지는 대신, 선택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한 선택과목으로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도덕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체육 →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이러한 취지와 달리 일부 언론에서 마치 사회, 도덕 교과를 전혀 교육하지 않는 것 같이 기사 제목을 붙여서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과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초·중등학교 교과 내용 개편”('11.1.25일자)을 참고하시면 상세하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자교과서 보급계획

질의

○ 디지털 전자교과서 보급계획에 대해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1. [교육과정과]

○ 디지털교과서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및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4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과와 이과 구분이 사라지는지

질의

○ 문과와 이과가 사라진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5. [교육과정과]

○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인문과정이나 자연과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에 의거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을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중략)~학교는 학생의 진로를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라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인문과정, 사회과정, 자연과정, 외국어과정, 예체능과정, 직업과정 등 학교별로 다양한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 수급, 시설 등 학교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학생의 진로를 돕기 위해 어떠한 과목들을 계열성 있게 이수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가능한 디지털교과서(e-교과서) 요청

질의

○ 얼마전 학교에서 기존의 종이교과서와 함께 CD로 만들어진 e-교과서(디지털교과서)를 받았습니다. e-교과서라고 적혀 있길래 학생들의 스스로학습 즉, 자기주도적학습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줄 알고 집에가서 당장 e-교과서를 펼쳤는데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담았을 뿐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이 없을 뿐더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부연설명과 여러가지 학습자료를 더 첨부한 디지털교과서를 만들어주십시오. 교과서내용을 그대로 옮겨담은 디지털교과서는 필요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3. [교육과정과]

○ 올해부터 보급된 e-교과서는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하기 위해 서책형교과서의 내용을 PDF로 전환하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된 교과서입니다. 향후에는 e-교과서의 내용 및 기능 등이 개선된 형태로 기존 교과내용 외에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 등이 부가된 디지털교과서가 '14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라 학생 필수학습 시간

질의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필수 학습 시간이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육과정과]

○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 < 중등 < 고등학교 순으로수업시수의 차등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전체 수업 시수에서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초, 중, 고 유사하게 시수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 OECD 평균 총 수업시수 합(3,349시간), 우리나라 총 수업시수 합(3,202시간)또한, 외국

의(미국, 영국 등) 초등 저학년의 경우, 보육시간도 수업시수로 포함하고 있어 높게 나타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방과후 수업, 특별보충학습 등은 수업시수에서 제외함

○ OECD 지표의 시수 계산 단위가 외국의 시수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60분을 1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우리나라의 시수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40분), 중등(45분), 고등(50분)을 1시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60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된다면,실제 운영 시수에 비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음악교과서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질의

○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초등 음악 mp3를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 초등임용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는데 공유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판사에 전화해보니까 저작권은 교과부에 있다고 해서요.

회신 회신일 : 2011. 3. 31. [교육과정과]

○ 현재 저작권법 상으로는 음악 mp3 파일을 누구나가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 음악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음악교과서에 실린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해당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노래의 작사, 작곡자에게 있습니다.

재량휴업일 폐지 요청

질의

○ 재량휴업을 하는게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는 거라 하는데 부모가 일을 하는데 아이가 혼자 창의적 체험활동을 다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는 겁니까? 꼭 평일에 해야 합니까? 학교장재량휴업을 폐지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육과정과]

○ 재량수업이란 휴업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량 수업일 20일의 의미는 학교가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일을 의미합니다. 예)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수련회,

학교 특색 행사 등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활동을 위해 학교가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일수입니다. 또한 재량휴업일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자녀의 대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의 토요 교육활동 요구 수요를 고려하여, - 초등 저학년 대상 '토요 돌봄교실'을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하고, - '토요 방과후학교'도 전체 초·중·고에서 운영하겠음 ※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 10개 권역 39개 학교 ⇒ 16개 권역으로 확대 예정 - 또한 학교내 토요 스포츠클럽 강습 및 토요 스포츠리그도 활성화 하겠음 ※ 초·중·고등학교에 '토요 스포츠 강사' 지원 : 300명('11년) ⇒ 2,000명('12년) ⇒ 5,000명('13년)

○ 이와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체험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 교육기부를 통한 기관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인근 대학, 예술단체, 기업 등과 연계) ※ 예술·스포츠 강사 지원(문화부), 보육·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여가부), 지역시설 활용(자차체) 등 유관부처 협조를 통한 지원 강화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감축 우려

질의

○ 주5일제 수업으로 현실적으로 수업 시수의 감축이 없이 시행된다면 평일 학업 부담이 증가하여 학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3. [교육과정과]

○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토요일 수업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토요일 수업을 평일로 옮기더라도 학업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님 ※ 토요 수업시간이 주중으로 이동되는 경우 일평균 0.4시간, 즉 주당 2시간 정도 늘어나는 정도에 그침

○ 아울러, 평일 수업 부담 완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 재량 수업일을 16일에서 20일로 증가 시켰음- 학교장 재량 수업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주당 1~2시간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음

※ 교육과정 운영 수업일수(170일)를 제외한 여유수업일(20일)의 일부(학기당 2~4일)를 전일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주당 수업시수 부담을 1~2시간 정도 감축 가능합니다.

주5일 수업제전면실시 요청

질의

○ 주5일 수업제를 2011년 하반기 부터 바로 도입하지 않고 시범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육과정과]

○ 주5일수업제는 학생 자녀를 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정책이니 만큼 전면 도입에 앞서 최종 점검을 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올 2학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돌봄 교실' 및 '토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지역 사회의 인프라 구축 정도 및 활용의 용이성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토요일 수업이 평일로 옮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및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방학일수 조정, 여유 수업일 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일수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방안 모색 또한 현재 많은 학교가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주중으로 옮겨지면서 평일 교과 수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 토요 전일제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중 편성 방법에 대한 모델 개발 등

주5일수업제 실시 반대

질의

○ 주5일제 수업 반대민원

- 주말에 출근하는 직장인을 고려하지 않는 주5일제 수업을 반대
-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인건비 등의 추가발생으로 인한 세금우려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육과정과]

○ 주5일수업제는 2004년부터 학교 현장에 일부(월1~2회) 적용되어 왔던 제도이며,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는 등 국가사회적인 변화에 의해 이번에 전면자율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육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아울러 모든 초,중,고에 토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며, 또한 전면자율도입이라는 표현은 의무적인 시행이 아닌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가운데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주5일수업제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

질의

○ 주 5일제 수업으로 수업일수가 감축되면 학생들의 학습량도 함께 감소되어 학력 저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3. [교육과정과]

○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토요일 수업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토요일 수업을 평일로 옮기더라도 학업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 토요 수업시간이 주중으로 이동되는 경우 일평균 0.4시간, 즉 주당 2시간 정도 늘어나는 정도 아울러, 평일 수업 부담 완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 재량 수업일을 16일에서 20일로 증가 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학교장 재량 수업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주당 1~2시간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제수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질의

○ 주5일제수업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 등 가정에서 돌볼 시간이 없는 가정들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취지의 시행이긴 하지만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1. [교육과정과]

○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의 토요 교육활동 요구 수요를 고려하여, - 초등 저학년 대상 '토요 돌봄교실'을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하고, - '토요 방과후학교'도 전체 초.중.고에서 운영 ※ 또한 학교내 토요 스포츠클럽 강습 및 토요 스포츠리그도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에 '토요 스포츠 강사' 지원 : 300명('11년) ⇒ 2,000명('12년) ⇒ 5,000명('13년) ○ 이와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체험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

※ 교육기부를 통한 기관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인근 대학, 예술단체, 기업 등과 연계)
※ 예술.스포츠 강사 지원(문화부), 보육.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여가부), 지역시설 활용(자차체) 등 유관부처 협조를 통한 지원 강화

중학교 교과목 관련

질의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과목이 다른가요? 중학교 학생이 배우는 교과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8. [교육과정과]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틀별 활동으로 편성하며,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문의

질의

○ 중2,3은 모두 2007개정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현재 중3의 경우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3. [교육과정과]

○ 중2학년은 2007개정 교육과정, 중3은 7차교육과정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 중2은 2007 개정, 중3은 7차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 오류

질의

○ 현재 중학교 1학년들 국어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서 만들어 주세요! 책은 파본 투성고 띄어쓰기규정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보이며 온점을 찍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9. [교육과정과]

○ 국어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하게 된 원인은, 교과서 개발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교과목별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며,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교과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및 표현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상시 수정·보완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잘못된 내용으로 수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파본 교과서(사용 전)가 있을 경우 (사)한국검정교과서(☎02-2657-3528)에서 무상교환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리과 교육과정에 대한 추가 질문

질의

○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사회'라는 과목명 아래 '지리'나 '일반사회' 영역을 함께 묶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한 명의 교사가 '지리'와 '일반사회'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 각각의 전공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외국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기 조국의 지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7. 27. [교육과정과]

○ 외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사회 교과안에 일반사회, 지리, 역사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라의 특성에 따라 통합형으로 교육을 하거나, 영역별 분리 교육을 하는 나라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학교 수준에서 사회과 통합형 교육을 하는 나라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 사회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의 정체성과 내용이 무시되는 화학적 통합이 아니라 각 영역의 정체성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사회과 의 교육 목표인 '민주 시민 육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원 구성 및 교수?학습의 전개를 위한 것입니다.

○ 지리 교과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사회과목과 통합되어

지도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독립 과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리를 전혀 배우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급에 필요한 수업일수

질의

○ 학교의 수업일수가 205일입니다. 이 경우 학생의 학년 진급에 필요한 최소 수업일수는 몇 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7. [교육과정과]

○ 해당 학년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가 205일이면 137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집중이수제 관련 성적처리

질의

○ 자녀가 중1학년으로 입학하여 집중이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사회를 한계열로 묶어 학교에서 앞반은 1학기에 도덕을 주당 5시간이수, 뒷반은 사회를 집중이수합니다. 1학기에는 앞반이 도덕을 공부하고 평가를 하여 석차를 내면 앞반학생들로만 석차를 내죠! 석차를 낼 때는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나요? 만약 학년말에 앞반과 뒷반 학생들을 섞어 석차를 낸다면 더욱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7. [교육과정과]

○ 집중이수제는 지난 1992년 10월 30일에 개정된 제6차교육과정에서부터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중 중학교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 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와 석차(동석차 수)/재적 수를 산출한다.(다만, 체육, 음악, 미술교과의 과목은 등급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

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목별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에 의하여 산출하며, 재적수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한다. 위의 내용에 의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린다면 '중학교의 성적처리는 학기별로, 재적 수는 동일학기에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 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이수제에 따른 학교에서의 성적처리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중이수제 우려

질의

○ 집중이수제 관련 중학교 음악수업이 이번부터, 1학기에 2학기분까지,일주일에 두번을 수업받는데, 그리고, 2학기엔 미술을. 이런 수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4. [교육과정과]

○ 먼저, 집중이수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중이수제는 지난 1992년 10월 30일에 개정된 제6차교육과정에서부터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는 12과목 내외(교양 선택과목과 특별 활동 제외)로 편성하며, 공통필수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점차 과정별 필수 및 선택과목과 전묵 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 이후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당 이수 과목수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 또한, 2007년 2월 28일에 고시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 최근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집중이수제에 따른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는 약 20년 전인 1992년부터 언급되었던 내용이며 특히 일부과목에서는 교과목의 특성상 끊임없는 요구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예술, 체육교과에서의 집중이수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교과부에서는 예술, 체육교과의 기준수업시수를 준수토록 하였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서 일부과목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중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관련 지침을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교과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단

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규 수업에서 음악 수업을하지 않는 학기에는 방과후 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문제점

질의

○ 집중이수제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체육을 집중이수제에 포함시켜 일학기에는 체육이 일주일에 4번이상 들어있고 이학기때는 아예없는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6. 28. [교육과정과]

○ 집중이수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집중이수제에 따른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는 약 20년 전인 1992년부터 언급되었던 내용이며 특히 일부과목에서는 교과목의 특성상 끊임없는 요구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하고 있기에 염려하신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초등 1학년 한글 수업 관련

질의

○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한글 읽고 쓰기가 없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알림장을 써야하고 얼마 안 있어 (2주 가량) 받아쓰기, 그림 일기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업 내용이 단순히 한글 읽기 정도가 아니라 읽고 느낀 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입학하면 수업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한글 읽고 쓰기가 없는 것은 유아의 발달단계상 글자를 배우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사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한글 읽고 쓰기를 다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인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더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4. 6. [교육과정과]

○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경우, 별도로 자음과 모음을 배우지 않고 곧바로 통글자(예:

나, 너, 우리 등)로 내용이 구성된 이유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글을 깨우치고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배우지 못했거나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사항에서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학부모님이 건의하기 전에 학교차원에서 이러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개설하여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교 혹은 학급차원의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생들에게 나누어주는 e-교과서를 인터넷에서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질의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플래시 형식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 자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왜 CD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e-교과서를 인터넷으로도 접근해서 볼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9. [교육과정과]

○ e-교과서는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 해소를 위해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 보급되었습니다. 저작권법 25조에 의거하여 웹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USB나 외장하드에 저장해서 다닐 경우 아무런 생각 없이 파일을 복사거나 공유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보안이 적용된 CD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향후 e-교과서의 사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 관련

질의

○ 초등학교 1학년은 하루에 몇시간 정도수업을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8. [교육과정과]

○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별로 수업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학년군에서는 총 수업시간수가 1,680시간이며,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연간 총 수업시간은 830시간 정도이며, 34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1학년은 주당 24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검인정교과서 도입 과정과 목적

질의

○ 초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도입 과정과 목적, 법적근거 등 초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도입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9. [교육과정과]

○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29호(2011. 8. 16))에 의거, 국,검인정을 구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도입은 2007 개정교육과정 3, 4학년 영어 과목,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에 대해 검정도서로 전환하였으며 도입 목적은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로 부터 탈피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다양한 해석과, 발행사의 자유경쟁을 통한 질 향상을 추구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채택 방법

질의

○ 2011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대해 시행 교과목 및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9. [교육과정과]

○ 초등학교에 검정교과서가 사용되는 정확한 시기는 2011년 3월부터 3,4학년 영어, 5,6학년 실과, 체육, 음악, 미술 과목입니다. 2012년부터 5,6학년 영어 과목이 적용됩니다. (그외의

과목은 현재 국정입니다.) 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시기는 '10.8.30~'10.10.6 까지이며, 시·도 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단위학교 선정은 학년별 담당교사의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 수준 하향 조정 필요

질의

○ 개정된 교과서를 따라가려면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즉 공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을 익히고 쓰기가 완벽해야만 따라 갈 수 있는 초등1년 국어, 숫자는 물론 기본적인 덧샘, 뺄셈을 익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학시간이라면 초등교과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초등학교1년부터 한글의 기본과 숫자의 기본을 가르쳐야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쏴들지 않아도 되고 그 남은 시간에 아이들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9. [교육과정과]

○ 교육내용 적정화(교육내용량의 축소, 교육내용 난이도 하향 조정)사안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메뉴였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차원에서 교육내용 적정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교과별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연구진들에게 교육내용 적정화에 대한 주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재량 교과목

질의

○ 초등학교 재량 교과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교육과정과]

○ 초등학교 재량 교과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독서교육, 진로교육, 논술(토론)교육, 환경교

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탐구활동, 체험 현장학습(학교 행사 관련), 안전교육, 통일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등을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주5일 수업 실시 요청

질의

○ 학생들이 토요일에 2주 4주만 학교가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직장이 토요일 쉬는데 왜 학교만 쉬지 않은지 그것도 어떤날은 토요일 나가고 어떤날은 안나가고 토요일 프로그램 짜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토요일 쉬는방향으로 가니 초중고생들도 토요일에 모두 휴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1. [교육과정과]

○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격주로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5일수업제의 확대실시에 대한 건의가 있지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해당사자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일반으로 시행 이전에 학생생활지도, 학력 등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과 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인프라 여건,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고려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사정에 의하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나홀로 학생들도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애기되고 있으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제반 여건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도로교통 안전교육 현황

질의

○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여부와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3. 8. [교육과정과]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도로교통안전 의식이 미흡한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부에서도 현행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초·중·고

등학생의 도로교통안전교육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교과로는 초등학교의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고등학교의 『안전과 건강』과목 등에서 '교통질서', '교통규칙, '교통과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교육과 같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학습요소에 대해서는 '범교과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교과를 초월하여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교과학습'의 하위영역으로 '안전 교육'을 설정하였는데, 각 학교에서는 이 '안전 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교에 880시간, 중학교에 306시간, 고등학교 3년간 24단위가 배정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상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학습 등을 통해 교육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소수선택자의 교과목 개설 가능 여부

질의

○ 외고에 근무하는 교육과정 담당 교사입니다. 2011학년도에 2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한국지리/경제/물리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데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 모두 10명입니다. 본교의 학생들이 물리 선택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인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규교과 개설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은 몇명이며 이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며 등급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3. [교육과정과]

○ 제안하신 물리 선택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자세히 파악하여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제 1997-15호)을 적용받으며 선택과목에 대한 개설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 운영' (2) 운영 (카)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서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타)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따라서, 학교의 선택과목 개설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과목이 개설되기 위한 최소 인원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주 5일제 수업을 건의

질의

○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주 5일제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 [교육과정과]

○ 주5일수업제는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 단계적 확대 시행 계획과 병행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원, 생활지도, 학력, 교육과정 등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주5일수업제의 즉각적인 전면 시행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험지의 저작권자

질의

○ 참고서 이벤트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시험지를 무단 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교사가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3. [교육과정과]

○ 학교시험문제 저작권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게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에 있습니다.

학기 중 교과서 구입이 힘들어요

질의

○ 예전에는 국정교과서로 학교입학 및 학년이 바뀌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하거나, 학교매점 및 학교지정 책방에서 구입하였는데 요즘은 학교별, 학년별, 과목별 출판사가 다르고,

출판사 내에서도 저자가 달라 참으로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교재의 분실 등으로 학기 중에는 더더욱 구입이 어렵습니다. 2학기 혹은 내년에는 교과서 구입을 편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10. [교육과정과]

○ 우리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주문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2011학년도 1학기 국·검정도서 2,869종 총 114백만부를 공급 완료하였으나, 개편된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 외에도 학원종사자, 선행학습자 등의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일시적으로 일반서점이나 직매장에서 교과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일선학교 교과서 담당교사로 하여금 전학생에 대한 추가주문 수요 파악 및 필요시 일정수준의 교과서 여유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한국검정교과서로 하여금 의무교육 대상자인 전학생에 대한 추가 주문수요를 파악하여 조속히 일선 학교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개별 구입자를 위해 일반서점이나 직매장에도 교과서를 조속히 공급하여 일선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교과서 사용 가능한지

질의

○ 현재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검정)교과서를 채택하여 수업을 제공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8. [교육과정과]

○ 사설학원에서 교과용도서로 강의하는 것 자체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문의

질의

○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고1 역사가 한국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선택과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고1학생은 학교나 학생이 역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한국사를 안배워도 된다는 것 인가요?

○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때 역사와 공통사회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하지 않나요? 고등학교 2,3학년때 사회는 선택과목으로 배우 잖아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에 모든 사회과목이 선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고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한국사도 포함이 되었던 건가요?

○ 이번에 필수과목으로 되었다는 것은 고1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건지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마다 학년은 다르게 해서 배워도 된다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8.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고등학교 전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운영 하지만 국가정체성 및 민족의식과 관련하여 '한국사' 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사 필수 개설을 독려한 결과 지금 1학년의 경우 모든 고등학교가 100% 한국사를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 입학하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한국사도 선택으로 포함되지만 모든 학교가 한국사를 100% 필수로 개설해 한국사는 필수로 듣게 되었습니다.

○ 4월 22일 한국사 필수화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 발표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한국사를 필수로 이수해야하고 고등학교 3년 중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년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동아시아사 책 문제점

질의

○ 한국에서 집필하는 동아시아사에서 한국 스스로가 한국을 빼고 중국, 일본사로 채우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교육부에서는 이런 한국내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각지에서 동아시아사를 다룰때 중국, 일본 못지 않게 한국사가 다뤄지도록 한국사 관련 책의 영어 번역 및 미국 등 각국에서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6. [교육과정과]

○ 내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경우 한국의 역사가 빠져 있지 않으며, 단원구성은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교류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대별로 중심된 주제에 대해 각국의 교류 및 특성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동아시아사 교재의 한국 내용 강화 사업의 경우 동북아 역사 재단 및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 관련 역사 기관에서 중장기 과제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자 교육 및 한자검정기관현황

질의

○ 2011년~2012년부터 초중고의 한자교육 부활에 대한 사실여부와 교과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검정시험 대행하는 기관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2. [교육과정과]

○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지금도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아침자습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부는 「2009 개정 초등 교육과정('11년부터 초등 2개학년씩 연차적 시행)」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한자교육'을 포함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현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시간을 통합하여 개선한 교육활동 명칭)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한 것이지만 한자교육이 독립된 교과로 신설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자교육 실시여부는 현행 교육과정이든지 2009 개정 초등교육과정이든지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 등 의견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 한문 교과시간에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한문학습을 할 수 있으며 '11년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한자관련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관리자는 (사)한국어문회, (사)한자교육진흥회, (사)한국외국어평가원,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사)한국생활한자문화회,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정보관리협회, (주)와이비엠시사 등이며, 자격 등급은 민간자격관리자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고, 검정료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하되, 국가공인시 검정료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공인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 학 입 시

10년제 초중고 졸업해도 국내 대학 입학 가능 내용에 대한 확인

질의

○ 외국에서 10년제 초중고 졸업해도 국내 대학 입학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5. [대입제도과]

○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자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10학년제인 필리핀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여 대학입학자격이 있다고 사료되나, 2개국 이상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필리핀에서 10학년을 최종 수료(졸업)하였다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2년 미만 학제 국가 출신자의 국내 대학입학

질의

○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자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여주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최종 학교를 수료(졸업)하였다면 학력인정을 어떻게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9. 14. [대입제도과]

○ 12년 미만의 학제 국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였다면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를 기준으로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이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12년 미만의 학제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면 동등학력 인정 가능

② 11학년제 국가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부족한 1년을 보충하여야 하나, 졸업 전 마지막 3년(6학기)을 해당국에서 이수하였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2005년도 수능 성적 확인

질의

○ 05학년에 수능을 보고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 성적을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4. [대입제도과]

○ 수능 성적 확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발급안내를 참고하시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능 성적증명서 및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 발급 안내]온라인 발급

1. 대상 : 1995~2011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2. 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발급 홈페이지(http://csatscorecard.kice.re.kr)를 통해 발급 가능

※ 수험자 본인 공인인증서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발급되지 않습니다.

※ 1994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및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

1. 대상 : 수능 성적증명서, 2007학년도 이후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
2. 방법 : 방문 발급, 팩스 발급, 우편 발급

가. 방문 발급

① 수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소지(※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학교 학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사진 부착되어있는 학생증만 가능)

②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함.-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두 지참(※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나. 팩스 발급

- 아래의【수능성적증명발급신청서(모의평가결과확인서)】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 다운로드한 양식에 발급수수료 입금증과 본인 신분증을 한 장에 복사한 뒤 여백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을 팩스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대학입학년도를 기재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대학교 학생증, 건강보험증 등 中 1개
- 우리원 팩스(02-3704-3700)로 보냅니다. (접수 후 1시간 이내 송부해드립니다.)
  ※ 영문 성적표의 팩스 신청은 가능하나, 팩스로 받으실 수 없고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영문 성적표를 발급 받으실 분은 영문 이름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영문 이름 철자는 여권 철자와 동일해야합니다.)

다. 우편 발급

- 아래의 【수능성적증명발급신청서(모의평가결과확인서)】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 다운로드한 양식에 발급수수료 입금증과 본인 신분증을 한 장에 복사한 뒤 여백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대학입학년도를 기재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학교 학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사진 부착), 건강보험증 등 中 1개
- 우리원으로 보내시면 발급하여 빠른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우리원 주소지 : 서울 중구 정동 15-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증명발급처
  ※ 팩스접수 후 우편발송은 약 3일, 우편신청 후 우편으로 받으시는 것은 약 일주일 예상하시면 됩니다.
  ※ 영문 성적표를 발급 받으실 분은 영문 이름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영문 이름 철자는 여권 철자와 동일해야합니다.)

〈참고 사항〉

1. 약도는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오시는 길을 참고하십시오.

   오시는 길 http://www.kice.re.kr/ko/page.do?contentUrl=/ko/member/sketchMap.jsp
2. 수능 성적증명서 및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는 우리원에서만 발급하므로 방문 발급을 원할 경우 우리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는 영문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4.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는 매년 6월, 9월에 고3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원 모

의평가만 발급 가능합니다.

※ 6월 9월을 제외한 고3 및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합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모의평가 결과확인서는 2007학년도부터 재발급 가능합니다.

6. 오프라인 발급은 월~금까지(공휴일은 발급하지 않음), 발급 시간은 9시~18시까지입니다.

※ 12시~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7. 해외로는 발송이 안 됩니다. (국내발송만 가능)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국내에 계신 분이 받으셔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8. 94학년도 수능 성적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래 전화번호로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문의 : ☎ 02) 3704-3688

2011년 수능난이도 질의

질의

○ 고3수험생을 둔 학부모로서 수능 모의고사 및 수능의 변별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과부의 진학 및 입학사정 대책(계획)이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6. 14. [대입제도과]

○ 우리 부는 점수위주 학생선발을 개선하고 학교교육이 우선되는 대입전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학교 다양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개선과 수준별 시험 및 응시과목 축소 등 2014학년도 수능개편,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수업을 충분히 받고 부족한 부분을 EBS 교재와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 별도 사교육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EBS 방송과 수능시험 간의 연계도 작년과 동일하게 70%를 유지하고, 수능시험 난이도도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수험생이 예측 가능한 일정수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과 9월의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출제기관에서는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의 능력수준을 파악하여 본 수능에서 적정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012년에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영역에 대하여

질의

○ 2012년에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영역/과학탐구영역/직업탐구영역에서 나오는 과목들의 종류들과 과목들의 선택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 [대입제도과]

○ 먼저, 지원자는 사탐, 과탐, 직탐영역 중에서 한 영역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영역별 과목과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탐구영역 관련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총 11과목 중에서 최대 3과목 까지 선택하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과학탐구영역 관련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8과목 중에서 최대 3개 과목 까지 선택하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업탐구영역 관련 : 최대 3과목 까지 선택 가능
   가.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 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에서 최대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나.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에 대한 미등록충원이 가능여부

질의

○ 일부 대학에서 편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사하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미충원 인원에 대하여 충원을 합니다. 아래 방법이 가능한지지 문의 드립니다.

1. 수시1차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예비합격자(순위 포함)를 함께 발표
2. 예비 합격 후보자 중 충원 합격 통보시 등록 의사를 밝힌 자에 대하여 수시모집 합격 및 등록을 허가

회신 회신일 : 2010. 10. 15. [대입제도과]

○ 2012학년도 수시모집부터는 미등록충원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충원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미충원 인원에 대하여 교과부에서 별도 충원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각 대학의 대학입학 시행계획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 수능 개편 관련

질의

○ 2014 수능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교과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4년 수능 개편안은 확정된 사안이며, 더 이상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의 비중을 줄이는 데에 이번 개편의 의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수능의 비중이 줄면, 오히려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 기준을 내세우는 바람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더욱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 혹은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1. 3. 24. [대입제도과]

○ 2014년 수능 개편안은 확정, 공지된 사항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모의고사를 통한 수능체제에 틀이 바뀔 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부는 점수위주 학생선발을 개선하고 학교교육이 우선되는 대입전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학교 다양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개선과 함께 수준별 시험 및 응시과목 축소 등 2014학년도 수능개편,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수업을 충분히 받고 부족한 부분을 EBS 교재와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 별도 사교육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EBS 방송과 수능시험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능 난이도도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리 부는 수능 부담경감이 논술 등의 사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학사정관제 등 선진화된 대입전형과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한 학생선발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수능개편과 변경된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명으로 인한 대학진학시 처리방법

질의

○ 자녀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하여 개명신청하여 놓았습니다. 개명결정은 수능이 끝난 이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수능 발표 후 대학 지원할 때 개명전과 개명 후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에 지원하여야 하고 개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대입제도과]

○ 현재 수능원서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개명 신청을 하여 추후 대학진학시에 개명으로 인한 처리방법과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 대학에 진학하고자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경우 학교측에 추가서류로 개명을 하였다는 증거자료(주민등록초본)를 구비하여 가시면 개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관련 서류에 관하여는 원서접수전에 진학하고자 하는 해당대학에 먼저 문의를 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동등 학력 인정 여부

질의

○ 고등학교에서 고1 1학기까지 공부하고 미국 공립교환학생으로 그해 9월에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고 11학년을 공부했습니다. 교환학생은 1년만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마치고 11학년을 다시 할 수 밖에 없었고, 11학년 12학년을 이수하여 작년 6월에 졸업하여 올해 한국에서 수능 준비 중인데, 한 학기가 부족으로 학력이 인정돼서 수능을 볼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6. [대입제도과]

○ 우리나라에서 고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공립학교 교환학생으로 11학년을 이수하였으며, 미국 사립학교에서 다시 11학년 , 12학년 2년을 이수한 자녀의 수능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 수능시험 응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가 응시가능하며, 외국고교에서 수학한 학생의 고교 동등학력 인정여부는 세부적인 사항을 서류로 확인하여야 가능하나, 귀

하께서 민원에서 언급한 학력관련 사항이 정확하다고 전제할 때, "학제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전 편입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12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함"을 고려할 때 수능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자녀가 원서를 접수하게 될 주소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가 운영하는 학습도우미 사이트 목록 공개 요청

질의

○ 현재 교과부가 운영중으로, 학생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의 전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2. [대입제도과]

○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 관리시스템 '에듀팟'(www.edupot.go.kr)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안과 밖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자녀교육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에 기록된 개별 학생의 포토폴리오들은 대입 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수능원서 접수 제한

질의

○ 수능 접수는 기본적으로 재학 중인 고등학교나 졸업생인 경우 출신 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나 졸업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시험지구가 변경된 경우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거나 거주지랑 먼 곳에 있는 고시원이나 기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했던 환경에서 시험치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7. [대입제도과]

○ 수능원서는 출신고교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응시, 원서 변조, 위조 등 부정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여부를 대조해야 하고 원서접수 시 성적 확인,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는 사항과 응시원서에 기재 시 영역별 선택 등 여러 가지 학적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출신고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지원자의 편의 도모 및 시·도교육청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졸업생 중 주소지가 변경된 자는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자퇴 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별전형

질의

○ 2010년 9월경 서울소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에 자퇴를 한 후 말레지아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현지 고등학교에 입학 하였습니다. 향후 현지 말레지아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국내 대학으로 입학 전형을 거치고자 할 때 입학전형시 방법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3. [대입제도과]

○ 우리나라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같이 수능시험 등을 거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나, 학생부 성적을 산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사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을 진학 할 수 있는데, 통상 외국에 소재한 중등학교에서 2-3년을 재학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영주권자 교포 자녀, 해외근무자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등 대학마다 다름)이 되어야 하며, 외국소재 중등학교의 재학기간, 부모의 거주 및 체류 여부 등을 따지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사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대해

질의

○ 국가영어능력시험이 2016년부터 수능외국어영역을 대체한다고 되어 있고, 2013년부터 대

입 수시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6. [대입제도과]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016학년도 수능 대체 관련하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대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동 시험의 공신력 인정 정도, 의견수렴 결과, 학교에서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며,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침은 금년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 교과부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을 통해 학교 영어교육을 변화시키고 시험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연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외거류자 특례입학 관련 문의

질의

○ 5년 이상 중국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4년전부터 한국국제학교 고3에 재학중입니다.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자를 모로 했으며 계속해서 아버지인 제가 부양해 왔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아들의 거류증은 취업자 가족으로 해서 발급받아 왔습니다.

○ 그런데 친권자가 부가 아니라 모라는 이유로 아들의 특례입학 자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비며 생활을 부양했고 거류비자도 취업자가족으로 계속해서 발급받아왔기에 특례입학자격이 될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5. [대입제도과]

○ 대학입학 전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의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학한 경우 대입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별전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과정(12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집 가능하며, 그 밖의 재외국민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학정원 2%이내에서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특례입학의 경우 전형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보호자 인정기준, 보호자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개별대학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인정 여부, 학생 및 보호자의 체

류 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재외국민"으로 검색하시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대입상담 콜센터(1600-1615)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복무중 대학 입학 가능여부

질의

○ 군 복무 중에 수능을 시험봐서, 대학에 입학만 하고 등록금만 내고 휴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대입제도과]

○ 군복무중 수능시험을 치는 것은 휴가가 허락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의 경우 군복무자에게 입학자격을 주는지는 해당대학의 학칙, 입학요강, 해당대학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상 따로 정하는 바는 없음)

○ 이때 가능하다 하더라도 입학과 동시에 군휴학이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자동 휴학신청이 되기는 어려움)에 관하여 또한 학교에 사전에 문의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인에게 학생 등 다른 신분을 허용하는지는 관련 군법, 복무규정 등에 따라 가능한지,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국방부나, 부대내에 따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리더 전형기준에 관한 민원

질의

○ 이번 대학 수시전형에서 글로벌리더 전형기준이 특정학교 이수자 아니면 지원을 못하도록 설정한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형기준이 외국어 교과 36단위로 이상으로 제한을 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는 가능하지만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정규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은 단위수가 1~2단위 부족하여 신청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공인인증 어학성적 2가지 이상이 있으면 가능하다

고 하였으나 1가지 정도는 외국어에 취미가 있어 혹시 모르지만 이 또한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입시는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였다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5. [대입제도과]

○ 현재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방법, 일정, 전형요소 등을 대학의 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간 협의를 통해 공포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 개별대학의 전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드릴 수는 없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균등모집전형

질의

○ 대학마다 정시 또는 수시모집에 기회균등모집전형에 대한 문의

- 각 대학에서 차상위계층을 미포함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6. 17. [대입제도과]

○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지원자격, 입학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8년부터 대입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었으며, 대입전형에 대한 각 대학의 학생선발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간 조정 및 협의를 통해 확정·공포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는 대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과부에서 향후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 문의

질의

○ 농어촌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 건너편의 고등학교만 농어촌 전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체 이 경계가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2. 14. [대입제도과]

○ 현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4호 가목에 의거하여 정원외로 선발을 하고 있으면 법령상 대상학생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활력지역'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개별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농어촌특별전형관련

질의

○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지역에서 농사 및 어촌계의 직접 농업경영과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전형이라 알고 있습니다. 농어도시지역이 형성된 신도심지역에서도 농어촌특별전형혜택을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5. [대입제도과]

○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특별전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에서 정원외로 학생을 선발 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모의 거주지 등 지원자격 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사례가 편법 등이 허용되지 않도록 농어촌 전반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농어촌특별전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전형제도

질의

○ 부산에서 2008년 1월 8일에 이사 전입 신고했고 3월 3일에 전학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식만 부산에서 3월 2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마다 전화를 해봤는데 재학중학교가 두 곳이고 그중한곳이 입학식만한 부산학교라 안된다고 합니다.

○ 이사도 미리 했고 수업일수도 다 채웠는데 도시학교에서 입학식 하루했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용혜택을 못 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0. [대입제도과]

○ 대학의 학생선발은「고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개별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초중등 전과정 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 과정을 농어촌지역에서 이수하였거나, 부모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전 과정을 농어촌지역고등학교에서 이수하도록 지원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개별대학의 대입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소관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별대학은 확정·공포된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라 대입전형을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입전형료 환불 관련

질의

○ 학교에 전화를 하여 논술고사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을 상담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또한 수능을 보지를 않고 4만 여 원을 낸 경우 환불을 받지를 못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환불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대입제도과]

○ 우리 부는 대입자율화 정책을 통해 각 대학이 추구하는 학생상,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성적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선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입시에서 어떤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전형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형료와 관련하여서는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입전형료가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전형료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201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불대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환불가능기간 또한 일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임을 밝혔습니다.

○ 이는 최근 대학입시의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매일 공시되고, 이러한 경쟁률은 수험생이 당해 모집단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즉 한 수험생의 지원은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 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허수지원 등으로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환불은 곧 지원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수험생의 지원 여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는 물론 대학의 입시업무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많은 대학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모집요강 등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시 면접 일정 중복 조정 요청

질의

○ 매년 수시 입시철이 되면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면접을 치르려고 두 대학 사이를 오가는 수험생들의 위험천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대학들이 서로 같은 날짜에 면접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 대학들이 수험생에게 면접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든지, 토・일요일에 몰려있는 면접일정을 평일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원하는 학교에 모두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대입제도과]

○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전형 일정이나 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이고, 대학마다 모집횟수, 모집시기, 전형방법 등이 달라 면접일정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각 대학이 원서접수 시 면접이나 논술 등의 일정(날짜 및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여 동일일 중복지원에 따른 문제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수시접수 환불건에 대하여

질의

○ 접수하다보면 실수로 접수하여 환불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은 안 된다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 매년 뉴스나 기사에 올려지기도 하기에 시정이 될지 알았는데 전혀 시정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14. [대입제도과]

○ 우리 부는 대입자율화 정책을 통해 각 대학이 추구하는 학생상,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성적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선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입시에서 어떤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전형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형료와 관련하여서는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입전형료가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전형료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201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

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불대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환불가능기간 또한 일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임을 밝혔습니다.

○ 이는 최근 대학입시의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매일 공시되고, 이러한 경쟁률은 수험생이 당해 모집단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즉 한 수험생의 지원은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 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허수지원 등으로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환불은 곧 지원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수험생의 지원 여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는 물론 대학의 입시업무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많은 대학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모집요강 등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국사 교육

질의

○ 수능시험에 국사시험을 필수로 하거나 국사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능시험을 개편하여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3. [대입제도과]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해 수험생은 시험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필수과목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으며, 학생의 능력, 진로, 흥미 그리고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기준 등을 참고해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사 과목 응시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는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수능에서 차지하는 국사의 비중 확대,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국사 필수 반영, 자격시험제 도입을 통해 수능에서 국사 제외 등은 현 단계에서는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대학 신입학 지원자격 문의

질의

○ 예술고등학교 2학년 재학 후 영재로 특기가 인정되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사과정에 진학하여 2학년을 수료한 학생이 「고등교육법」제33조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 대학 신입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7. [대입제도과]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개요

가. 설립근거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나. 예술사과정(학사과정 입학자격)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다. 「고등교육법」상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격 : 「고등교육법」제59조의 각종학교

○ 검토의견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제 59조의 각종학교로 지정되어 동법 제35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대학이므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없더라도 한국예술학교 2년과정을 수료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학 신입학 지원 가능

가. (입학자격) 「고등교육법」제33조(입학자격)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나. (전문대학 학력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와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대학 입학원서비 환불

질의

○ 대학교 원서를 접수하면서 원서비를(신용카드로) 냈습니다. 이 원서비를 환급 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7. [대입제도과]

○ 대입편입학 및 대학 입시 지원시 전형료 책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원취소 및 문의사항은 해당 학교 입시상담센터 등으로 연락하시어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특례입학시 인정되는 학교

질의

○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이가 현재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다른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려 하는데 그 학교 규모가 작습니다. 한국에서 특례입학시 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 따라 특례입학 자격이 없을 수 도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3. [대입제도과]

○ 대학입학 전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의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학한 경우 대입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별전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교육과정(12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집 가능하며, 그 밖의 재외국민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학정원 2%이내에서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특례입학의 경우 전형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개별대학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인정 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 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입 특례자격과 학력인정은

1. 학교 규모에 따라 대입 특례 자격은 차이가 없습니다. 대입 특례 입학을 위한 학교는 학력인정 여부에 따라 대입 지원자격이 부여되고 대학별 지원자격이 달라지는데. 보통 학교규모가 아니라 학생의 재학기간과 부모의 해외 근무기간을 지원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규모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중국 교육부에서 학력인정 받는 학교로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과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재외국민"으로 검색하시면, 재외

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대입상담콜센터(1600-1615)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목록 관련

질의

○ 이번에 대학입시를 하는 자녀가 있어서 충북, 충남, 대전지역의 대학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국공립, 사립 구분되어있으면 합니다. 4년제, 2년제 모두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대입제도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 대학입학상담센터→ 입학관련자료실에 "2011학년도 대학별 정시모집요강 모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상담(1600-161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 추가모집에 관해서

질의

○ 과마다 1~2명씩 뽑으면서 원서비만 받는 추가모집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정시모집 기간에 넣어서 예비를 받은 학생들도 다 돈을 내고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빠져나간 만큼의 추가합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3. 4. [대입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2조), 그 전형일정은 대학, 시, 도교육청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18개월 전에 공표하고 대학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제 41조).

○ 이중 정시모집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군별로 지원한 후 정시등록기간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최종 선택(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정시등록 이후에는 선택등록에 따라 대규모의 미등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미등록 충원기간을 두어 결원을 보충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일정한 시기에 신입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학의 학사운영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모집이 특정 기간('11. 2.23-2.28)에 동시에 실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부대학에서 예비합격자가 있음에도 추가모집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2월 21일 미등록충원을 완료하였으나 2월 22일 등록한 합격자 일부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대학에서는 추가모집을 통해 학생을 충원하여야 하며, 추가모집일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학들이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시키게 되면 대입전형에 큰 혼란을 발생하게 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에 나이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검정고시)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대입제도과]

○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대학시험수수료 문제점

질의

○ 자녀가 대학 음악 보컬 시험을 보았는데 입학시험수수료만 해도 100만원 이상 되어서 대학들의 입학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예상되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 [대입제도과]

○ 대입 전형료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전형료는 대학이 어떤 방식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유형의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이 다르고 면접, 논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유무나 실시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기본적으로 책정은 대학입학전형방법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수시접수 수수료

질의

○ 일부 대학들이 수시접수를 통해서 한해에 건물 하나를 짓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수시접수가 사업이 되고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대학이 학생과 사회에 적정하게 이득을 환원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8. [대입제도과]

○ 전형료는 대학이 어떤 방식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유형의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전형료가 다르며, 면접, 논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유무나 실시방법에 따라 전형료 차이가 납니다.

○ 기본적으로 전형료 책정은 대학입학전형방법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대입전형료가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전형료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특수교육자전형에 관하여

질의

○ 대학입시(수시, 정시, 약대입시)중 특수교육자전형에서 부조리한 점이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를 드립니다. 특수교육자전형에서 대학마다 지원자격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중 1-3급만 지원가능한곳도 있고 1-6급만 지원가능한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수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왜냐하면 경증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이 더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수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종류에 따라 지원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자전형같은 장애종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8. [대입제도과]

○ 각 대학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장애인 등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부여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제34조), 장애인 등의 정원 외 선발의 경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원 외 특별전형에 지원이 가능한 장애유형에 관한 사항 등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관련 특례입학 자격요건

질의

○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개요 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0. [대입제도과]

○ 기본 학력요건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12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학교에 재학하여야 하며, 특례입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개별대학 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인정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먼저 문의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요강 확인 방법

질의

○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입학시험시에 국가유공자 손자녀로(대개 본인과 자녀로 한정됨)

해택을 주는 대학이 있으면 어느 어느 대학인지 알고 싶어요.

회신 회신일 : 2010. 8. 31. [대입제도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4년제 대학의 대학입학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발표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를(http://univ.kcue.or.kr) 방문하시어 대학별 입학정보 - 특별전형에서 전형유형(대) 등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대학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학입시전형료 환불건

질의

○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싼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응시료를 낸 후에 전형설명이 복잡하여 착오로 인해 시험 대상이 안 될 경우는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3. [대입제도과]

○ 대학의 입학전형방법 및 이에 따른 전형료 책정과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대입전형료가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전형료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월,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가능기간을 두어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학재외특례입학

질의

○ 대학재외특례입학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합법적인 유학일 경우 특례입학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몇 년이며, 어느 대학이 있는지 리스트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9. [대입제도과]

○ 현재 대학에서는 부모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재학한 경우 대학 입학시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시 재학기간 및 요건 등이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학교의 소재지는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학기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을 재학한 경우는 2년을 재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 따라 재학기간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2년 이상을 포함한, 3년 이상으로 , 또는 재학기간을 4년으로, 부모의 재직 및 동반여부를 2년, 1년6개월 또는 전 수학기간으로 정하는 등 각 대학에 따라 지원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코자하는 대학에 지원자격등을 문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편입관련

질의

○ 전문대 수시 합격후 타대학 편입 합격시 절차관련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8. 24. [대입제도과]

○ 전문대학 등록 후 타 대학 편입학 합격 시 전문대학 입학 포기 의사를 학교측에 전달하여 등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금의 반환은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학기개시전 등록포기 및 자퇴 :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다음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5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2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또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 추가)에 지원이 금지되

지만, 민원인의 경우 일반적인 편입학지원일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대학 입학 포기여부는 민원인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조기졸업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질의

○ 과학고 2학년생이 대입 원서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과학고 2년생은 고졸예정자 자격을 주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대입제도과]

○ 조기진학관련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년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색맹(색약, 색각이상)의 경우 대학교진학 제한범위

질의

○ 자녀가 색맹(색약, 색각)이라는 검진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색맹의 경우 연구분야, 이과분야, 의예과 등에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학진학시와 이후 사회생활하는데 법적으로 색맹(색약, 색각이상)으로 인한 직업제한이나 대학진학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며 그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3. [대입제도과]

○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색각이상자를 차별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전혀 없으며, 의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진학과정에서 색각이상자의 진학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졸업 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대, 공군사관학교, 항공대 항공운학과 등 일부대학에서는 색각이상자의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색각이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과계열을 진학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능 당일 아날로그 시계 반입 가능 여부

질의

○ 수능일 주의사항이 발표되었는데 "손목시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없는 시계"로 되어있는데, 아나로그 시계의 경우, 시침, 분침, 초침과 여기에 날짜(보통은 3시 숫자 옆에)를 나타내는 시계도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5. [대입제도과]

○ 수능시 휴대가능 시계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이며, 여기서 '시각'이라 함은 "몇년 몇월 몇일 몇시 몇분 몇초"를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종류의 시계는 휴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능 원서 사진 질문

질의

○ 수능 원서 사진에 짙은 색 안경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안경이 검은 태인데 안경을 벗고 찍어야 하나요? 군복입고 찍으면 안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6. [대입제도과]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아래와 같이 제한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으로 얼굴 길이는 2.5cm~3.5cm * 짙은색 안경과 모자 등 착용금지 및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 디지털 사진

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옷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안경 관련하여서는 짙은 색이 들어간 안경렌즈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능 응시에 관해

질의

○ 수능 응시원서 접수 후에 응시하려는 영역이나 선택과목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7. [대입제도과]

○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 받은 후에도 9월 6일(화)~9월 8일(목)까지 3일 동안 은원서 내용 변경 또는 취소 등이 가능합니다. 단, 상기 기간 이후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 변경, 취소 등이 불가능하므로 원서내용은 신중하게 결정하신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감독관의 철저한 교육 요청

질의

○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것만이 시험감독자의 책무는 아닙니다. 수험생들이 갈고 닦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책무입니다. 시험감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례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9. [대입제도과]

○ 우리 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수능시험 시행 후 시험장 관리 및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불편 주는 사례를 모아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감독관 교육자료인 '감독관 유의사항'통해서도 관련내용들을 사례로 제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하고 있습니다.

수능과 EBS교재 연계 출제

질의

○ 수능시험과 EBS방송 교재와의 연계율을 높이고, 많은 출제를 한다면 문제은행식 출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3. 3. [대입제도과]

○ ebs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출제하고 매년 연계교재를 새롭게 편찬하기 때문에 문제은행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부는 수능에서 줄어든 사교육이 논술 등의 사교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입학사정관제 등 선진화된 대입전형과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한 학생선발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능모의평가 응시장소관련

질의

○ 수능 평가원 모의평가 접수 및 응시시 사설 학원 또는 모교에 응시해야 합니다. 접수는 교육청 또는 가까운 지역학교에서 응시 가능하도록 지정 요망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 [대입제도과]

○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경우도 출신고등학교 또는 학원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능 모의평가는 별도의 시험장 학교('11학년도 수능 기준 1,206개)를 운영하는 본 수능과 달리 고등학교에서 1, 2학년의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3학년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졸업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졸업생 등에 대해 주소지나 거주지와 가까우며 수험생이 원하는 학교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출신교 응시를 원칙으로 하여 수험생을 분산 배치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방법

질의

○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학입학하면 마음대로 입학취소 같은 것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3. [대입제도과]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입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시험시간 도중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들로서 수능시험 무효는 물론 1년간 자격정지 등의 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34조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등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시험 응시자격 관련

질의

○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이 수능시험을 볼 수 있나요? 혹시 고3 선생님도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을 막기 위해서 입시학원 강사는 못 보도록 막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9. 16. [대입제도과]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따라서 위 자격에 충족될 경우 직업 등의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능시험 추가접수 요청

질의

○ 수능원서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접수를 받아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3. [대입제도과]

○ 201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 25일(수)~9월 9일(목)까지로 이 기간 동안 접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추가접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응시자에 대한 동일한 조건입니다.

수능시험때 장애인 배려

질의

○ 시험 볼 때 장애인에 대한 방침이 있는지요?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7. [대입제도과]

○ 시각 장애인은 맹인과 저 시력자로 나누어 시험 관리를 합니다. 맹인인 경우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녹음테이프-1,3,4교시)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7배로 하여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하며 시험실당3명의 시험 감동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 시력자인 경우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 중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종합병원장이 저 시력자로 판정한 자로서,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확대 독서기(개인용 확대 독서기 포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제작된 3가지 유형9일반 문제지보다 118%, 200%, 350% 확대된)의 문제지중 하나가 제공되고 있으며,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수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로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 답안지(B4 용지 크기)도 제공하고 있으며, OMR답안지이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기요원이 OMR답안지에 이기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장 귀마개 허용여부

질의

○ 수능시험장에 휴대가능물품을 알고 싶어서요. 귀마개 소지 허용여부에 관한 건데 작년에도 감독관 재량에 맡기더니 올해도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도 없고 휴대가능 물품 목록에도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5. [대입제도과]

○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입니다.

○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며, 귀마개 또한 감독관의 재량에 맡겨진 물품으로 착용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점검과 허가를 받아 착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마개의 경우 부정행위에 활용될 우려로 감독관의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휴대가능물품에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원서 교육청 접수 관련

질의

○ 예전에 수능접수를 교육청에서 하는 걸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4. [대입제도과]

○ 매년 전국 1,200여개 시험장에서 68만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규모로 응시하고 수능시험의 결과가 대학진학을 위한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수능시험을 시행,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응시편의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원서접수 방식을 변경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점을 알려드립니다. 수능 응시원서를 출신교와 주소지를 기준을 접수하는 원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소간 불편함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리응시를 통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의 철저, 출신교에서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점검으로 원서기재 오류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 예방, 수능시험 응시자격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정, 전국단위 대규모 수험생의 응시에 따른 안정적인 수험 여건의 조성 등 수능 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십시오.

○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 등에 파견 원서접수처를 운영하여 지방에서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수도권에서도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수능은 등급제 관련

질의

○ 수능이 등급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절대 점수는 상관없고 같은 등급 내에서는 같은 평가를 받나요? 예를 들어 80점~100점이 1등급이라면 81점을 받으나 100점을 받으나 같은 점수를 받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6. [대입제도과]

○ 등급이란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수험생이 속해 잇는 해당 등급을 표시합니다. 영역/과목별 전체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그 다음 7%까지를 2등급 등으로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 등급은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로 결정하며, 등급 구분 점수에 놓여 잇는 동점자에게는 해

당되는 등급 중 상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또한 같은 등급에 분류되어있을시 동일한 점수를 부여 받습니다.

수능일에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질의

○ 수능일에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어찌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대입제도과]

○ 수능당일 지정된 시험장에서 필히 응시하시어야 하며, 수험표 분실 시 지정된 시험장에 설치되어져 있는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시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수지하시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 당일 8시까지 방문하시오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수험생이 시험장에 도착한 후 수험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우선 사진이 없는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하신 후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의 경우 학교 등에 연락하여 사진이 부착된 관련자료(생활기록부 등)를 팩스로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생 및 기타 학력 소지가의 경우 추후에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가능합니다.

수시 대학별 논술고사 중복의 문제점

질의

○ 수시 1차에서 원하는 대학을 알아봤는데 일정이 겹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대학별로 논술고사 겹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지요? 원서를 쓰기 전에 대학별 고사 시간을 확정을 지어주던가 그렇지 못한 대학은 일단 원서신청을 받고 나중에 시험을 못 보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5. [대입제도과]

○ 수시모집은 대학의 학과 및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우수하고 재능있는 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전형방법 및 자격요건, 선발인원 등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우리부에서 각 대학에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입편입학 및 대학 입시 지원시 전형료 책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나, 우리부에서는 전형료 책정시 최소 실비만을 책정하여 운영하되 전년도 지원률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추후 대입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시접수 취소 요청

질의

○ 이번 대입수시에 지원했는데 서울캠퍼스인줄 알고 신청했는데 충주캠퍼스여서 학교에 취소해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니 수시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수능으로 학교를 가려고 해도갈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4. [대입제도과]

○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정 공표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대학은 대입전형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이를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요강에서 제출된 서류의 반환 및 취소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학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사전예고된 사항을 지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는 바, 상황은 안타까우나 대학원서 제출 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험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대입전형료 환불 금지 불만

질의

○ 올해초 대입전형료환불관련 기준을 공정위에서 약관법에 의거하여 무조건적인 환불금지 조항을 삭제 조치토록 했지만 정작 수험생의 개인사정은 왜 환불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할

부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도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인정해주는데 왜 대입전형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1. 2. [대입제도과]

○ 201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불대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환불가능기간 또한 일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임을 밝혔습니다.

○ 이는 최근 대학입시의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매일 공시되고, 이러한 경쟁률은 수험생이 당해 모집단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즉 한 수험생의 지원은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 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요청하여 주신 환불은 곧 대학입학 지원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수험생의 지원 여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는 물론 대학의 입시업무, 입시 질서 등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특례적용기준 관련

질의

○ 중국에 주재원으로 거류증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아이가 국내대학 특례(3년)입학대상이 되려면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해외에서 아이와 얼마(기간)나 동거해야 하나요? 아이는 얼마(기간)나 외국에 있어야 하나요? 중간중간 한국에 들어와도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3. [대입제도과]

○ 대학 재외국민 특례입학의 지원자격은 일반적으로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각 대학별로 고등

학교 과정 교육기간을 2년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대학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에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0년 공무원 및 상사직원의 자녀 등 해외 근무자의 자녀를 모집하는 대학은 총 133개교(국공립25개교, 사립108교)이며, 모집대학 중 건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보호자의 근무기간 및 학생의 재학기간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대학들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많은 대학들이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을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자의 거주기간 1/2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특례입학의 경우 해당학생의 회외 체류 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모두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인정 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 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먼저 문의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을 사료됩니다.

연예인 특례 입학

질의

○ 좋은 대학 가려고 하루에 5시간씩 학원가고 시험기간 때는 잠도 못자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란 이유로 내신, 수능성적 모자라는 사람들이 특례입학의 자격이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6. [대입제도과]

○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과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특별전형으로 구분 되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은 자율적으로 대학의 교육목적 및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따라 전형유형과 지원자격과 그에 따른 전형요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예인을 특채로 선발하는 전형은 없으며, 특별전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에 문학, 발명, 리더십, 봉사, 연예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한 자로 지원자격을 두고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학생선발은 보편적인 학업성적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법 보다는 다양한 특기와 적성 및 잠재력 등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노력까지도 같이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입니다. 선발방법에서도 학생부 교과성적, 서류, 실기, 면접 등의 전형요소와 비율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일정수준의 학업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분야에 자질이 있거나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불합격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또한 특기와 관계없는 전공진학에 대한 부분은 특별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6393-5200〉〉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의 국내 고등학교 학력 인정 여부

질의

○ 아이가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1년간 해외연수를 갈 때 저를 따라 호주 시드니에 갔다 혼자 남아 그곳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라고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7. [대입제도과]

○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의 12년 학제와 같이 12년의 초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호주의 고등학교가 3년제라면 귀하의 자녀는 한국에서의 수학기간 9년과 호주의 고등학교 3년을 합해 12년을 수료했다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대입

질의

○ 아이는 8학년인데 한국의 외국인학교에 다닙니다. 수능을 봐야하는지요? 한국내 외국인학교의 한국인 국적의 학생들의 입학이 지적을 받아서 이제는 입학이 어려울 것이라데 사실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5. [대입제도과]

○ 아이가 8학년이라면 중학교 과정으로 보이며, 한국어와 사회교과 102시간 이상 이수한다면, 국내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교육과정을 학교측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하며 현재 신청 중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올 9월에 개교되는 달튼외국인학교 및 국내 학력 인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국내 대학에 진학시 국내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능시험을 보아야하며 수시나 정시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진학하려는 해당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이스트는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을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자의로 해석해 부당하게(한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학생) 자격을 부여한 경우로 국내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내국인학생과는 관련이 없는 모집전형이며,

1.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증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 학교이거나
2. 국어 및 사회(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교과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이 아닌 경우 국내대학 입학을 위해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하여 국내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진학하려는 대학의 특별전형 및 모집요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학생 대학입학관련

질의

○ 학생과 부모의 국적은 캄보디아구요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곳의 고등학교 이수자에 한해 어떤 방식의 전형이 있는지요? 외국인에 대해 특별전형은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11. 18. [대입제도과]

○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의거하여 정원외로 외국인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특별전형의 실시여부는 개별대학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외국인 특별전형을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1.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는 정원외 한도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2. '12년 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외국인'의 경우도 정원외 한도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3. '그외 외국인' 1,2의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이 지원가능하며 정원외 2%이내에서 선발이 가능합니다. 대학의 학생선발을 위한 전형요소 및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 확인을 하셔야 하나,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홈페이지(http://www.kcue.or.kr)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실 것이며,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부, 대교협에서 대입상담콜센터(1600-1615)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대입상담콜센터가 한국의 대입전형 시기('11년 12월~'12년 2월)를 피하여 상담을 하신다면 상담을 더욱 원활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학생 국내대학 진학에 관하여

질의

○ 아이가 현재 한국기준 중1학년인데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 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습니다. 중 3년, 고 2학년(10학기)까지 마치고, 한국기준 고3학년때 한국에 온다면 대학 입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수능에서 고교내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외국학교에서 공부한 성적(또는 영어성적 만으로) 으로 가능한건가요? 고 1,2학년 성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장기간 공부하면 고교내신이나 수능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1. [대입제도과]

○ 일단 귀하의 자녀가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인정 유학인지 미인정 유학인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의 경우는 각 시도교육청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편입할 수 있으며, 불인정유학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9조, 29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귀국자편입학처리규정으로 처리합니다.

○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하고 유학시절 학적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어'만으로 갈 수 있거나 수능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등은 대학의 자율적인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목표하신 대학의 전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자의 대학 입학 조건

질의

○ 저의 손자가 캐나다에서 태어나 현재 국적은 캐나다와 한국 이중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의 대학 입학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대입제도과]

○ 이중국적자의 대학 입학 조건은 고등교육법 33조 입학자격에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외에서 12년의 과정을 이수하였다면 국적에 관계없이 수학능력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동 시행령 29조에 의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각 대학의 특례입학 적용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대학의 특례입학 요강은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오니 원하시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제로 바뀐다니 더욱더 답답해지는 이유

질의

○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경시 또는 학교내에서 추천을 받는 것만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또한 많이 어렵고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생활기록부에 아이, 학부모,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1. [대입제도과]

○ 우리부에서는 기존의 점수 1~2점에 등락이 좌우되는 대입전형이 아닌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학사정관전형이 짧은 시간에 많은 대학에 도입되어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부에서는 에듀팟 운영,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교교사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학교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안정적인 대입제도 운영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입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는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있습니다.

○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역량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꾸준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의미 있는 봉사·체험활동 및 다양한 독서활동을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입입학사정관분들이 학생이 제출한 학습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재외국민인 미성년자가 수능을 칠 수 없습니까?

질의

○ 집안 사정 때문에 캐나다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2학년에 전학 수속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재외국민이라서 수능을 못 볼까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5. [대입제도과]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캐나다의 학력인정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과 한국에서의 수학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이 없이 12학년을 수료(졸업)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야간학과 모집 문의

질의

○ 2011년 지금 전국에 있는 야간학과를 운영하고 모집하는 4년제 정규대학들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14. [대입제도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대학별 입학정보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 대학별 입학정보 → 일반전형 → 모집년도, 대학명, 모집시기, 모집단위(야간)으로 선택 검색)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특별전형 관련

질의

○ 정부에서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들에게는 대학 진학의 꿈을 실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재직자 전형에서 조차 특성화고교 졸업자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 일반계 고교를 진학 했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현업에 종사하며 대학진학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간대학에서가 어렵다면 적어도 야간대학에서라도, 일반(입문)계 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이 어렵다면 재직자 특별전형에서 라도, 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2. 17. [대입제도과]

○ 일반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정원외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의 경우, 특성화고교와 대학 모집단위간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진학을 목표로 3년을 준비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고 그 후에 필요에 의해서 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고교 졸업 후 산업체에 3년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정원외로 특성화고교 졸업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원내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한 특별전형은 개별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정원외 전형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관련

질의

○ 대입전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지

원자격 관련대교협 자료를 검색하다보니 부산 모 대학의 자료에서 예술고, 체육고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포함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지원자격을 대학자율로 확대하여 예술고 또는 체육고 졸업생도 지원 또는 모집할 수는 없는 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3. [대입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은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고, 많은 특성화고교 졸업학생들이 이에 근거한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계 전형의 자격 기준을 당해대학의 장이 특성화고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동일계열의 범위는 출신고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학의 모집단위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을 확인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제2외국어 선택과목 신설

질의

○ 영어, 중국어, 일본어과 뿐만 아니라 베트남어도 제2외국어 교과군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제2외국어영역에 “베트남어”를 치를 수 있도록 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31. [대입제도과]

○ 수능시험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영역 및 과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교과군에 베트남어가 신설되면 수능시험에서도 해당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 현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베트남어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베트남어가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교과군에 포함되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베트남어를 선택하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질의

○ 조손가정 학생으로 농촌에 살아서 도시학생들과 교육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농어촌 전형이 있어서 꼭 부모님과 농촌지역에 거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 같은 조손가정은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과 지내는데 꼭 부모님이 거주하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농어촌전형에 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모든 농촌에 사는 학생이 평등할 수 있게 조손가정도 농어촌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1. 2. 16. [대입제도과]

○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의거 정원외로 선발하며 개별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개별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평가원 모의고사 신청 관련

질의

○ 모의고사 접수 당일 혹은 30분도 채 안돼서 접수 마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해당 학원의 학생이 아닌 비학원생에 대한 시험장소 제공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렇다면 현재 응시료 12,000원을 50% 인상한다던지, 그것도 안 된다면 100%라도 인상해서라도 응시인원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5. [대입제도과]

○ 수능 모의평가는 '11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를 유지하고, 본 수능과 유사한 문제유형, 수준 등을 갖춘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에게 수험 대비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재학생은 물론 본 수능에 응시할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등 기타학력자에게도 응시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졸업생은 출신학교나 학원에, 검정고시 등 기타학력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학원시험장은 졸업생이나 기타학력자에게 최대한의 응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학원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학원시험장의 응시인원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학생들의 고졸 검정고시와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질의

○ 중국 한국상공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한국학생들에게 수학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한국의 학력을 인정받았으나 현재 외국에서의 학업을 지속하므로 특례입학대상 자격기준 기간내에 한국의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면 특례입학자격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9. [대입제도과]

○ 먼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전형요소, 전형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통상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을 연속해서 2년 내지는 3년을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많은 대학이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편입학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학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고등학교 재학경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대학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집중과정 조기선택 우려

질의

○ 최근 교과부의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계열 선택을 앞당기게 하여 각 고등학교의 통계자료를 일찍 내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의과 대학

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학 관련 과정을 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시를 위해 자연과학과정을 이수하여야 할지 수시를 위해 과학중점과정을 이수하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수시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정책이 의과 대학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의 진로를 잘 알아보고 선택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고등학교 진학 후 한 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계열 선택을 앞당기는 것이 인생을 결정지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6. [대입제도과]

○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 3학년 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2009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학교는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개별 학생의 흥미, 적성, 소질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집중해서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진로집중과정을 선택하여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다소간 고민이 될 수 있으나 아무쪼록 학생의 적성과 소질 및 능력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병 결석이 있는 경우 대학 입시에서 감점 여부

질의

○ 아이가 몸이 아파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대학 입학시 감점 등의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대입제도과]

○ 대학 입학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 권한사항으로 무단결석에 대하여는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대학에서 정하는바가 다르며, 질병결석에 경우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진학하시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능 모의고사 미응시자 표준점수 산출 관련

질의

○ 201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천재지변에 의한 정전 등의 이유로 응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일 따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성적표는 따로 나온다고 하던 군요. 공정성이나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기는 하지만 대수능 모의평가의 취지가 대수능에 응시할 예정인 수험생 전체 집단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역할에서 볼 때 이러한 일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7. [대입제도과]

○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해 보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부득이 모의고사 당일 응시하지 못하고 다음 날 응시한 학생에 대해서도 성적표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해 다음 날 응시한 수험생 1,600여명은 표준점수 산출시 전체집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다음 날 응시한 수험생의 영역별 표준점수는 9월 2일 모의평가 당일 응시한 수험생 전체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응시한 1600여명을 전체집단으로 별도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다음 날 응시하였다하더라도 전체 모의고사 응시자 중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특례입학 관련

질의

○ 정원 내·외 특례입학 전형항목 결정은 대교협 혹은 교과부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8. [대입제도과]

○ 전형항목은 농어촌, 전문계, 재외국민, 기초생활/차상위, 특수교육, 탈북자 등 정원외 특별전형 유형을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정원외 특별전형 유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 아울러, 정원내 특별전형 유형은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입학 조건

질의

○ 사위가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갔었고 손자가 미국 고1과정으로 내년에 입학을 합니다. 미국에서 몇 년 이상 공부해야 한국 내 대학입시에 특례입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4. [대입제도과]

○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시기에 따라 지원자격,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대상, 전형방법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대학 재외국민 특례입학의 지원자격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각 대학별로 고등학교 과정 교육기간을 2년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3~5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대학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 하는 대학에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 관련하여

질의

○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0. [대입제도과]

○ 현재 대학에서는 부모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재학한 경우 대학입학시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시 재학기간 및 요건 등이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학교의 소재지는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학기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을 재학한 경우는 2년을 재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 따라 재학기간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2년 이상을 포함한, 3년 이상으로 , 또는 재학기간을 4년으로, 부모의 재직 및 동반여부를 2년, 1년 6개월 또는 전 수학기간으로 정하는 등 각 대학에 따라 지원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원코자하는 대학에 지원자격등을 문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교협 대입상담콜센터 1600-1615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재원 학기 수 관련하여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상하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싱가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싱가폴학교도 한국에 비해 한 학기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이의 경우 5학년 1학기 과정이 없이 5학년 2학기로 들어와서 현재는 6학년 2학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 특례 입학 대상자가 되는데, 6월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총 23학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특례입학을 하기 위해 24학기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건 12년 특례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십니다.

○ 만약 학기수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학교에서 1년을 낮추던지(이 때는 공백인 5학년 1학년 과정은 채울 수 없습니다.) 상해에 있는 한국학교로 전학을 해서 한국과 동일한 학기제로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4. [대입제도과]

○ 재외국민 특례입학 기준을 보면,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 편, 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각 대학별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기간 및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에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재외국민”으로

검색하시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대입상담콜센터(1600-1615)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주재원 학기수 관련

질의

○ 한국에서 4학년 2학기 10월에 중간고사를 마치고 중국에 왔습니다. 국제학교를 갔는데, 다시 4학년 1학기로 배정받았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다른 국제학교로 옮겼는데, 5학년 2학기에 배정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는 4학년 2학기를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4학년 1학기를 중복한 꼴이며 5학년 1학기 과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특례입학에 문제되지는 않을 런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6. [대입제도과]

○ 1개학기(6개월)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제차이로 인한 1학기의 월반의 경우 재외국민 특례전형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우 23학기 성적이면 특례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전형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에서 방법의 선택을 권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인정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먼저 문의하시고 준비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BS출제 관련

질의

○ 수능이랑 EBS가 연관되어서 출제된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시겠다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7. [대입제도과]

○ 수능-EBS 연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연계 유형 예시 중 하나로 연계됩니다. 영역별 특성에 따라 다음 연계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개념 및 원리 활용 유형으로 EBS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합니다. -지문

및 자료 활용 유형으로 동일한 지문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항을 구성합니다.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유형으로 글의 제재나 논지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하되 EBS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수능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유형으로 EBS에서 나온 지문을 재고성하거나 보완하여 문제 유형을 EBS 지문 확대, 서로 다른 지문 결합, 지문내용 수정 등을 통해 다음 유형으로 출제합니다. -단순 개념을 묻는 문항들을 융합 또는 재구성하여 출제하되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합니다.

영어교육관련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수업 횟수

질의

○ 단위학교에서 근무 중인 국내인으로써 영어회화 전문강사(초등교근무)의 의무 공개수업 횟수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1학기 1번 그리고 2학기 한번 합하여서)

회신 회신일 : 2010. 10. 7. [영어교육정책과]

○ 영어회화 전문강사 연구활동 및 공개수업에 대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교육과학기술부, 2011.3)'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9쪽) 4. 복무관리 바. 연구활동 및 공개수업

○ 학교 자체 교원 연구 및 연수 계획에 따라 실시

○ 자기 개발 및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연구 및 시범사업(단, 학교장은 필요시 일정기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기술 제고 등을 위한 특별 장학 계획 수립 시행 가능) 실시 따라서 공개수업은 학교 자체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므로 학교계획 수립 시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교생실습문의

질의

○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동시에 작년부터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으로, 곧 교생실습을 나가야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교생 실습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2. [영어교육정책과]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취득자의 교직과정 면제 및 교육실습 대체 가능 여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산학겸임교사에 준하여 동일 영역의 학교급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1.3월, p100).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은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교생 실습 면제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 목적

질의

○ 원어민보다는 실력 있는 고급 인재들을 뽑아 일자리도 창출하고,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영어 인력이 많이 있는데 "강사"를 뽑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응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정교사를 뽑는다면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응시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고급 인력을 활용해야 할 때 강사만 뽑고 있으니 좋은 인재들이 아깝게 놀고만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9. [영어교육정책과]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학교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수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배치하고 있으며, 선발 후에도 교육과정 및 교수법 등에 대한 연수를 30시간 이상(교사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6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준하는 평가 결과를 재계약 시 고려하는 등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원칙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능통자를 선발하되, 별도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 가능합니다. 이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 중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고 영어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하기 위해 정원 외로 선발되는 인력이므로 기존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급 3급시험 문제 유형 및 수능대체 여부 문의

질의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급과 3급 시험의 문제 유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대체 여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6. [영어교육정책과]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의 문항 구성, 시험 시간, 문항 유형, 성취 기준 및 예시 문항 등은 2011년 5월 26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포함한 영어교육에 관한 정보는 EBS 영어교육방송 홈페이지(www.ebse.c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 웹사이트(www.english.go.kr),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rents.go.kr)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대체 여부는 2012년 하반기에 학교에서의 준비정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시험의 공신력 인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에 따른 사교육 팽창 우려

질의

○ 영어능력시험제도에 대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우려를 가져올까 염려스럽습니다. 말하기와 쓰기를 강화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넘어 결국 학원에 학생들을 더욱 다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의 목소리와 공청회를 통해 영어교육이 즐겁고 쉽게 배워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학과 등에서는 전문적인 영어수준을 기타 다른 영어가 필요치 않은 대학학과에서는 교양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등급제 영어능력시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7. [영어교육정책과]

○ 우리 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은 문법 위주의 독해 중심의 교육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듣기, 읽기만을 평가하는 수능 영어 시험에서 벗어나, 영어의 4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교육을 통하여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 부에서는 말하기, 쓰기 평가 도입에 따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말하기, 쓰기 평가 문항의 수준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준비될 수 있을 정도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문항 샘플은 EBS 영어교육방송 웹사이트 www.ebse.co.kr 공개토론회 자료집의 말하기, 쓰기 문항 예시 참조) 또한 말하기, 쓰기 평가의 주요한 기준을 정확성보다는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 의사소통 가능성에 둠으로써 문법, 정확성 중심의 영어교육에서도 벗어나고자 합니다.

○ 또한 기초학술영어 중심의 2급 시험과 실용영어 중심의 3급 시험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구분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필요에 맞는 영어교육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반 개설 등 사교육업체의 과잉 홍보 대처 방법

질의

○ 2015년에 실시될 NEAT시험에 모든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부모로부터 NEAT시험이 ESPT시험이라고 해서 사이트를 방문해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 고물가시대에 학원비를 아껴 보려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항들을 지적해봅니다. 사이트 맨 처음 팝업창에 -5월 ESPT-NET출시!! 이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기시험(NEAT)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개발된 시험입니다.

○ 이러한 팝업창으로 시험을 꼭 보게 해야 겠구나!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거의 주말마다 보는 시험으로 국가에서 ESPT시험을 밀어주는 듯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교육에 염증을 느끼게 하는군요. 정말 서민학부모들은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5. [영어교육정책과]

○ ESPT 시험은 민간자격시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험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부모님께서 방문하신 사이트는 민간 영어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사이트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성이 없으며,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해당 시험을 판매하기 위한 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의 상업적 마케팅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되는 시험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습하면 절대평가에 의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출제 및 채점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여 개발하는 시험입니다.

○ 난이도는 현재 수능보다 더욱 쉽게 출제될 예정이며,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대

비하기 위해 EBSe 영어교육방송에서 2011년 5월말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관한 안내와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의 문항 유형 및 예시 문항 등은 2011년 5월 26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포함한 영어교육에 관한 정보는 EBS 영어교육방송 홈페이지(www.ebse.c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 웹사이트(www.english.go.kr),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rents.go.kr)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에 관한 문의

질의

○ 저희 남편은 호주인이고 얼마후 한국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9. [영어교육정책과]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는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 교사에 대한 회화 연수 강화, 영어 교재 개발 및 영어 교수 기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영어공교육 강화에 공헌함과 동시에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 증진,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활동을 하므로 아래와 같은 일정 자격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영어 모국어 해당 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교포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한국 교포로서 영주권자일 경우,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 우리나라와 통상협정(영어보조교사 양허내용이 포함된 FTA, CEPA 등)을 체결한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 우수한 영어 구사능력 보유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적법한 비자(E-2, 회화지도 등)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그 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선발 절차 등은 국립국제교육원 EPIK(English Program in Korea)팀(02-3668-1400)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epik.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질의

○ 2011년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시 미국인에 한하여 FBI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background check)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문제 원어민을 채용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시 검증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1. 9. [영어교육정책과]

○ 2010년 7월 15일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비자(E-2, 회화지도) 발급 시, 주정부단위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시행은 외국인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이며,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모국어국가 7개국에 모두 해당됩니다.

○ 제도 도입 취지는 마약, 성범죄 등 우리나라에서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한 범죄를 저지른 원어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만을 지정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마약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학위증명서 제출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검증기관의 확인(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서류 검증과 함께 면접 심사를 강화하고, 해당 국가의 교원자격증, TESOL, TEFL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우수 원어민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BS 영어교육방송 시청 확대 문제

질의

○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 TV로는 공익채널로 지정된 ebse 영어교육채널을 시청할 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bse 채널은 지역·계층 간 영어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학교교육 보완, 영어교육 혁신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 TV를 시청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채널을 시청하려면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TV가 있어야 하고, 또 일반 아날로그 방송 시청료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디지털방송 수신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저소득층이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7. 30. [영어교육정책과]

○ 현재 EBS English 채널의 공익채널 선정방식 및 프로그램 공급자(SO)의 편성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선정하는 공익채널 운영 방식은 3개 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에 각 3개 채널씩을 선정하고, 그 중 1개 채널 이상을 선택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 사업자의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유선방송 사업자의 편성 방향에 따라 EBS English 채널이 방송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EBS에서는 다양한 시청 접근성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먼저, SO 런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아날로그 방송의 경우, 2009년 6개소에서 2010년 현재 2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공익채널 지정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편성 자율권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무료서비스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채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전 국민의 영어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고품격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시청권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EBSe 영어교육방송을 통해 방송된 모든 방송프로그램 및 영어교육 콘텐츠는 EBSe 홈페이지(www.ebse.c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TaLK 프로그램 도입 목적

질의

○ 교과부에서 추진 하는 TaLK 프로그램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농산어촌에 원어민 장학생이 배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TaLK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3. [영어교육정책과]

○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은 상대적으로 영어노출과 사용기회가 적은 농산어촌 아이들의 영어 흥미도 향상, 자신감 배양과 타문화 이해능력을 신장시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또한, TaLK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외동포 대학생, 외국인 TaLK 장학생이 방과 후 교육활동, 각종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과 한국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친한, 지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의 재외동포 대학생과 원어민 대학생을 초청하여, 농산어촌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 제7기 장학생까지 총 3,5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시설

교육재단의 부동산 취득관련

질의

○ 교육기관에서 부지를 매입 후 10년 이내에 교육 목적으로 활용 또는 이용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 교육기관에서 토지의 과도한 보유 자체와 장기 보유에 대해 (10년 이상 용도로 활용치 못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17.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 결정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 학교재단에서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10년 이내에 교육 목적으로 활용 또는 이용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효력과 관련한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은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공립 초등학교의 운동장 사용 문의

질의

○ 개인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장을 찾았으나 '돈내고 쓰는 사람들의 사용이 끝난 관계로 운동장을 폐쇄할 것이니 나가라.'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임에도 개방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개방시간외의 시간에는 돈내는 사람만 운동장을 쓰게 해주겠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17.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운동장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제749호)」 제5조에 의거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시·도별 조례·교육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안전을 위해 운동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학칙 및 자체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과 다양한 방법의 건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교 교내 후생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

○ 대학교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캠퍼스 내에 커피숍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영업허가권을 담당하시는 부서 및 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2조에서 설치가능 한 부속시설을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구내식당'을 제외한 시설들은 종업원을 위한 복지시설로 볼 수 없어서 현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인 교육연구시설로는 설치가 불가능 하며,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물의 해당부분의 용도를 근린시설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 안경점, 커피숍, 미용실 등은 대학교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설치가 되는 것이라 해석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요? 사례 조사를 통해 봐도 대학교내에 상기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4.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교 내 복리후생시설인 커피숍을 설치할 때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규정에서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복리후생시설은 교사의 구분 중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학 내 설치 가능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후생시설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커피숍과 같은 대학 내 편의시설은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대학에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은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용도변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의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교내에서 운영 중인 식당,커피숍,매점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부대시설이 있는데

1. 대학교내에서 운영 중인 식당, 커피숍, 매점 등은 교사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편의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식당, 커피숍, 매점 등을 대학교 설립주체만이 운영해야 되는지? 임대업자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1항과 관련한 별표2에 분류되어 있듯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기능별로 교육기본, 지원, 연구, 부속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차원의 식당, 커피숍, 매점 등은 교육기본시설 또는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설립주체만을 한정하지 않으며,

○ 해당 대학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입찰 등을 통해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위탁운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 내에 기숙사 임대건물 용도관련

질의

○ 대학교 기숙사 임대 매장에 PC방 시설을 하는데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이에 대한 적용기준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 10.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의 규정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공간을 구성하여야 하며, 대학시설의 구성은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르며,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른 구분에는 지원시설로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PC방이 기숙사의 부대시설로서 구성원의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 부속시설(골프연습장)의 구분

질의

○ 대학교의 부속시설로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면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지 아니면 운동시설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2. [교육시설담당관]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 대한 용도 구분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내 부속시설물 관련 교사시설 및 부대시설의 의미 등

질의

1. 교사시설(교육기본, 지원, 연구, 부속시설)에서 구분된 부대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소매점(편의점, 서점, 약국, 복사실), 휴게음식점 등, 금융업소, 우체국, 택배, 여행사 등, 이·미용원, 세탁소, 사진관 등이 교사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3. 위의 시설을 대학내 설치하고자 하면 관련법과 절차

회신 회신일 : 2010. 9. 24.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1항과 관련한 별표2에 분류되어 있듯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기능별로 교육기본, 지원, 연구, 부속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교지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과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부설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 및 편의시설인 소매점(편의점, 서점, 약국, 복사실), 우체국, 사진관 등은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립대학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①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 제30조 (사용허가)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 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복리 후생측면에서 대학 재단이나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생활과 교육 · 연구의 필요에 의하여 최소한의 복지 및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절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학의 필요에 의해 공고, 입찰, 업체선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대학내 예식장업 가능한지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8항 규정을 보면 산업체 등이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교사 면적의 10%미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식장업체(산업체)가 대학에 예식장 기자재(시설)와 기부금을 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대학 내 건물에서 예식장 업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4.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체 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체 등이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약정한 시설(산학협력시설) 내 관련업종이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 활용 등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구분에 따른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학 내 건축물에 예식장업체(사업체)가 대학에 예식장 기자재(시설)와 기부금을 기부한다는 약정을 하고 예식장 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대학의 장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의거 사업종목이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실습 등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산업체의 정의

질의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르면,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여기서 "산업체"의 정의 또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질문 2. 대학 내에 수익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입점하는 일반 유통업체도 산업체로 봐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5. [교육시설담당관]

○ 산업체의 정의 또는 범위에 관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8항에서 산업체등을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반유통업체를 산업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질의하신 일반유통업이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지정된 학교기업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종목에 해당여부 및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활동과 연계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관련

질의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그 대상지역이 주거지역, 학교인 경우 소음 기준치가 65db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특별법 관련하여 기준치가 55db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러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55db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0.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교사내의 소음은 55dB(A)이하로 할 것이라 법적 기준이 제시되어있으므로 이를 적용할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설학교수에 대한 질의

질의

○ 첫째,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둘째, 학교측정 관련해서 매년 새로이 신설되고 있는 학교수(통계치) (2008년 기준, 2009년 기준, 2010년 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3. [교육시설담당관]

○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통계 및 홍보(간행)물 → 주요 교육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는 각 지역별 학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고 있어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신설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용 제한통보와 관련

질의

○ “에너지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사용 제한통보”와 관련하여, 에너지 사용 제한

에 해당하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국립대학의 체육시설이 심야에도 사용되는데, 사용 요구가 제기되는 시설도 에너지 사용 제한에 해당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5. 3. [교육시설담당관]

○ 지난 2월 27일, 정부에서는 에너지 위기 단계별 경보를 '주의'경보로 격상하여 에너지 사용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도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 통보를 전 소속기관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의단계는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기준)가 5일 연속 100불/B 이상의 가격 유지시 발령 되는 단계로서 세부지침 안에 교육용 및 의료용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야간 조명을 20시 이후 소등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립대학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 20시 이후 소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들을 비롯하여 학교 체육 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차등 소등하라는 수정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관심단계(정상사용)→주의단계(1시간단축)→경계단계(2시간단축)→심각단계(전면소등) 이에 국립대학에도 최근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의 수정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추후 국립대학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에너지 위기 발령은 범국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시적 조치임을 생각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을 대학시설 편입 할 수있는지

질의

○ 대학시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의 대학부지에서 제척된 부지(교회)의 증축 허가된 종교시설 건축물을 대학시설로 편입 가능한 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5. 12. [교육시설담당관]

○ 종교시설 건축물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①항 관련 별표2에 따른 교사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건물내 복합 용도로 사용시 교사시설 적용 여부 문의

질의

○ 대학시설 부지 내 지하3층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지하1층은 행정시설, 열람실, 학생회실 등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지하2,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의(1) : 지하1층에 행정시설, 열람실, 학생회실 등의 용도로 구성시 교육기본시설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질의(1)에서 교육기본시설로 인정된다면 지하2, 3층 주차장이 지원시설로 인정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8. [교육시설담당관]

○ 지하주차장이 주용도인 건물 내 행정실, 열람실, 학생회실은 일반적으로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기 어려우나 실제, 교사시설 포함여부는 시설이용현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교육기본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지하주차장이 교사시설의 부대시설로 건설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요청~

질의

○ 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세요. 지역 주민은 운동할 공간이 없는데 학교는 개방을 꺼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3. [교육시설담당관]

○ 최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공간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국립학교의 경우 단위학교에서는 학칙 및 자체규정을 정하여,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 개방·이용의 경우에도 관리(비용 등) 및 이용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시간표를 정하여 이용하는 등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사용 시간 제한에 대한 건의

질의

○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평일 저녁 생활 체육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체육관의 이용 시간을 저녁 09:00까지로 만 제한합니다. 지난겨울의 혹한으로 인해 전력 소비량 증가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 같은데 현재는 5월이며 전력량 역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9. [교육시설담당관]

○ 지난 2월 27일, 정부에서는 에너지 위기 단계별 경보를 '주의'경보로 격상하여 에너지 사용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도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 통보를 전 소속기관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의 단계는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기준)가 5일 연속 100불/B 이상의 가격 유지시 발령되는 단계로서 세부지침 안에 교육용 및 의료용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야간 조명을 20시 이후 소등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립대학 등 체육시설에 대해 20시 이후 소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 체육 동호인 들을 비롯하여 학교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시·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차등 소등하라는 수정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관심단계(정상사용)→주의단계(1시간단축)→경계단계(2시간단축)→심각단계(전면소등)

폐교 매입 절차에 관해

질의

○ 한적한 곳에 있는 폐교를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원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의 용도로 활용해서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교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5. [교육시설담당관]

○ 우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령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4조 등에 의하여 폐교의 매각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폐교 관련한 상세한 절차 등은 폐교활용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석면 자재 사용 대책 문의

질의

○ 학교 천장에 사용된 자재 대부분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고 하던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3. [교육시설담당관]

○ 최근 신설학교 되는 학교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70년대에 신축된 기존학교 중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를 사용한 학교로서 천장재가 파손될 경우에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학생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천장재 보수를 하였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학교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협조 하에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석면교체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과 함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석면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학교 석면의 기준치

질의

○ 방송에서 초·중·고등학교 석면에 대한 법적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정기점검을 횟수와 검사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6. [교육시설담당관]

○ 석면의 법정 기준치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별표 4의2에 따라 0.01(개/cc)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 대하여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중의 석면섬유를 멤브레인필터로 포집하여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고 기준치 초과시 전자현미경으로 재측정, 고도의 전문기관에 의뢰 하는 등의 검사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상차현미경 : 무색투명한 시료라도 내부의 구조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 특수한 현미경

학교 체육관 외부인 사용

질의

○ 학교 체육관을 외부인이 사용할 때 받는 대여료는 어떻게 집행되나요? 관련 법규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0.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체육관 외부인 이용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시도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시도별 조례. 교육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계획 중 교지면적 관련

질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해당 교육청의 자체 학교시설·설비기준이 상이

한 경우 교지(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합한 용지)의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교육환경평가서 기재요령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의 기준면적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2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보다 강화된 자체 학교시설·설비기준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학교시설계획 협의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5. [교육시설담당관]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에서는 학교 설립 ·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교지 및 교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초 · 중등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교과교실제, 수준별 교육, 재량활동 및 특별학급 등) 시행,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에 따른 학생 1인당 소요면적 증가,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확충 등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지 및 교사 기준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아울러, 교육자치권 및 자율권 확대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시설·설비기준」은 교육정책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기준 적용의 형평성이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시설중 원형녹지에 관련

질의

○ 학교시설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중에 원형녹지용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교지 면적 확보시 학교 계획면적에서 제척해야 하나 아니면, 같이 면적에 산정을 해야 하나 문의 드립니다. 학교 총부지는 412,354㎡ 이고, 원형녹지부지는 135,631㎡ 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7.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일정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 “학교”로 지정되고 지형도면 고시된 지형에 대한 소유를 전제로 교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주택의 민간투자 대상시설 여부

질의

○ 대학생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지방에서 유학중인 농어촌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복지주택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1. “학생복지주택”을 학교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시설 포함되는지요?
2. 위 질의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시설에 포함되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방식 (BTO방식)에 의한 민간제안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15. [교육시설담당관]

○ 기숙사는 원칙적으로는 학교시설에 해당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와 제4조 학교의 설립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하며 설립 인가된 학교 내에 건축하는 기숙사는 가능합니다.

○ 질의하신 기숙사는 어느 특정 대학이 아닌 불특정 대학생 입주를 위한 것으로서 기숙사만으로는 학교로 볼 수 없으며,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으로 하는 경우로서 국·공립 대학은 교과부 장관(또는 위임 받은 총장)이 시행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의 주체가 어려움), 사립대학은 주무관청으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한 대학에서 추진하여 다수의 대학에서 학생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거 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사설영어학원 강사 인적정보 공개해야

질의

○ 사설영어학원강사에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허위 공개해놓고 강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0.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제13조(강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에 의하여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법 제17조 및 각 시·도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은 학원장이

학원강사의 학력을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학력을 게시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 장소에서 2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질의

○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소지에서만 교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시간대에 그 해당 장소에서 9인 이하의 학생을 교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거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서로 분리된 장소(각방)에서 교습을 하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9인 이하의 학생들을 교습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9. [평생학습정책과]

○ 개인과외교습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신고한 1인이 같은 시간에 9명 이내의 학습자에게 교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부나 형제인 경우에 한 집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각자가 각각의 학습자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족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오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학원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 개인과외교습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칭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만, 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택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신고자의 성명, 주소,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에 대하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과 교습소처럼 명칭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만 알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익법인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

질의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의 결격 사유는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원취임 승인 신청시에만 국한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30.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신규임원취임승인신청시에만 국한한 경우가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과외교습 중지명령 받은 경우 학원교습도 못하는지

질의

○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인과외교습 뿐만 아니라 학원의 교습행위까지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뜻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19.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은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것이 학원법 제13조(강사 등)에 의하여 강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학원법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에서도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과 별개의 문제로서 개인과외교습을 제외한 교습소 설립과 학원 강사로서의 자격은 가능하다고 보여짐. 다만, 학원법 제22조(벌칙) 제1항 제4목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동법 제9조(결격사유 등) 제1항 제4목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은 제한된다고 사료됨.

교습소 설립신고시 관련 법률

질의

○ 교습로 설립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관련 법령 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4. 교습과목

5. 교습료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의 미취학아동 교습 할 수 있는지

질의

○ 교습소에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교습운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임

○ 동 규정에서와 같이 유아에 대한 교습은 “과외교습”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습소에서의 교습 대상은 아니나, 유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교습인원 9인 이하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원 등록 또는 교습소 신고의 절차 없이 교습이 가능 하므로 교습소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과 유아 또는 성인을 동시에 교습(동시 교습인원 9인

이하인 경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교습소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학원에 유아대상 교습추가시 인가가 필요한지

질의

○ 학원의 각 지점이 보습학원 허가를 받아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로 신규프로그램 교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신규프로그램 교재 및 수업내용은 초등 1학년 수학과정이고, 교습대상은 6세~7세입니다.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학원은 교습과정의 분류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교습과정 분류에 따른 학원의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유아교습 및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하여는 교습대상을 사유로 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기타분야-기타계열)으로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고자 할 경우 기타분야-기타계열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교습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부기하는 형태로 교습과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 기타분야-기타계열-유아대상 수학).

○ 또한, 학원법(제8조) 학원의 시설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재학중인자의 과외교습 관련 질의

질의

○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1인만해야 하며 강사를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은 신고할 필요도 없으니 17조의 행정처분 또는 22조의 처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14조의2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원법 제17조제3항 및 제22조의 개인과외교습과 관련한 벌칙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학습자 주거지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하거나, 강사를 채용하여 불법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일시 교습인원을 초과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 형태를 벗어나 교습소 또는 학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학원법 제17조, 제22조에 의한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호 학원 명칭 사용 가능한지

질의

○ 학원 명칭은 00학원 등 사용하고자 하는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00학원이 제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17. [평생학습정책과]

○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국호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학원을 대표하는 표현이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용어 사용신청이 있을 시에 관공서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인지, 대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수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학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학원명칭은 00학원 등 사용하고자 하는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원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고유명사 등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밤 10시 이후 교습제한 학원과 학교의 형평성 문제

질의

○ 밤 10시 이후에 학원가는 불이 다 꺼져 있는데 학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사교육 경감을 운운하면서 학원의 교습을 밤10시까지 제한하였습니다.

○ 사교육 경감 등 때문에 학원에서 밤 10시 이후 교습은 안 되고 학교는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 [평생학습정책과]

○ 헌법재판소(2008헌마454,2009.10.29.)에서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동 결정문에서는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지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체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동 결정문은 “이 사건 조항이 교육방송 및 다른 사교육에 대하여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도.(중략). 학원에 의한 심야교습보다 적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 사건 조항이 학원 운영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헌번재판소에서 조례에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우리부에서는 학생 건강・여가보장, 학교교육 정상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울러,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학원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원 및 교

습소만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설 평생교육원과 동일기간에 원격원격평생교육원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동일기관에서 원격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지, 언론기관 부설평생교육원과 동일건물내에 존재하여 주출입문이 동일한 경우(다른 출입문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각각의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물리적으로 두 시설이 분리 되어야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 [평생학습정책과]

○ 언론기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별도의 설치 신고가 필요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는 주소지 소재 교육지원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서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51조와 시행규칙 제17조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학점은행은 이미 설치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기간 운영된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 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인정 기준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 게재된 원격기관 평가인정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비기준이나 기타 평가기준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집합기반) 평생교육원과의 출입문 분리에 관해서는 두개의 평생교육원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설립되어야하기 때문에 시설과 설비 등이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럭과 보드게임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 블럭과 보드게임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22.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입니다.

○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레고・로봇 등 고등학생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과 별표1에 의거, '학교교과교습학원'(기타분야-기타계열) 또는 '교습소'로 등록・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드게임의 경우 관련 자료의 구체적인 검토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학원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주무관청

질의

○ 문화기관(도서관)을 수탁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절차나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0. [평생학습정책과]

○ 법인의 설립은 각 부처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각 하부기관(시・도, 교육청 등)에서 하도록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를 예로 들자면, 각 지역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요건은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 이상은 우리 부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관련법인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의 범위 해석

질의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와 관련 법인의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의 대상이 되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표이사 1인에 한정되고, 다른 이사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 [평생학습정책과]

○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을 말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원 조회를 위해 법인 전체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1인 뿐 아니라 법인 자체를 운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법인임원 중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 부설뿐 아니라 학교 및 학교법인 부설, 언론 부설, 기업부설, 지식'인력개발 부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할인시 학원환불규정

질의

○ 할인수강료 반환기준 산정시 수강료를 할인 받았으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9.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학원법은 수강료 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강료의 할인시에도 위 반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수강료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수강료 총액을 월별 균분하여 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수강생 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할인에 따른 반환기준 등 별도 특약사항의 인정여부는 '사적 계약'에 대한 민법상 제규정에 의해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특약의 내용은 학원법시행령 [별표3]의 반환기준 및 학원법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질의

○ 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 여건

질의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분원

질의

○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근거 언론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주소 관할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까?
2. 평생교육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타 시도에 분원 설치가 가능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7. 29.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 부가 발행한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253쪽에서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게 신고하며,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처리는 교육감의 업무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유치원이 불법인지

질의

○ 영어유치원 명칭 표기에 대한 사용금지라는데 이유가 뭔가요? 영어유치원은 불법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22. [평생학습정책과]

○ "영어유치원"이란 표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유치원"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아교육법」제32조 제2항(관할청은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위반,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아울러, 학원 명칭위반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 실시, 올바른 명칭사용을 위한 언론 및 대국민 협조 요청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유아대상 어학원에서 '유치원', '유아학교' 등의 명칭이나 표기를 사용하는 사례를 알고 계실 경우 학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일을 달리할 경우, 취미반일 경우 학원법 적용 받는지

질의

○ 학원법 관련 10명이상 초중고에 대한 월, 수, 금 운영 후 나머지 일수에 대한 성인대상 수업일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받는지요? 교습과정이 아닌 운동, 취미수업일 경우의 10명이상 수업시 학원법 적용을 받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2.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월·수·금 동시 교습인원 5명, 화·목·토 동시 교습인원 5명일 경우 교습소로, 월·수·금 동시 교습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학원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시 교습인원 9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시 교습소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

습니다. 이유는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교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교 입학 시험 준비생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9인이하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 또는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교습과정의 등록내용은 별표 1의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 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교습 대상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용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대무용 등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취미반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놀이학교가 학원으로 분류 되는지

질의

○ 보육, 유아교육시설인 놀이학교가 왜 학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관리는 누구에게 받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8조에 의거 관할교육지원청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시설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면적에 따른 수용인원 포함)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하고, 학원운영자는 학습자에 대한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원으로 등록한 후 "학교" 또는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일정 학력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아교육관련 자격증 여부에 상관없이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와는 자격을 달리합니다.

○ 학원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운영자가 정하고 이를 학부모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게시하여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은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사인이 10명 이상의 유아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법 제22조에 의거 무등록 학원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제 규정을 어길 경우 학원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고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시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서류

질의

○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장학재단 설립 허가를 준비중 입니다.

1. 출연자 중에 상사 법인이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출연(기부)증서(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날인, 잔고증명서 첨부)외에 출연자인 상사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장학재단 설립시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빠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2. 장학재단 주사무소 소재지를 명기할 때 꼭 건물의 층수를 구별하여 명기하여야 하나요? (법인설립등기시에는 소재지 번지만 명기되어도 됨)

회신 회신일 : 2011. 6. 8.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청) 1항 4에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주무관청에서 요구한 서류가 동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는 아니나 타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상사법인 주주들의 이익 침해 여부 등 출연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판단시 필요한 서류라 사료됩니다. - 장학재단 주사무소 소재지를 꼭 층수까지 명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재즈댄스가 학원등록 대상인지

질의

○ 재즈댄스와 힙합댄스가 '학원'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른 업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업태변경을 꼭 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3.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제2조의2에 의하면 교습대상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2조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의 필요와 필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별표 1」에 의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계열 무용 교습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기예계열) 전통무용·현대무용 교습과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조「별표 2」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을 두고,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무도장업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힙합댄스, 방송댄스, 재즈댄스 등 각종 댄스를 교습할 경우 「학원법」제2조의2에 의한 교습 대상에 따라 학교교습교습학원의 무용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대무용 등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의 정의(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4706 판결)》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 또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7조(행정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이 됨을 안내해 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변경에 의한 세금 환급 등의 질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이접기 교습소 단속관련

질의

○ 종이접기 교습행위가 학원법에 의거하여 단속되는 행위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2조제1호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교습소"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 시간에 9명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위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종이접기를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학교 중퇴후 편입시 학년

질의

○ 저희 아버지가 중3 초기에 자퇴를 하셨는데 평생교육학교 1년에 3학기로 하는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편입학을 하실 경우 중3 1학기 그대로 편입을 하게 되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7. [평생학습정책과]

○ 1년에 3학기로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를 상실한 성인 및 근로청소년을 위해 단기간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이와 같은 시설의 수업연한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년 배정에 관하여서는 입학하고자 하는 시설로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의 법적용 및 대상

질의

○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된 평생교육법상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각 개별법에 의한 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비영리민간단체(국가기관 등록시 주된 목적이 평생교육인)의 자체 회원을 위한 연수시설 및 노인관련시설 등에서 자체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상기 시설들이 학원법 제2조1호바목상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학원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아닌지?

2. 또한 상기 시설인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평생교육의 대상은 전 국민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나 학교학생 연령대의 국민은 평생교육기관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9. [평생학습정책과]

○ 먼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의 증진을 통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는 시설 또한 평생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조항 제2호에서는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 및 기타 프로그램

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받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에 대해

질의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가 최근 신설됐는데 과거에는 기업, 사회단체, 언론기관, 학회 등이 광범위하게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에 의거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지요? 지금도 많은 학회들이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고 연수를 하고 있고 협회, 기업,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태료 대상 위법 사항이 되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46조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최고 500만원 이하라는 조항만 있지 어떤 내용을 위반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이 없어 관할청별로 자율적 판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별표9 신설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마련한 것일 뿐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의 교원이 겸직할 수 있는지

질의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에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인정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교육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법에 금지한 근무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3. [평생학습정책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육의 자격요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원자격 정원은 초중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등등 이상으로 규정하여 정규 초중등학교 교원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법적 지위는 「초·중교육법」에 근거한 교원이 아닌, 시설 설립자(개인 또는 법인)와 사적 근로 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신분이므로, 복무 및 보수

등의 근무 조건이 시설 설립자와 교원의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한 실정입니다.

○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정식교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이를 통한 이들 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아울러 복무기준,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이 근무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인 「국가공무원법」제7장의 각종 의무 조항을 보면 다음과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선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위임규정

○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제7장 중 제64조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 내용은 평생교육법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발행, 2008.5월)를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과정 입학 조건

질의

○ 저의 아이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만 8세로 현 한국 나이 9세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력인정형 평생교육시설중 초등학교과정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넘어 학력인정형 평생교육시설 초등과정에 입학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6.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는 초등학교 과정 입학 자격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초증등교육법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만12세(진급 또는 취학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를 취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 관계를 볼때 만8세 아동은 '취학연령'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이 초등학교 과정 입학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13조 2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

는 입학을 연기할 사유가 있을 경우' 만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에도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초등학교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의 놀이학교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3.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

○ 특히 영·유아 대상 및 특수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학원법과 보육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놀이학교의 경우 "부모와 함께하는 형태"라면 부모를 교육대상자로 볼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외부시설에서 교육 가능한지

질의

○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훈련을 저희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업장에서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4. 7. [평생학습정책과]

○ 원칙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육의 주체가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고,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계약에 의해 강사 혹

은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평생교육시설의 장소를 벗어나서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기관간 적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조건

질의

○ 시설확충과 더불어 평생교육시설을 기존의 법인에서 별도의 신설법인(영리 또는 비영리)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신설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있는지, 지위승계 시에도 최초설치 시와 동일하게 지식・인력개발분야 주된 목적사업으로의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설치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 [평생학습정책과]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는 새로운 설치자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요건 및 자격을 갖춘 자만이 지위승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지위승계는 시・도교육청에 이양된 사항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지

질의

○ 저희 시민단체를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으려고 하는데, 교육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칙까지 찾아보았는데, 그런 규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규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14.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원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질의

○ 평생교육원 접수 후 사정으로 환불을 문의했으나 환불은 3분의 2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강 시작일이 아니라 중간등록을 했는데 제가 듣기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3. 31.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학습비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습을 포기하게 된 경우는 별도 방식에 의해 학습비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는 첫 학습이 시작된 후 추가 접수를 하신 상태이나, 학습비는 첫 학습부터를 기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학습이 시작된 첫날부터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날까지는 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만약 학습을 포기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그 달의 총 수업시간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미 낸 학습비의 2/3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1/2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학습비의 1/2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2이 지난 후라면 그 달의 학습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때 총 수업시간이란 1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3월 7일 시작된 과정은 4월 6일까지 1개월로 봅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강좌가 3개월 과정이나 6개월 과정이라면, 3월 21일에 학습포기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그 다음날을 기점으로 그 달의 수업시간을 계산하여 1/2이 지났으면 첫 1개월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고 나머지 달의 수업료는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1/2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달의 학습비 1/2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를 합한 급액을 반환합니다.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

질의

○ 학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이 맞는지요? 관련법령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28. [평생학습정책과]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1조 및 제33조)

○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회사"라 부른다.(참고자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본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전학 가능한지

질의

○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학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2. [평생학습정책과]

○ 현행법상으로는 전출입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제89조에 근거하는 데, 초중등교육법에서 언급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다양한 학교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입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전학 규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시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퇴 후 편입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학력과 경력 관련

질의

○ 경력기간을 계산할 때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학력이란 무엇을 말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학력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7. [평생학습정책과]

○ 학력에 관한 문의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이 학력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2호내지 제5호(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법정수학연한)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수학연하과 관계없이 고등교육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과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평생교육법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학력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원 명칭에 대한 질의

질의

○ 학원 명칭에 영, 수 전문 또는 영어 수학 전문학원 으로 등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영어 전문학원 또는 수학 전문학원으로 등록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회신 2011. 4. 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라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원의 등록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여 등록허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학원 운영자 연수 필수사항인지, 학원 인계시 행정처분도 인계되는지

질의

○ 학원운영자 연수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제가 현재 학원을 인수받기 전 학원에 있던 행정처분도 저에게 인계가 되나요?

회신 2011. 4. 9.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 불참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적 처분이 아닌 물적 처분으로서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가 양도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양도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역시 학원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경력 및 강사등록 절차

질의

○ 학원경력관련 실무경력이 교습과목과 동일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인지요? 아니면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3년이상 실무경력 인지요?

회신 2011. 3. 3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호과 관련하여 별표 2 4.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바, 강사를 등록하고자 희망하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로 한정되어 있는바, 인정받고자하는 실무경력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였던 경력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사업운영기간이 3년 이상으로 사업수행실적을 인정할만한 서류)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질의

○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습소는 학원에 비해 강사채용 등 조건

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회신 2010. 11. 29.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습의 질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학원과 교습소를 시설규모, 일시수용능력인원, 교습과목 등에서 구분·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서는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다수의 학습자(동시 10인 이상)에게 강사를 고용하고 교습을 하는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교습자가 소수의 학습자에게 예외적으로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강사를 두고 교습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안전, 학부모 상담 등이 필요하다면 행정직원을 둘 수는 있을 것이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학원법관련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에 대한 1항 각호4번 및 2항 유권 해석

회신 2010. 8. 19.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설립·운영자는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바, 학원법 준수 의무가 있으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함은 학원 운영자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원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원법 위반 행위에 따른 형벌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학원설립운영등록시 두 가지 학원 병행표기 할 수 있는지

질의

○ 학원설립 운영등록증상 학교교과과목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병행표기가 가능한지요?

회신 2010. 12. 10.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각각의 학원 종류별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하나의 학원에 대하여 두 가지 학원 종류의 등록·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학원에 두 가지 학원을 병행 표기할 수 없습니다.

학원수강료 반환 기준

질의

○ 수강일이 지난 학원의 수강료 반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0. 10. 2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 당해 "월"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교습 포기 시점이 교습개시 이전이면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교습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1/2 경과전이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1/2를 반환하여야 하며, 1/2이 경과되었으면 미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부서에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질의

○ 저희 교육청 직원이 지역 대학에 1학기 동안 매주 평일 2시간 동안 시간강사로 나가기 위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이 근무시간 중인 15:00~17:00입니다. 근무시간 중 겸직허가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31.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됩니다.(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참조)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소속 기관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의 의미

질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지역의 특수성, 직무의 성질 등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규정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의 변경”은 도서관에서 일요일 근무자가 월요일 휴무, 업무상 8시 출근자의 5시 퇴근 등의 변경을 의미하며, 하루 근무시간(8시간) 단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

질의

○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조례제5조(위임사무)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는바, 교육장이 임대 또는 교환의 당사자로 직무를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7.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이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조례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사무의 당사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청 조직

질의

○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각 산하 학교는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도교육청 관할 해당시.군지역의 교육지원청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회신 회신일 : 2011. 1. 25. [지방교육자치과]

○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습니다. 또한 동 사무와 관련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서도 당해 시·도를 대표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는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도 아닙니다.

○ 시·군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시·도교육청 소속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급 학교 월례휴가제 시행 등 근무여건 개선 관련 질의

질의

1. 각급 학교의 행정실 지방공무원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지 않아 1,3,5주 토요일 근무를 통해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월례휴가제 지침을 시행하고, 특히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음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연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또는 "교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공문을 주실 수 있습니까?

2. 교과부는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소외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각급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4. 7. [지방교육자치과]

○ 월례휴가제 : 정부에서는 국민경제 활성화와 적절한 휴식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해 '09년 9월 월례휴가제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중입니다.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기관별 업무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급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정원확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행정실 정원확대는 시·도 교육청 임용권자의 의지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의사에 의해 승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질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6급공무원 중 당해직급에서 직무에 정려하기로 한 자에 한해 승진포기원을 받고 수당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필수실무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은 승진을 하면 인근 시군으로 전보발령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12.7.1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현재 연기지역에 근무하며 승진이 예정된 지방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서라도 연기지역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마땅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 승진이 포기될 수 있는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한지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 [지방교육자치과]

○ 5급 및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승진임용하는 바,

○ 승진대상자 본인이 승진을 포기하기 위하여 승진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대상자의 승진여부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공립초 토요대체 휴무관련

질의

○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이 1,3,5주근무하면 평일에 토요대체휴무 사용가능한지와 토요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휴가 등은 예전 것을 적용하여 2중혜택인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4. 20. [지방교육자치과]

○ 현행법령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복무·교육훈련·징계 등은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에게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00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에 의거 토요대체휴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특례조항으로 주5일근무제가 완전 시행되기전까지 휴가 등에 대하여는 이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승진소요최저연수

질의

○ 2년 6개월을 교정직(교도관)에서 근무하였고 곧 지방교육행정으로 옮기게 됩니다. 2년6개월의 기간이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6. 8. [지방교육자치과]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하여는 지방직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의거 퇴직한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 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합니다. 물론 이때 계급체계의 동일성, 퇴직당시 계급이하 임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국가직 교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이었다면 위의 규정을 적용받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시보임용면제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사경력 여부

질의

○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교사로 근무 유사경력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4. 6.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별표1,2]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민원인이 가지고 계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은 민원인이 임용된 직렬(교육행정직렬)에서 인정하는 관련자격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보수규정 [별표4])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자에 대한 교육경력

질의

○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자에 대한 교육경력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원 교육 경력도 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3. [지방교육자치과]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출마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 기능직 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1. 2월달에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관련공문이 시도교육청에까지 하달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일선 학교까지는 하달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공문에 보면 학교조무원의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 조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1. [지방교육자치과]

○ "기능직임용제도 개선방안"은 직렬에 맞는 임용방식 채택 및 인력 재배치, 명확한 업무분장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이며,

○ 현행법령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복무・교육훈련・징계 등은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그러므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력 인정여부 및 호봉정정 가능여부

질의

○ 기능직(조무) 지방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 00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했던 회사에 정규사원으로 근무하였던바, 임용 후 그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2007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의 [기타경력]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 근무경력이 호봉에 가산되지 않으냐고 문의하였지만 조무직렬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오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담당 주무관님과 전화통화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면 기타경력으로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타경력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와 같은 경우엔 호봉정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호봉재획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12. [지방교육자치과]

○ "201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의 유사경력 인정부분에서 기타경력 3)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7할) 항목의 인정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이 추가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전에 근무하시던 경력이 위의 경력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련서류(경력증명서 등)를 해당 관할 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요건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요건에 성립된다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이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로 호봉 재획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면평가제도 등

질의

○ 2010.4.10.자로 다면평가의 근거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가 폐지되고 제8조의4로 대체 신설된 것과 관련하여 신설 취지에 대하여?

회신 회신일 : 2011. 5. 25. [지방교육자치과]

○ '99년 7월 도입된 다면평가제도는 승진,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운영과정에서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공정성 시비 ,인기투표 논란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다면평가 결과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반영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만 하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를 폐지하고 제8조의 4를 신설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복직하여 출산휴가 사용가능한지

질의

○ 지방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4.25일 출산예정자로서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원 계획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6개월을 휴직하고 3개월 출산휴가 사용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본 교육청 방침상 6개월 휴직시는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불가피하게 출산휴가를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차피 제 자리가 올 8월까지 결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제가 다시 4월 1일자로 복직원을 제출하고 바로 출산휴가를 얻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5. [지방교육자치과]

○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재신청 가능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내(한 자녀당 1년, 여성의 경우 3년)에서는 언제든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5항 질의

질의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5항의 규정에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

역에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특별 임용하는 경우, 특별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될 수 없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 교육지원청 소속 초, 중학교 간의 전보도 기관으로 보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6. 2.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근무예정기관이 아닌 근무예정지역만을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도 이는 해당지역별로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 수요를 종합한 후에, 그 지역의 선발예정인원을 각 학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먼저 지역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선발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인 배치는 수요기관의 요구내용,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임용된 후 특정 기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은 그 기관에서 특별임용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5년간은 최초 임용된 후 근무하고 있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토요대체휴무질의

질의

○ 지방공무원에 대한 토요대체휴무 등에 관한 질의

회신 회신일 : 2011. 3. 14.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대체휴무 등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대체휴무는 해당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현업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며(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업대상자는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점심시간과 관련

질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6.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휴무관련

질의

○ 일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직공무원입니다. 토요대체휴무를 쓸려고 상신을 했는데 사유가 자신이 납득할수 없다고 결제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일선학교 교장이 사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휴무를 쓰지 말라고 하니 도저히 저 입장에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23.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기관장이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

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해당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는 바, 해당교육청의 복무담당자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복무에 대한 결재권자인 학교의 장의 결재가 있어야 사실적으로 휴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알려드립니다.

교장 유고시 교감의 학교회계 직무대리 따로 발령을 내야하는지

질의

○ 학교장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면, 교감이 그 학교장의 직을 대행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역할과 책임도 당연히 대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 교장 유고시 교감이 학교회계와 관련된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의 직을 대리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지 아니면 별도로 '00학교 교장 직무대리에 명함'이라는 인사발령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7. [지방교육재정과]

○ 시·도교육청별 공립 초·중등 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회계의 지출원인행위는 학교장의 장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유고시 당해 학교장의 직무대리 관련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규칙, 직무대리규정 제정 여부, 적용되는 준용규정이 달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 관련

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나 00신도시는 이를 준용하여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이 법이 준용하라고는 되어있지만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감 재량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교육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4. [지방교육재정과]

○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완화 적용 등에 대한 유권해석은 동 규칙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점 알려드리니 양해바라며,

○ 참고로 개발지역내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개발계획에 그 사항을 반영하 한 후 이에 대하여 개발사업승인권자(국토해양부 또는 시도 등)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보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용지는 인구유입, 인근학교의 유무, 개발사업지역의 상황, 도시계획 기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사업자는 이에 대한 승인을 승인권자에게 받아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추진비(격려금)지급가능 여부 및 전달자 명의 표시

질의

○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하급기관(학교)를 방문하여 고3학생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위로차 지급하고 있는 격려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회계법령(업무추진비규정 포함)등에 위반 되는지 여부

○ 격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기관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장 개인명으로도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6. 1. [지방교육재정과]

○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 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소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질의

○ 현재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교과부에 신청하려면 반

드시 지자체 지원금 30%를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자체 예산확보금에 대하여 법적 근거 아니면 관행이라던지 자료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지자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체육관 건립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지방교육재정과]

○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신청시 지자체 지원금 30%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시·도교육청(학교 등)에서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 신청시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등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지자체 등 외부로 부터 대응투자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대응투자가 없으면 신청 요건이 되지 않으며 만약 지자체 예산이 열악한 경우는 다른 외부 대응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항은 우리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등과 같이 사용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자체 등 외부투자를 유도하고자 마련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폐교 위탁 운영후 위탁운영자에게 재계약 가능 여부

질의

○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자 직접 타인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후 운영중에 교육청과 체결한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위탁운영자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위탁운영자의 명의로 갱신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 [지방교육재정과]

○ 대부계약의 갱신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와 체결하거나, 위탁운영자가 갱신계약에 대하여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대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신설 기준 관련

질의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하는 학교신설 적정규모가 몇 학급인가 궁금해서 민원을 올립

니다. 또한 학교 신설 기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7. [지방교육재정과]

○ 우리부에서는 대도시 이상의 경우 초등 ; 36학급이상, 중학교 ; 24학급이상, 고등학교 ; 24학급이상의 학교설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중소도시(경기도 제외)의 경우 초등 : 24학급이상, 중고등학교 ; 15학급이상의 학교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적정한 학교의 규모에 대하여는 시도별로 상황이 다르고 개발사업지역 마다 사업규모나 지형적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 시도교육청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를 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미부과 대상

질의

○ 학교용지 부담금의 미부과 대상관련

-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시 조합원 분양분은 제외하고, 일반분양분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여부 및 그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0. 9. 7.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특례법")」 제2조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총 개발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전체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이라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특례법 제5조제1항에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개발사업 가구수에서 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하는 가구수를 뺀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의

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경면적 1%를 유상공급 면적으로 전환하여 유상매각하여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이라면,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발생되는데 학교시설의 건설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인지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생되므로 학교시설을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건설하여 교육청에 무상공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이고 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학교시설을 완료하여 무상공급하여야 한다면 ‘조경면적 1%를 감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사업완료후에 발생되는 개발이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순 유상공급 면적 증가 분에 대한 용도별 금액 변화를 가지고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8. [지방교육재정과]

○ 먼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개발지역 전체 면적의 1%에 해당하는 녹지면적을 유상매각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이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수, 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학교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택지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개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의 입주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시 해당관청과의 협의 관련 문의

질의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협의 사항으로서 학교용지(초등학교)를 확보해야할 상황에서 해당 관청(승인권자)이 어느 특정 지역(지역, 지번)에 학교를 건립하라고 하면 꼭 그 지역에 해야만 하는 것인지? 해당 관청(승인권자)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학교용지 보상 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금액과 실 매입가가 확연한 차이가 발생할 때 (예: 감정가 50만원 실 매입가 100만원) 용지를 확보하는 업체는 감정가액에 따라서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1.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가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및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때 확보되는 학교용지의 위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확보되는 학교용지에 대한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와 교육감의 의견서를 개발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민영 개발사업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청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동법 제4조제3항제2호에 의거 감정가액으로 공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산정시 부가가치세

질의

○ 공동주택 개발 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회신일 : 2010. 11. 19. [지방교육재정과]

○ 과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시 부가가체세를 제외토록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부가가치세 포함 산정 여부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선이 지속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하도록 한 점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문

질의

○ 아래 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00가구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시공되었으나, 조합원(기존 거주자)의 수를 제외하면 100가구 미만인 아파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에 보면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과·징수 대상이지만, 제5호에 의하면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법 규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조합원(기존 거주자)의 경우, 기존에 학교용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존 거주자의 수를 합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을 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정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원 수를 제외한 가구 수에 대하여 납부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석되어 집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에 의거 1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금액 산정시에는 법제5조제1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하여 문의

질의

○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하여 분양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며 이후 분기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최초 분양일로 부터 6개월여가 지난 시점으로 분양현황에 대하여 미신고가 되어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첫째 현재 납부하고자 할때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 납부하

는 경우 미신고에 의한 벌칙조항이 있는지의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 5.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내역 등이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분양된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곱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7일이내에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분양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부과권자가 계약일자를 수정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는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5항에 의거 시도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

질의

○ 택지개발촉진지구내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개발 아파트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2009.5.28)으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학교는 정부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예산 범위내에서 설립 추진중입니다. 행복도시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아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는 개별 사업자 역시 택지개발촉진지구에서와 같이 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2. 22.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학교용지 확보 및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한 비용을 시도지사가 마련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설립비용을 다른 재원(개발사업시행자, 시도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이외의 회계 등)으로 부담하여 학교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 반면에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시도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씩 분담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여 학교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할인 분양시)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시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당시 분양공고문에 나와 있는 분양가격인지 아니면 실제로 분양한 분양가격(할인된 분양가격) 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7.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은 실분양가격(할인된 분양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및 법 적용 관련

질의

○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시행령 제5조의 2가 2009. 11. 23. 대통령령 제21837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4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전까지

학교용지법 제5조의 2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4항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으로 되는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도록 한 취지가 무엇인지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2중의 부담(세금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을 지우는 것이므로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4항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개정된 학교용지법 시행령은 확인적 의미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3. 2009.11.23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2008. 8월 분양승인 시점 이후 미분양 세대 中 2009.11.23 이후 분양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천분의 4로 부담금 산정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1. [지방교육재정과]

○ 과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시 부가가체세를 제외토록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부가가치세 포함 산정 여부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선이 지속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하도록 한 점 알려드리니 양해 바라며, 2009.11.23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분양 승인일 또는 분양일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담금 요율 인상분(분양가의 0.8%) 적용은 법 개정일(2009.5.28)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므로, 법 개정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고 분양이 법 개정일 이후에 된 경우에는 종전 요율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시 중가산금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세외수입)이 체

납되었을 경우, 동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에도 불과하고 계속하여 납부를 거부할 시(법정관리중인 회사라서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적용한다면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 31.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관련 재건축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 제외 여부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문의

- 재건축사업의 총 세대수는 100세대이상이지만 재건축조합원 세대수를 제외하면 100세대 미만일 경우의 대상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7. 24.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개발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경우에 부과 대상이며 재건축에 따른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부과금액 산정시에만 제외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한 후분양 취소된 경우 환급처리가 가능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1. 14.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법 제5

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을 한 경우에 부과토록 있는 것으로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시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환급됨이 타당한 점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이득금 환급시 이자 처리

회신 회신일 : 2010. 9. 1. [지방교육재정과]

○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시 과오납 환급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다59295)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은 부과징수 절차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전에 시도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이자 지급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환급재원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해당 시도에서 마련함이 타당한 점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

질의

○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1월 사업승인허가가 난 재건축 현장인데 사업이행조건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법이 폐지가 된건지 납부자가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6. 30.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타

개인정보처리 불복청구 시 행정심판기관 문의

질의

○ 정보주체가 사립대학의 개인정보 처리(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계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느 기관으로 안내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6. 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2011.3.29. 제정, 2011.9.30.시행] 됨에 따라 기존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제도는 없어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제39조), 분쟁조정신청(제43조)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39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국가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질의

○ 귀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이나,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 현황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5. 23. [운영지원과]

○ 우리 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나 콘도회원권 등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 산하 국립대학이나 시, 도교육청 등에서는 학생, 교직원을 위한 수련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관상장 재발급

질의

○ 1999년 발급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부총리겸) 표창 상장을 분실로 인한 재발급 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11. 26. [운영지원과]

○ 한번 발급된 상장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수상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팩스민원신청)을 통해 수상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험근무수당지급 조건

질의

○ 220v볼트가 넘는 송수신기 종류의 방송장비 포함한 운영 및 조작 등을 하고 있으며 문화관에 대한 무대음향 및 무대조명 등등 시설 전반에 대해 각종 시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 2010.1.7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6조 관련) 부분 6. 각 부문 을종 카.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및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위험근무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 질문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4. [운영지원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 9]의 6. 을종 카.의 경우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및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수행중인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가 분장(사무분장)되어야 하며. 소속기관의 수당담당 및 업무관리자가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위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기업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에 보면 1인수의계약에 조항에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우선구매지정 품목에 대해 물품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인쇄, 전기분야에 대하여중 소기업제품 구매(장애인기업) 수의 계약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15. [운영지원과]

○ 문의하신 중소기업제품 구매(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26조에 의거 귀 기업이 아래 법률에 해당하시는 기업이시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4.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또한, 국가계약법 26조제1항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제30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거 견적서 제출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지방 교육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는 되어있으나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은 교육청 자치제 실시로 인해 해당 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도

질의

○ 중소기업청 및 조달청에서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매물품중에 구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소액추천제도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소액추천제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23. [운영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해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부서의 의견에 의해 업체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인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제품 소액추천제도는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처럼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거나,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부 소속기관에 이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응 방법

질의

○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비공개 결정을 계속 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2. [운영지원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를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학에서의 정보공개결정 여부는 대학의 장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정보공개의 불응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BS 교재의 수능연계 정책

질의

○ EBS 교재의 수능연계 정책이 EBS의 교재 판매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3. [이러닝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EBS 수능강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대입준비가 가능하도록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MOU를 체결하여 EBS 교재와 수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EBS 수능강의 지원 사업은 고액의 과외 및 학원 강의를 대체하고, 수준별 강의 및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확대 보급을 통해 일선학교의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한편, 수능 연계 정책으로 인한 EBS 교재 판매 수익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재 무상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능강의의 자막파일 제작,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수능연계 교재의 점자화 등 사회에 환원하는 수능강의의 보편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개최, 온라인의 무료 진로적성 검사, 수능강의의 질적 향상 등 공교육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도입, 과목별 중점학교 확대, 방과후학교 운영,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EBS 수능강의 사업지원은 그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교)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질의

○ 사이버대학(교)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학위, 대학학장명의 학위증이 나오나요?, 학점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2. 15. [이러닝과]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기관이며,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의거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 2001년 평생교육법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개교가 최초개교를 해서 2008년까지 17개교가 개교를 하였습니다.

○ 2007년에 고등교육법에 사이버대학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7개교 중 15개교(2011.3.1개교 포함)가 전환인가를 통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전환되었고, 2개교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아있습니다.

○ 더불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또한 대학명의의 학위가 수여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 공인인증서 사용 문제

질의

○ 사이버대학의 강의에서 범용공인인증서만의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은 철폐하고 은행용이나 증권용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허용해주시거나 다른 무료 인증방법의 사용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9. [이러닝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원격대학 설비기준(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 2008-93, 2008.4.22)을 마련하여 사이버대학에 "재학생 신분인식 및 인증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바 있습니다.(예: 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인증 등)

○ 기존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가 ID/PW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재학생 신분 확인이나 대리수강 및 시험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이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공인인증서는 이러한 시스템 중의 하나일 뿐이며 우리부에서 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이를 도입·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이버대학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쓰는 이유는 학사업무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용도제한용은 은행/보험/신용카드용과 정부민원업무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 범용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금융서비스, 인터넷쇼핑, 전자상거래, 전자공증 및 내용 증명 등에서 사용합니다.

※ 전자인증서 관계법령인 전자서명법 제23조제4항 및 제32조3호에 의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이버대학교 강의교재 및 강의 컨텐츠사용기간

질의

○ 사이버대학교 강의교재 및 강의 컨텐츠는 법적으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9. 7. [이러닝과]

○ 사이버대학의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이버대학에서는 콘텐츠 수명 주기 등을 학칙에 명문화 하고 자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대학별 콘텐츠 자체심의위원회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매학기 마다 콘텐츠 재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콘텐츠 이력관리(최초 개설연도, 이후 수정연도 표기 실시)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수명은 기본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내부규정(자체 심의위원회)과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 또한, 수강생들이 콘텐츠 평가결과를 수강신청 시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에 대한 수강생 및 콘텐츠 개발담당부서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 각 대학에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콘텐츠의 만족도, 질적 수준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듀넷 우수수업동영상 활용 관련

질의

○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우수수업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안 되고 교사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교사들이 우수수업을 벤치마킹하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꼭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해야만 하나요? 학부모나 학생이 그것을 보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11. [이러닝과]

○ 우수 수업동영상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교과내용을 배우는 이러닝 학습 사

이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우수 수업동영상을 서비스하는 목적은 교원의 교수학습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사 간에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개설된 인터넷사이트입니다.

○ 이에, 다양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하는 방법을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아울러, 우수 수업동영상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작되고 있으며, 교사, 학생들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교원들의 수업방법 개선 목적에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 사이버대학 국내 운영 및 학위 인증에 대하여

질의

○ 현재 그릭스대학교는 국내에서 소개되어 고등교육부 법령에 의거 2번이나 메스컴에서 위반사항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www.griggs.kr) 하지만 그릭스대학교는 미국내 허가대학이고 온라인 수업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주장하며 평생교육시설 허가를 따내서 또다시 이번년도 봄학기 입학생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 대학은 진학을 하여 졸업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교과부에서는 위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5. [이러닝과]

○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인정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의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면 그 대학이 해당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이라는 기본 전제가 우선되며, 인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학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 별로 정하는 학칙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 학사 학위의 인정은 전적으로 국내 대학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릭스 대학은 국내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대학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학생 모집, 학점 인정 강의 등을 행하여 2011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 또한, 그릭스 대학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인가해준 교육청에서는 해당 평생교육시설을 폐쇄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 추가로 다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허가 없이 외국 대학이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적 행위이며, 이를 어길 경우 우리부는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록시 이중등록인지

질의

○ 한국방송통신대 합격후 등록한 후 복수전공을 하고자 사이버대 응시 후 합격한 사례에 대한 이중등록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3. 8. [이러닝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서는 각 대학(원)의 학칙에서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과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학칙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학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수강료지원관련

질의

○ 저소득층 대상 인터넷 수강료 지원은?

회신 회신일 : 2011. 4. 6. [이러닝과]

○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및 EBS 수능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은 주요 과목(국, 영, 수, 사, 과)을 중심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http://cyber.edunet.net)를 통하여 무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고등학생은 방송(EBS플러스1) 및 인터넷(www.ebsi.co.kr)을 통해 질 높은 수능강

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교재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능강의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재 EBS에서는 일정 정도의 증빙과정을 거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EBS의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D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및 pc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지원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 시행근거 법률

질의

○ EBS 교육방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지, 그 근거법률을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8. 2. [이러닝과]

○ EBS 교육방송의 법률 근거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도감독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임을 알려드리오니 동 법률관련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02-750-2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BS 수능연계교재 지원

질의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EBS 교재의 지원책은?

회신 회신일 : 2010. 8. 24. [이러닝과]

○ 교육과학기술부와 EBS에서는 2004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자녀들에게 EBS 수능연계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1년에는 26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7만부를 보급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

층 대상 자녀들에게 EBS 수능연계교재의 무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BS 교재 가격인하

질의

○ EBS 수능연계교재의 가격을 인하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0. [이러닝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EBS 수능강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질 높은 강좌운영 및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1년 교재가격의 경우 2010년 대비 평균 약16%를 인하하였고, 타 출판사 교재의 가격 대비 51.6%(면당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또한, 저소득층 대상 자녀에게는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겸직(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질의

○ 현직 공무원이 대학교(사이버대학교) 시간강사로 출강시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였으나, 최근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에 의하면 시간강사를 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는 언론을 접하였습니다.

○ 모든 시간강사가 정규교원으로 등록되어지는지요? 만약 정규직원으로 등록된다면 겸직은 안 될 수밖에 없는데..현재까지는 아무런 법 개정이 없어 겸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2. 15. [인사과]

○ 현재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복무감독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학출강 겸직허가를 받으시면 시간강의 출강은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법적지위 변경 등에 따른 겸직 불가능 여부는 법령개정 등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질의

○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비위 행위자와 감독자가 문책을 받을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인사과]

○ 질의하신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승진소요 최저연수 관련

질의

○ 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2년) 재직한 직원의 승진가능여부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 27. [인사과]

○ 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현 계급이 9급이신 경우라면 승진소요최저연수인 2년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상위직급인 8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징계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류

질의

○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인사과]

○ 질의하신 징계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공무원 징계령 제24조2(심사 또는 재심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 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징계감경이 되지 않는 경우

질의

○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았거나, 모범공무원인 경우징계 감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감경이 되지 않는 비위사건이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감경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3. 23. [인사과]

○ 징계감경이 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부담금 부과 기준은

질의

○ 징계부담금 부관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부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3. 23. [인사과]

○ 징계부담금 부과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2(징계부가금)

1.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의결 기한

질의

○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몇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3. 18. [인사과]

○ 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아래 각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징계처분 말소기록

질의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6. 24. [인사과]

○ 불문(경고)는 1년, 직위해제는 2년,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정직은 7년입니다.

고용휴직 교원 자녀의 대입특례자격

질의

○ 해외 한국국제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일부 대학에서 특례입학의 자격요건에 '해외근무공무원의 자녀'에 저희들 초빙교사의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13.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고용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임시로 채용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의거 고용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최소연수 및 승급기간에 산입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학의 특례입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권이 대학에 있습니다. 대교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나,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해외파견

질의

○ 2007년에 '2008 교육공무원 해외파견'에서는 교장, 교감 자격이 있는 원장들 모집 이외에도 일반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국교육원 분원장의 모집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3.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우리부는 재외교육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한국교육원장, 한국학교장에 한해 선발을 통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원의 분원은 2010년부터 모두 본원으로 승격시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교사를 선발하여 보내지 않고 3년이상 경력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감 등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통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외국학교 설립 및 인정받기 위한 제반사항

질의

○ 오사카지역에 해외 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할때 교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지 그런 것이 있는지요? 그냥 일본의 관계법에 따라서 설립하고 교과부에는 신고만 하면 학교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4. 5.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운영규정)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 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

질의

○ 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학교 교장선생님의

근무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3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시행령에 따라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교육기관 파견갈 수 있는 방법

질의

○ 초등학교 교사인데 중국의 한국학교에 파견을 가고 싶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 14.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에 파견 근무할 교육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되, 외국어(영어 또는 현지어, 현지어의 경우 5할 이상인 경우 해당 점수의 30%를 가산)와 국사(한국사능력시험, 국사편찬 위원회 주관)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차 면접 대상자는 외국어 성적(80%)과 교육행정경력(20%)를 반영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5배를 선정한 후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우리부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선발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외 한국학교 경력 호봉산정 문의

질의

○ 계약제교원(중등) 신규 호봉획정시(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을 따름) 중국에 있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계약제교사로 재직한 경력의 경우 호봉 산정시 경력을 몇할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9. 20.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0한국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재외교육기관으로 해당 관할 공관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공관에서 해당 교사의 경력증명서를 공증하여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외는 지역교육청이 별도로 없는바 교사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해당 공관에서 공증한 경력증명서로 해당학교 교사임을 증명함으로써, 해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경력을 100% 인정하여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재외한국인학교 교사의 신분 관련

질의

○ 한국의 국공립 고등학교에서 재직하다가 휴직후 재외한국인학교 교사로 고용되었다면 〈교포〉신분인지 〈공무원〉신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교포〉신분이라면 교과부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교사가 왜 〈교포〉신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 법이 혹시 언제쯤 바뀔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4.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국내의 국공립학교에 근무하시다 고용휴직으로 한국학교에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1항에 의거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즉, 현지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학교는 교과부가 설립을 인가하고 학력을 인정하는 현지 사립학교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임용권자가 달라 전근의 개념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고용휴직 제도를 이용하여 공립학교 교사가 한국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임용권 문제로 법을 개정하기는 힘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국에 한국어 교사로 파견 요청 건

질의

○ 뉴스를 통해서 태국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범대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중등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파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4. 28.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사범대 지리교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태국에 한국어 교사로 파견이 가능한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사 파견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일반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국 한국어 교원 관련

질의

○ 태국의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정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자격, 신분보장, 처우 등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28.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우리 부에서는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일환으로 태국어 한국어교원 파견을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KOICA)에서 해외에 봉사단원제도 시행 중] 파견교원의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이며, 해외 파견 교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분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처우에 대해서는 현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질의

질의

○ 한국어능력시험 일정과 시험결과는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9. 29.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인증해 주는 시험이며, 그 결과는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시험 일정은 2010년부터 연간 국내 2회, 국내외 2회 실시되며, 매년 11월과 익년 4월경에 중앙일간지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한국학교 설립 요망

질의

○ 모국어를 잊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고려인 들을 위해 현지에 한국 학교를 세워 2세들에게 최소한 무료 초등교육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4. 5.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의 고려인들을 위해 모국어 교육으로 정체성 확립과 초등교육만이라도 무료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현행법상 고려인(한민족)을 대상으로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을 준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그래서 우리부는 재외동포(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한국역사 교육을 실시하면서 민족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교육원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한국교육원,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한국교육원, 키르키즈스탄의 비쉬켁 한국교육원과, 러시아에 사할린 한국교육원,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로스토프나노누 한국교육원 등 7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등에 기업진출이 늘어나 교민증가로 인한 학령인구의 증가로 한국교육 수요가 있다면 교민들과 현지공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학교 설립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학교 설립 관련

질의

○ 중국 산동성 위해 지역에는 약 3-4만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2,000여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대다수가 중국 학교에 다니므로 그 고충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 재외국민 교육법에 의하면 교과부 인가 한국학교가 아니면 교과서 및 고용휴직 교사를 채용할 수 없어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학교가 없을 때 예외 조치로써 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 인가 혹은 대안 학교 인가 등의 방법으로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도와 줄 수 없을까요? 교사 수급 및 교과서 지원 등의 혜택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2. 29.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 한국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정부의 지원, 재외공관, 한인회 및 교민들의 관심, 학교부지 확보 및 건물신축에 필요한 재정여건, 학생수요 전망 등 한국학교 설립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된 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지의 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 학생 수요 등을 작성하여 현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우리부로 설립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부에서 종합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외 한국학교 설립운영은 사립학교 형태로 현지교민들이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총비용의 50% 확보된 후 우리 정부가 나머지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설립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부에서는 학교운영계획서, 학생전망, 재원조달계획서, 설립의 타당성, 현지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내 교사의 고용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국의 학교 승인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는 고용휴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교과서와 관련하여 이러한 학교들이 한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과서 구입비, 운송비 등의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교과서 구입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한국학교가 없는 지역의 한글학교에 한민족의 정체성 함양 교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국내 교과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교사 파견에 대해

질의

○ 아이들은 Vientiane International School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올해부터 모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외국어(불어) 대신 모국어를 공부하여 졸업시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 저희 한국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를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어 교사를 해외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8. 27.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라오스 내 국제학교 모국어(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교사 파견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에 의해 민원인이 요청한 파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파견 사유 :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한, 상기 학교는 라오스내 사립학교(설립 주체가 라오스의 외국인 학부모가 설립)로 파견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현지에서 자체 채용된다 하더라고, 고용휴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경력인정 등을 받을 수 없음 ** 고용휴직 요건 :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따라서, 현 실정상 라오스 국제학교에 국내에 재직하는 교사를 파견 또는 고용휴직 등을 통해 채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 봉사활동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교사(국내 현직교사 아님)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교육공무원 파견 선발 자격 요건

질의

○ 교육공무원 해외파견 선발 자격요건에서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 장학사 교감의 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는데 교감의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8조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감의 경력이 자격증 취득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감으로 발령을 난 뒤부터의 3년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3.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교육원장의 자격기준에 3년 이상의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을 가진 자의 의미는 실제 경력을 말합니다. 한국학교에 파견되는 교감의 경우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교육원장과 비교를 하시면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해외 한국학교 계약사항에 관한 문의

질의

○ 저의 처는 지금 해외 한국학교에서 초빙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공고문에는 기간이 2년으로 나와 있으나 처는 계약을 2년 7개월을 한 상태입니다. 7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 한국학교 계약서상에는 만기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만기시라는 말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학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지급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현 거주국의 법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고문에 만료 시에는 항공권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계약서상에서 만료기간이 2년 7개월이라고 하지만 공고문의 기간을 다 채웠는데 돌아가는 항공권은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5. 27.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고용휴직교원 또는 초빙교원에 대한 수당 등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약제·기간제 교원 및 직원)에 따라 고용 또는 초빙계약을 한 당해학교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초빙교원에 대한 퇴직금 및 항공료 등에 대해서는 당해학교와의 계약내용과 규정을 근거로 당해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약제·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해외교육 기관 근무교원 연수

질의

○ 해외한국국제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원입니다. 초등교사 1정 연수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고용휴직 중이기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해외 근무 교사들이 1정 연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세요.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2학기 교과서를 받았는데 지도서와 CD가 예산 편성 문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도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1. 3.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1정 자격연수의 지명은 임용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용휴직 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서는 지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년 교과서 보급 예산을 확보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나, 올해는 교과서 가격 자율화 등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꿈나래21 책자 받아보는 방법

질의

○ 교과부에서 발행하는 꿈나래 21을 매월 받아보고 싶은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8. 16. [홍보담당관]

○ 꿈나래21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소식지로 학교, 정부부처, 시도군구청, 주민자치센터, 전국 도서관, 사회복지관, 농협 등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경우는 매달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하시고 까페에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께만 책자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 신규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도서관 등에서 내용을 읽으시고 '꿈나래21을 사랑하는 사람들' 까페에 2개월정도 후기를 올려주신 후 등업신청 및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매달 후기를 카페에 올리셔야 합니다. 참고로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는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까페가입방법: 다음(www.daum.net)에서 '꿈나래21' 검색, 꿈나래21을 사랑하는 사람들 까페에 가입

질의·회신 사례집

총 괄	감 사 관	박 준 모
	민원조사담당관	채 안 병
기 획	사 무 관	이 영 섭
	교 육 연 구 관	김 동 호
	행 정 주 사	김 창 주
	행 정 주 사	박 지 영
편집정리	전 문 상 담 관	황 정 숙
	전 문 상 담 관	송 시 은
	전 문 상 담 관	최 은 영
	전 문 상 담 관	최 진 아
	전 문 상 담 관	박 선 은
인 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PDF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타(☎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